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방안

연구 :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연구 책임 김 은 희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초빙연구위원)

연구 지원 강 신 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Gyeonggi-do Women & Family Foundation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방안 연구 :
단체급식을 중심으로

발행인 김혜순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발행처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주 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전 화 031)220-3900

홈페이지 www.gwff.kr

인 쇄 디자인팀

ISBN 978-89-6432-645-9 93330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연구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삼시세끼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이자 발달권임.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빈곤이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거나 결식이 발견된 아동은 2022년 말 기준 총 283,858명이 해당함.
- 정부는 취약가정 아동의 기본적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 결식 및 영양결핍 등 아동·청소년기 건강권 침해를 국가차원에서 예방·보호하고자 2000년부터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보호자 부재 및 맞벌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함임.
 - 아동급식지원은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카드(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중 가정 및 지역 여건, 대상 아동이 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 '22.9월 기준 1식당 지원단가는 8,000원 이상으로, 단체급식,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모두 동일지원단가를 적용함.
- 우려스러운 점은 결식아동의 급식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임. 2020년 7월에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2021년 6월에는 결식아동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 원을 인건비로 조작해 빼돌린 후, 자녀교육비 및 개인 생활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운영자 6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았음.
- 특히 2020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는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2020년 5,000원 이상, 2021년 6,000원 이상, 2022년 7,000원 이상, 2023년 8,000원 이상)는 급식비 지출의 주체가 개인이나 단체냐와 상관없이 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아동의 영양 불균형 방지를 위한 단가로 조정된 것임. 일반적으로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이 사 먹는 매식비와 단체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동일할 가능성이 낮음. 또한 단체급식의 경우, 급식의 질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외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용 아동의 연령 및 아동 수, 이용시간, 인건비, 식재료비, 물품취득비, 배송비 등)들이 매우 다양함.

- 그러나 현재는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지원단가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 수 및 아동의 연령, 급식 운영방식이 다양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 다양한 단체급식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반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급식비 부정 수급의 틈새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온전히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을 위해 잘 제공되고 있는지,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동일지원방식 및 지원단가는 적절한지, 효율적인 단체급식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및 요구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및 방법

- 연구내용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 현황 분석
 - 지역아동센터장 대상 설문조사 : 단체급식 운영의 실태 및 어려움, 개선점, 지원 요구 등
 - 시군 지역아동센터장, 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 센터장, 급식종사자 입장의 만족·불만족 요인, 개선점, 지원 요구 의견 수렴
 - 시군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 : 급식보조금 부정 사례 직·간접 경험, 동일단가적용 및 총액 지원방식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 단체급식 적정 단가 및 단체급식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단체급식)의 발전방안 제시
- 연구방법
 - 문헌 및 정책 분석 :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고찰, 정부·교육청(학교급식) 관련 정책 검토
 - 관련 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2020~2023년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분석 및 시군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보조금 등) 관련 행정통계자료 검토
 - 설문조사 : 시군 지역아동센터장(296명)
 - 초점집단면접 : 지역아동센터장(10명), 급식종사자(5명)
 - 서면조사 : 시군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총 48명), 전문가(9명)
 - 자문회의 및 간담회 :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3회), 도청 담당공무원 간담회(3회)

2. 경기도 아동급식자원 사업 현황 및 학교급식 방향 검토

가. 경기도 아동급식자원 사업 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의 아동급식지원 사업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시군은 100%(31개), G드림카드(일반음식점, 편의점, 배달앱 이용)를 지원하는 시군은 93.5%(29개),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는 시군은 32.3%(10개), 부식 배달을 지원하는 시군은 19.3%(6개)인 것으로 나타남. 이에 단체급식은 모든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음.
- 2023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수는 총 50,817명으로, 이중 급식 카드 지원 아동은 25,899명(51.0%), 단체급식 지원 아동은 24,918명(49.0%)임. 단체급식 이용 아동 중 초등학교생은 76.4%, 중학생은 17.5%, 고등학생은 4.5%, 기타 아동(미취학, 탈학교 아동)은 1.5% 순으로, 초등학교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나 청소년(중·고등학생)도 전체의 22.0%를 차지해 1/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나. 학교급식(50인 이하) 방향(경기도교육청 2023년 기본계획)

-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은 동일한 아동(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을 지원하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가 같음. 이에 아동 대상 단체급식의 전형인 학교급식이 현재의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학교급식을 모델로 지역 아동센터 단체급식의 방향 및 개선점을 찾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 학교급식은 「초·중등교육법」, 「식품위생법」에 따라 조리사와 영양교사를 별도로 두고 매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급식에 조리사를 의무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부터 학교급식비 지원 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임.
- 학교급식비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부터 식품비, 운영비, 조리사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 단가로 지원하였음. 이는 단가에 포함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같은 규모 학교더라도 학교마다 식품비에 차이가 나타나 급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학교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원하게 된 것임.

- 2023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50인 이하 학생수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4,390원, 중학생 5,060원, 고등학생 5,240원임.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의 경우, 50인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를 참고로 하되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단체급식 지원단가 재책정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함.

3. 조사 결과

가. 설문조사

- 설문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장을 대상으로 단체급식의 운영 실태 및 주된 어려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임. 이를 위해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웹서베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 기간까지 47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고 부실 기재 설문지를 제외하고 296개(61.8%)의 데이터를 최종분석함.
- **이용 아동 특성** : 초등 저학년 아동 미이용 센터는 1.3%, 초등 고학년 아동 미이용 1.0%, 중학생 미이용 19.3%, 고등학생 미이용 센터는 67.6%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이용함. 또한 아토피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이 1명 이상 속한 센터는 44.6%,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아동이 1명 이상 속한 센터는 45.6%로 나타나 센터의 1/2 정도가 급식 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속해 있음.
- **단체급식 운영의 유형** : 경기도 내 단체급식 운영의 유형은 83.4%가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함. 이외 11.5%는 위탁급식업체 또는 반조리식품으로 제공하고, 5.1%는 배달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급식횟수·유형** : 단체급식의 지원 횟수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에 따라 다름. 학기 중에는 평일 1일 기준 1식+1회 간식(70.9%)이 가장 많고, 1식(28.4%), 2식+2회 간식(0.7%) 순임. 방학 중에는 평일 1일 기준 2식+1회 간식(45.6%)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1식+1회 간식(34.1%), 1식/석식(9.5%), 1식/중식(6.1%), 기타(3.0%) 순으로 나타남.
- **급식종사자 현황** : 경기도 단체급식 지원을 위해 83.4%의 센터가 급식인력을 채용함, 채용방식은 공채채용(56.1%), 지인소개(15.9%), 기타(공공근로 등)(12.2%), 친인척 고용(3.0%), 생활복지사에서 전환(0.3%) 순임. 또한 급식종사자 연령대는 60대(39.2%)가 가장 많고, 50대(20.9%), 70대(16.2%), 40대(6.4%), 30대(0.7%) 순으로 나타나 60~70대 급식종

사자가 55.4%를 차지함. 근무시간은 3시간(47.3%)이 가장 많고, 4시간(22.3%), 5시간(8.4%), 2시간 이하(4.4%), 6시간(0.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3~4시간을 근무함.

- **급식보조금 입출금 현황** : 경기도 단체급식의 보조금은 월 400~500만원 미만(31.9%)이 가장 많고, 300~400만원 미만(28.5%), 500~600만원 미만(17.6%), 200~300만원 미만(7.1%), 600~700만원 미만(5.4%) 순임. 이중 식재료비로 월 300~400만원 지출하는 센터는 28.3%, 그다음은 400~500만원 미만(25.7%), 200~300만원 미만(23.0%), 500~600만원 미만(6.4%), 600만원 이상(2.7%) 순임. 반면 급식인건비 지출비는 60~80만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고, 100~120만원 미만(22.7%), 80~100만원 미만(19.2%), 120만원 이상(5.7%), 30~60만원 미만(4.1%) 순으로 나타나 인건비 지출이 100만원 미만이 67.8%에 해당함.
- **단체급식 단가 및 운영의 적절성** : 센터장 대상 단체급식단가(8,000원)의 적절성 조사 결과, 긍정 응답은 57.8%, 부정 응답은 42.2%로 나타나 긍정 응답이 15.6% 높게 나타남. 반면 인건비를 포함해 식재료비, 운영비 등의 총액 지원방식은 긍정 응답이 34.8%, 부정 응답이 65.2%로 나타나 부정 응답이 30.4% 높음. 또한 단체급식과 개인 매식의 동일 단가적용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48.0%, 부정 응답이 52.0%로 나타나 부정 응답이 4.0% 더 높게 나타남.
-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 센터장들은 급식종사자 채용(59.5%), 급식보조금 부족(38.9%), 급식종사자 관리(29.4%), 급식환경의 열악함(24.7%)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함. 이에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73.4%), 급식행정처리 간소화(48.3%), 단체급식단가 상향(30.1%), 급식환경 개선(25.0%) 등을 요구함.

나. 초점집단면접

- 설문조사를 통한 수치화된 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자와 급식종사자 입장의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시군 지역아동센터장 및 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함.

1) 지역아동센터장

- 2023년 11월 3일(5명), 6일(5명) 2회에 걸쳐(2시간씩/총 4시간) 비대면 회의로 진행함.
- **단체급식 운영의 구체적인 현황 및 어려움** : 급식비 20% 내 인건비 규정으로 급식종사

자의 짧은 근무시간 및 노령 종사자 채용, 적정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족 등의 문제가 생김. 이외에 방학급식, 규모가 작은 센터와 중고등학생 이용 센터의 급식 보조금 부족, 다문화아동 및 결석 아동으로 인해 급식 지원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

- **현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생각** : 현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방식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방식으로 바뀌어야 함. 이때 급식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하되 안정된 근로시간이 확보되어야 함. 또한 동일단가적용을 센터 규모별·이용 아동의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단가책정 시 간식비를 고려해야 함.
- **단체급식 운영 발전을 위한 지원 요구** : 식재료비와 인건비를 분리하고, 안정적 급식종사자 배치 및 근로시간 보장, 순수 식재료비 보장, 종사자 동반 식사 허용, 급식환경 개선, 급식종사자 의무교육, 상황에 따른 운영의 유연성 보장 등을 기대함.

2) 급식종사자

- 2023년 11월 2일 1회 동안 5명 대상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였고, 2시간 가량이 소요됨.
-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역할** : 급식종사자들은 주로 지인소개를 통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짧게는 7개월에서 9년간 급식 일을 하고 있음. 보통 1일 기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식단 작성 및 장보기를 제외한 급식 준비부터 마무리,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혼자 담당한다고 하였음. 방학 중 업무는 센터마다 다양하였음.
- **급식종사자로서의 보람** : 급식종사자들은 엄마·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동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따뜻하고 정성어린 집밥을 해 주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아동들이 음식을 잘 먹을 때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음.
- **업무상 어려움 및 개선점, 적정 근로시간** :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며 급식환경 개선 및 조리도구/조리물품의 주기적 교체를 바랐음. 또한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적정 근로시간 확보, 아동이 선호하는 식단 및 단체급식 점검 횟수 조절 등을 기대하였음.

다. 서면조사

- 각 시군에서 실제 다양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각 지역아동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음. 또한 학계·연구·현장의 전문가는 아동급식지원 제도를 다양

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음. 이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에 있어 단체급식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총 48명) 및 전문가(9명)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함.

1) 시군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서면조사를 통해 시군 아동급식지원 담당공무원 24명,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24명으로부터 총 48개의 자료를 수집함.
- **시군별 추가 지원** : 급식비 외 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시군은 조사에 응답한 24개 시군 중 18개(75%)로 나타남. 추가 지원내용은 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17개)이 가장 많고 체험학습 시 1식 기준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시군이 1개로 나타남.
- **단체급식의 만족도** : 아동급식지원 담당자들은 ‘중’ 을 응답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상’ 을 응답한 경우가 29.2%로 나타남. 이유로는 단체급식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나 아동의 자발적인 메뉴선택에 한계가 있고, 급식지원금 전부가 아동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음.
- **동일단가적용에 대한 생각** : 아동급식지원 담당자는 동일단가적용 의견이 58.4%,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33.3%로 나타나 형평성 문제 및 비효율적 행정업무 초래, 쏠림 현상, 민원·반발 소지 등 차등으로 인한 우려의 의견이 많았음. 반면,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50.0%, 동일단가적용 의견이 41.7%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인원수가 많을수록 급식단가가 낮아져야 한다고 하였음.
-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직간접 경험** :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모두 직접 경험 4.2%, 간접 경험 12.5%로 나타나 총 16.7%가 직간접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함.
- **단체급식 발전을 위한 개선점 및 지원요구** : 급식비와 조리사 인건비 분리 의견이 가장 많음. 이외에 급식비 20% 내 인건비·운영비·기타 비용 지출 규정 개정, 조리사 채용에 있어 가족 채용 금지, 경기도 차원의 정기적·비정기적 급식 점검 실시, 급식비에 종사자 식사비 추가지원 등을 요구하였음.

2) 학계·연구·현장 전문가

-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의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요구 및 시군 담당공무원의 의견 등을 기초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를 실시함. 전문가 서면조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1주간 실시함. 서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계 전문가 2명, 연구직 전문가 4명, 현장 전문가 3명으로 총 9명임.
- 전문가 서면조사를 위해 296개 설문조사와 15명의 초점집단면접, 48개 서면자료의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임의로 산출한 센터 규모별 급식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 및 예상 급여, 단체급식에서 식재료비 적정 단가 등을 질문지로 활용하였음.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임의 산출한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 **동일단가 적용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 : 전문가들은 찬성 3개, 반대 6개의 의견을 보여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단가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2배 많았음.
-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 지원에 대한 찬반 의견** : 전문가 9명은 모두 단체급식 보조금 지원 시, 인건비와 식재료비는 분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이유는 각 목적에 맞는 지출 보장, 인건비 우선 지출로 사업비가 없기 때문, 경력 급식종사자 채용이 어려워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 등을 제시함.
- **급식인력의 자격기준에 관한 의견** : 전문가들은 급식인력의 나이 제한은 필요하지 않고, 조리사 자격증 및 단체급식 경력은 권고사항 정도의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이외에 기타 자격기준으로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종사자 친인척 채용 지양, 아동단체급식에 관한 이해 교육 필수 등을 제시함.
- **급식인력의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 산출에 관한 의견** : 전문가들은 급식인력의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를 시설 규모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은 찬성하나, 2개(30인 미만/30인 이상) 또는 3개(19인 이하/20~29인 이하/30인 이상)로 나눌 것을 제안함. 또한 방학 2식 제공 기준 제시, 근로시간 산출에 따른 과업범위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함.
- **식재료비 적정 단가 산출에 관한 의견** : 시설 규모에 따라 식재료비 차등에 찬성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급식단가를 세분화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와 더불어 2개 또는 3개로 구간을 축소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음. 청소년 이용 아

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 지원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 방안** : 운영비와 관련해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전자제품에 대해 분기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7명, 수정 필요가 2명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 반응을 보였음. 분기별 사업보다는 월별 사업 신청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음. 이외에 전문가들은 조리인력의 교육 지원을 통한 급식의 질 제고,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 부가급식비 지원(월 1회 피자, 치킨 등의 외식비), 다함께돌봄센터와의 동일단가 적용, 급식종사자 공개채용 의무화, 광역단위 친환경급식재료 보급 등의 의견을 제시하였음.

4.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 제언은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일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 요구할 사항과 더 나은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제시함.

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1)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방식에서 인건비·식재료비 분리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 현재 급식보조금의 총액 지원방식은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예를 들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는 총액 급식보조금이 적어 20% 내에서 적정 급식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움. 또한 급식인력의 근로시간이 짧아 설거지와 뒷정리 등을 다하지 못하고 퇴근해 센터 종사자(센터장 혹은 생활복지사 등)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많음. 이에 센터 종사자는 급식 업무에 부담이 생기고, 다른 업무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또한 급식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다 보니 운영비로 지출할 금액이 모자라 조리도구·그릇류 등을 사용기한에 맞춰 제때 교체하지 못함. 특히 이용 아동이 갑작스러운 질병·가족/학교 행사·이사 등으로 결석을 할 경우,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급식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생김.

- 이에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장 및 전문가들은 급식인력의 인건비와 식재료비(운영비 포함)를 분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단체급식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따라서 현재 아동급식지원 제도의 총액 보조금 지원방식을 인건비·식재료비(운영비 포함) 분리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함.

2) 단체급식에 적합한 적정 급식단가로의 재조정

- 만약 단체급식 지원에 있어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분리 지원한다면 현재 아동급식지원 단가는 단체급식에 적합한 적정 단가로 재조정 되어야 함. 이때 인건비와 식재료비(운영비 포함)는 시설 규모 및 아동의 특성(이용 아동 수, 연령)을 반영하여야 하고, 급식인력의 근로시간은 급식준비부터 마무리 등을 포함해 적정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 시설 규모별 세분화된 급식단가는 행정상 혼란과 불편함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시설규모에 따른 이용 아동수 기준(3개 구간)과 생활복지사 배치기준(2개 구간)으로 나누어 2개(안)의 급식인력 적정 근로시간 및 인건비(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식재료비 등을 제시함. 또한 급식운영비의 경우, 월 식재료비의 10%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안함.

[표 1] 단체급식 적정 단가에 대한 제안(1안)

(단위: 원)

구분		19인 이하(현원)	20~29인 이하(현원)	30인 이상(현원)
급식인력 인건비	적정 근로시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소정근로 시간(계산)*	1주 18시간×4.345주=78.21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21시간×4.345주=91.25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24시간×4.345주=104.28시간 (주휴시간 포함)
	급식인력 월 수령액	(기본급) 752,380원 -9,620원×78.21시간 (연차수당) 26,455원 9,620원×3시간×11개월÷12개월	(기본급) 877,825원 -9,620원×91.25시간 (연차수당) 30,864원 9,620원×3.5시간×11개월÷12개월	(기본급) 1,003,174원 -9,620원×86.9시간 (연차수당) 35,273원 9,620원×4시간×11개월÷12개월
	4대 보험 사업주부담금	75,080원	87,630원	96,760원
	센터 월 적립금	(퇴직적립금) 62,698원 =752,380원÷12개월	(퇴직적립금) 73,152원 =877,825원÷12개월	(퇴직적립금) 83,598원 =1,003,174원÷12개월
	월 총급여	916,613원	1,069,471원	1,218,805원
식재료비 (운영비 포함)	급간식비	총 6,320원 4,62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증 액비) + 간식비(1,700원) ▶단체급식 기준안 -학기 중 기준, 1일 1식+1회 간식을 원칙으로 함 -급식인력 채용을 기준으로, 조리식 간식(떡볶이, 만두 등) 주 3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함 -간식비와 급식비의 사용은 월 단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이 가능함	총 6,200원 4,50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증 액비) + 간식비(1,700원)	총 6,090원 4,390원(학교급식단가)+ 간식비(1,700원)
	청소년 이용 아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부 중고등학생 포함 센터, 또는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가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중 고등학생) 급식단가를 학교급식 중간 금액인 5,150원으로 책정함. 이에 초등학생 기준 급식단가(4,390원)에 760원을 추가 지원함 ▶단체급식 보조금 총액 예시 -초등학생 25인, 중학생 4인, 고등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31인×6,19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6인×760원×20일) = 3,929,000원 -초등학생 21인, 중학생 5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26인×6,30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5인×760원×20일) = 3,352,000원 -초등학생 15인, 중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17인×6,42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2인×760원×20일) = 2,213,200원		

주: 1)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산출한 금액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함 (4.345주=365일÷12월÷7일)

3) 4대 보험료 등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기본급을 입력하여 산출함

[표 2] 단체급식 적정 단가에 대한 제안(2안)

(단위: 원)

구분(종사자 배치 기준)		29인 이하(현원)	30인 이상(현원)
급식인력 인건비	적정 근로시간	3시간 30분	4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소정근로 시간(계산)*	1주 21시간×4.345주=91.25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24시간×4.345주=104.28시간 (주휴시간 포함)
	급식인력 월 수령액	(기본급) 877,825원 =9,620원×91.25시간 (연차수당) 30,864원 9,620원×3.5시간×11개월÷12개월	(기본급) 1,003,174원 =9,620원×86.9시간 (연차수당) 35,273원 9,620원×4시간×11개월÷12개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87,630원	96,760원
	센터 월 적립금	(퇴직적립금) 73,152원 =877,825원÷12개월	(퇴직적립금) 83,598원 =1,003,174원÷12개월
	월 총급여	1,069,471원	1,218,805원
		총 6,090원 = 4,390원(학교급식단가) + 간식비(1,700원)	
식재료비 (운영비 포함)	급간식비	▶단체급식 기준안 -학기 중 기준, 1일 1식+회 간식을 원칙으로 함 -급식인력 채용을 기준으로 조리식 간식(떡볶이, 만두 등) 주 3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함 -간식비와 급식비의 사용은 월 단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이 가능함	
	청소년 이용 이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부 중고등학생 포함 센터, 또는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가 있음을 감안하여, 청 소년(중고등학생) 급식단가를 학교급식 중간 금액인 5,150원으로 책정함. 이에 초등학생 기준 급식단 가(4,390원)에 760원을 추가 지원함 ▶단체급식 보조금 총액 예시 -초등학생 25인, 중학생 4인, 고등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31인×6,19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6인×760원×20일) = 3,929,000원 -초등학생 21인, 중학생 5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26인×6,30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5인×760원×20일) = 3,352,000원 -초등학생 15인, 중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17인×6,42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2인×760원×20일) = 2,213,200원	

주: 1)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산출한 금액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함 (4.345주=365일÷12월÷7일)

3) 4대 보험료 등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기본급을 입력하여 산출함

3) 센터별 단체급식 유형 선택권 보장 및 급식인력의 자격기준 제시

- 현재 단체급식의 유형은 급식인력을 통한 직접 조리 지원, 위탁업체를 통한 지원, 반조리식품을 통한 지원, 도시락 배달 지원 등 다양함.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단체급식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급식 유형을 지원할 것인지는 센터별 선택이 가능해야 함. 또한 급식인력이 직접 조리 지원을 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급식보조금 역시 개인 매식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임. 급식인력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면 인건비 책정이 별

도로 필요하지 않고, 아동에게 개인 매식과 동일한 완제품의 급식이 지원되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직접 조리를 통한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급식인력의 자격기준은 나이 제한(70세 이하)·조리사 자격증 취득 여부·단체급식 경력 등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하 되,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아동단체급식에 관 한 소정의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도록 제안함.

[표 3] 급식인력 자격 및 과업 범위 기준

구분	내용
나이 제한	- 권고사항(70세 이하)
조리사 자격증	- 권고사항
단체급식 경력	- 권고사항
기타 자격기준	-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약물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매년 관련 진단서 제출 필수(지역아동센터 관리지표에 포함)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종사자의 친인척 채용은 지양할 것)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단체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 필수
과업 범위 및 준수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을 준수하여 급식을 제공함(※ 식재료 구입이 어렵거 나 체험활동 등으로 대체식 지원 시, 센터장과 상의하여 조정하되 기록으로 남김)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위생관리, 남은 음식 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설거 지, 급식실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함(조리식 간식은 주 3회 이상을 포함함) - 깍두기와 겉절이 정도의 김치류를 담을 수 있음 - 주방용구(칼, 도마 등)·행주 등은 매일 살균·소독을 원칙으로 함 - 주 1회 이상 급식실 대청소를 실시함

나. 경기도의 역할

1) 경기도 단체급식 활성화 방안 : 방학급식·특별식 지원

- 경기도 단체급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방학급식이 안정적으로 지원되어야 함. 일 반적으로 방학 중에는 학기 중보다 1끼의 식사 공백이 더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2끼 이상을 지원하는 센터는 47.3%에 불과함. 이는 시군별로 방학 중 2식 급식비가 지 원되지 않는 시군이 있고 1식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되더라도 이용 아동 모두 방학 중 2끼를 단체급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임.
- 따라서 경기도는 방학 중 2끼의 단체급식을 직접 조리식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급식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30~50만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경우, 취약가정 아동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외식의 기회나 피자나 치킨 등

아동이 선호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음. 이에 경기도는 센터에서 아동이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월 1회 정도 특별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센터당 부가급 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이는 경기도 단체급식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단체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인 것이라 기대함.

2) 아동급식환경 개선 및 질 제고 확립

- 단체급식의 질은 안정적인 급식인력 확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환경 및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사용이 중요함. 이에 경기도는 단체급식의 환경 개선 및 질 제고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그러나 현재 단체급식 급식보조금은 급식시설의 가전제품이나 급식도구를 제때 교체할 만큼 운영비의 여유가 없는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는 월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에 필요한 오래된 가전제품 및 급식도구 등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예를 들어, 단체급식을 위한 급식시설 및 급식도구, 가전제품 등이 고장나거나 사용기한이 다 된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물품의 구입년월, 사용기한, 사용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청을 하면 경기도가 선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임.
- 또한 경기도는 단체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급식인력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체급식의 인력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달리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급식 업무가 가능함. 이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이해 및 단체급식 종사자로서의 역할, 영양·위생·안전·조리 등에 관한 지식과 태도가 부족할 수 있음. 또한 급식종사자는 짧은 근로시간 및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대체로 노령의 인력이 많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경기도는 급식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해 급식종사자 신규 채용이 보고되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단체급식의 이해를 기초로 영양·위생·안전·조리 등에 관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견직 급식 전문강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이외에도 경기도가 믿을만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를 공식 입찰하여 광역단위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이 경우, 경기도의 결식 우려 아동들은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통해 보다 건강한 1끼의 식사를 할 수 있고, 각 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뢰할만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는 전체

단체급식의 질 제고를 확립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

3) 단체급식 운영의 유연성 보장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은 아동의 수, 연령, 특징 등이 다양한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 이중 다문화가정 아동은 종교에 따라 먹지 못하는 식품류가 다르고, 아토피·알레르기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식단을 그대로 제공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센터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흥미에 따라 직접 간식을 요리해 먹고 싶어 하기도 함.
-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이 나왔을 때, 식단에 없는 식재료가 보관돼 있는 경우 지적을 받거나 평가에 영향을 받는 등의 사례들이 있어 센터장 및 급식종사자는 어려움을 호소함. 이에 다문화가정, 아토피·알레르기 피부질환, 청소년 아동들의 자체 요리활동 등을 위해 일부 식단에 없는 식재료 및 대체품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운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급식보조금 부정 사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품을 활용하거나 청소년 요리활동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할 때는 반드시 날짜와 보관용 식재료 보관이유, 용도 등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2. 연구내용 및 방법	6
가. 연구내용	6
나. 연구방법	6

제2장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정책 현황

1.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검토	11
가. 법적 근거	11
나. 선행연구 고찰	16
2. 정부의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사업안내	19
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지원 사업안내(2023년)	20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2023년)」: 급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25
3.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 현황	30
가.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예산 현황	30
나. 시군별 아동급식지원 유형 현황	31
다.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관련 현황	32
4. 전국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및 학교급식(50인 이하) 방향 검토	35
가. 전국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2020~2023년) 분석	35
나. 학교급식(50인 이하)의 방향 검토(경기도교육청 2023년 기본계획)	39

제3장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45
가. 설문조사 개요	45
나. 설문조사 결과	46
2. 초점집단면접	61
가. 지역아동센터장 초점집단면접	61
나. 급식종사자 초점집단면접	73
3. 서면조사	81
가.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서면조사	81
나. 전문가 서면조사	86

제4장 논의 및 정책 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99
가. 단체급식 운영 현황	99
나.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따른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점	102
2.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104
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104
나. 경기도의 역할	110

참고문헌	113
------------	-----

부 록	117
-----------	-----

부록 1. 경기도 단체급식지원 실태조사(지역아동센터장용) 조사지	119
부록 2. 전문가 서면자문 조사지	130

표 목 차

[표 1-1]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7
[표 1-2] 초점집단면접 내용 및 방법	7
[표 1-3] 서면자문 목적 및 내용	7
[표 2-1]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11
[표 2-2]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12
[표 2-3] 경기도 31개 시군 아동급식 관련 조례	14
[표 2-4]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15
[표 2-5] 2012~2023년 아동급식지원 선행연구 목록	17
[표 2-6]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연혁	20
[표 2-7]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21
[표 2-8] 아동급식지원 주요 주체별 담당업무	23
[표 2-9] 급식제공 주체 및 재원 부담	23
[표 2-10] 아동급식지원 주요 주체별 담당업무	24
[표 2-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	26
[표 2-12]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급식관리 사항	27
[표 2-13]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의 근거 및 조건	28
[표 2-14]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 운영비 지원 기준	29
[표 2-15] 2023년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현황	31
[표 2-16] 시군별 급식유형 지원 현황	31
[표 2-17]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설치 현황	32
[표 2-18]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월 단체급식 현황('23.7~9월 월평균 기준)	34
[표 2-19] 아동 단체급식 보조금 횡령 보도자료(2020~2023년)	35
[표 2-20] 2023년 학교급식경비 지원기준(50인 이하 학생수)	41

[표 3-1] 설문조사 내용	45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센터장)	47
[표 3-3] 조사대상자(지역아동센터장) 경력	48
[표 3-4] 이용 아동 연령	48
[표 3-5] 이용 아동의 급식 관련 특징	49
[표 3-6] 급식운영의 유형	49
[표 3-7] 학기 중(평일) 제공하는 급식 횟수/유형	50
[표 3-8] 학기 중(주말/토) 제공하는 급식 횟수/유형	50
[표 3-9] 방학 중(평일) 제공하는 급식 횟수/유형	50
[표 3-10] 급식종사자 채용 여부 및 채용 방식	51
[표 3-11] 급식종사자 연령대	51
[표 3-12] 급식종사자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여부	51
[표 3-13] 급식종사자 근무시간	52
[표 3-14] 급식종사자 급여	52
[표 3-15] 식단 작성 주체	53
[표 3-16] 외부 식단 참고 기관	53
[표 3-17] 급식재료 구매 주체	53
[표 3-18] 주된 식재료 구매처	54
[표 3-19] 식재료 운반 방식	54
[표 3-20] 급식보조금 월총액	55
[표 3-21] 실제 인건비 대비 급식보조금 규정 산출 인건비	55
[표 3-22] 식재료비 월 지출액	56
[표 3-23] 급식운영비 월 지출액	57
[표 3-24] 급식보조금 운영 수준	57
[표 3-25] 단체급식 지원의 적절성	58
[표 3-26] 단체급식 지원의 적절한 방식	58
[표 3-27]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59
[표 3-28]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60
[표 3-29] 초점집단면접 내용(지역아동센터장)	61

[표 3-30]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배경 정보(지역아동센터장)	62
[표 3-31] 초점집단면접 내용(급식종사자)	73
[표 3-32]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배경 정보(급식종사자)	74
[표 3-33] 서면조사 참여자 정보(시군 담당공무원)	82
[표 3-34] 경기도 단체급식을 위한 시군의 추가 지원(지역아동센터 담당자)	83
[표 3-35] 단체급식 이용 아동의 만족도(아동급식지원 담당자)	83
[표 3-36] 급식보조금 점점 주기(지역아동센터 담당자)	84
[표 3-37] 급식보조금 관리 방법(지역아동센터 담당자)	84
[표 3-38] 급식지원단가의 동일적용에 대한 의견	84
[표 3-39] 단체급식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직·간접 경험 여부	85
[표 3-40] 서면조사 참여자 정보(전문가)	86
[표 3-41] 설문조사 내용 : 연구자가 임의 산출한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의 적절성 ...	87
[표 3-42] 설문조사 내용 : 단체급식 적정 식재료비 단가 산출의 적절성	88
[표 3-43] 동일단가 적용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88
[표 3-44] 총액 지급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89
[표 3-45] 급식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90
[표 3-46] 시설 규모별 5개로 나누어 산출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1
[표 3-47]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1
[표 3-48] 시설 규모를 3개로 나누어 산출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2
[표 3-49] 시설 규모별 적정 식재료비 산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3
[표 3-50] 청소년 이용 아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3
[표 3-51] 일반운영비에 급식운영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4
[표 3-52] 분기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4
[표 3-53] 법적 종사자의 급식비 추가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95
[표 3-54] 효율적인 단체급식 지원에 대한 기타 전문가의 의견 결과	96
 [표 4-1] 단체급식 적정 단가에 대한 제안(1인)	107
[표 4-2] 단체급식 적정 단가에 대한 제안(2인)	108
[표 4-3] 급식인력 자격 및 과업 범위 기준	109

그림 목 차

[그림 2-1] 아동급식 지원체계	22
[그림 2-2] 2022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안) 추진방향	40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성장기 아동에게 있어 삼시세끼 안정적이고 균형 잡힌 식사는 모든 아동이 누려야 할 기본적인 생존권이자 발달권임. 또한 아동의 식생활은 아동기 신체와 인지발달뿐만 아니라 성인이 된 후에도 체형, 체질, 건강 등에 있어 전 생애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빈곤이나 보호자 부재 등으로 결식 우려가 있거나 결식이 발견된 아동은 2022년 말 기준 총 283,858명¹⁾으로 나타남.
- 아동은 경제적 결핍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보호할 능력이 없는 의존적 존재임(조애저, 2008). 무엇보다 빈곤 아동을 방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사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는 미래 건강의 기반(foundation of future health)이 되기 때문에 아동·청소년기 건강 관련 결핍요인들을 조기 개입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건강한 인적자본개발 관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김정은, 도영경, 2018).
- 우리나라는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 결식 및 영양결핍 등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권 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보호하고자 2000년부터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이는 보호자 부재 및 맞벌이 등으로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계층 아동의 환경과 욕구에 맞는 급식 제공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함임.
 -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결식 우려 아동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 및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자녀 중 결식 우려 아동이나 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등이 포함됨.
 - 아동급식지원의 내용은 조·중·석식 중 가정 상황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끼니 1~3식을 제공하며, 지원방법은 단체급식소(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급식카드(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중 가정 및 지역 여건, 대상 아동이 원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함.
 - '22.9월 기준 1식당 지원 단가는 8,000원 이상으로, 단체급식, 급식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모두 동일한 지원 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1)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p.4 지원대상 통계

기준금 이상의 급식지원(9,000원)을 추진하는 곳(서울시 송파구·종로구, 충청북도 옥천군 등)이 늘어나는 추세임.

- 중앙정부에 발맞춰 경기도 역시 2022년 8월부터 1식 기준 8,000원의 아동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음. 2023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의 수는 총 50,817명으로, 이중 급식카드를 통한 지원 아동은 25,899명(51.0%), 단체급식 지원 아동은 24,918명(49.0%)에 해당함²⁾. 급식카드로 지원받는 아동은 G드림카드(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카드)를 이용해 일반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직접 음식을 사 먹거나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플랫폼 ‘배달특급’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을 수 있음. 반면 단체급식으로 지원받는 아동은 관할 지역 내 소속 지역아동센터에 아동급식 보조금이 지원되고 이를 통해 급식을 제공받음.
-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은 결식아동의 급식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임. 2020년 7월에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3곳에서 급식비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을 횡령한 의혹이 언론에 보도³⁾된 바 있고, 전라남도 구례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보호아동들에게 사료용 라면과 빵을 먹여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되었음⁴⁾. 또한 2021년 6월에는 결식아동 급식비 명목의 보조금 수천만 원을 인건비, 식자재 비용으로 조작해 빼돌린 후, 자녀교육비 및 개인생활비로 쓴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및 운영자 6명이 적발돼 조사를 받았음⁵⁾.
- 이에 경기도는 급식비 등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사례를 제보한 공익제보자에게 포상금 150만원을 지급⁶⁾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사회복지시설의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허위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지출 등 사회복지 보조금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음⁷⁾.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일반적으로 가정 내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라거나 영양적으로 취약계층 아동일 가능성이 높음.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영양적이고 균형

2) 경기도청 내부자료. 2023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현황.

3) MBN뉴스. (2020.07.07.). 아이들 급식비인데... 지역아동센터 정부보조금 집단 횡령 의혹.

4) 연합뉴스. (2022.06.17.). “사료용 라면·빵 먹여” 구례 지역아동센터 학대 의혹.

5) 일요신문. (2021.06.23.). “식자재 비용 조작에 횡령까지” 결식아동 급식비를 자녀 교육비로 빼돌려 쓴 ‘간 큰 아동센터장’

6) 대한급식신문. (2022.07.14.). ‘급식비 횡령, 공익신고로 딱 걸렸다’

7) 에이블뉴스. (2023.01.25.).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잡힌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이용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음(권수연,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적 외 사용으로 개인의 양심과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현 아동급식지원의 체계와 관리시스템에 있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특히 2020년 이후, 매년 오르고 있는 아동급식비 지원 단가(2020년 5,000원 이상, 2021년 6,000원 이상, 2022년 7,000원 이상, 2023년 8,000원 이상)는 급식비 지출의 주체가 개인이 나 단체나와 상관없이 주로 물가상승률에 따른 아동의 영양 불균형 방지를 위한 단가로 조정된 것임. 일반적으로 같은 음식이라도 개인이 사 먹는 매식비와 단체급식에 필요한 비용은 동일할 가능성이 낮음. 또한 단체급식의 경우, 급식의 질 제고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물가상승률 외에 고려해야 할 요인(이용 아동의 연령 및 아동 수, 이용시간, 급식환경, 식단, 식재료 공급처, 급식인건비, 식재료비, 물품취득비, 배송비 등)들이 매우 다양함.
- 그러나 현재는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지원 단가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용 아동 수 및 아동의 연령, 급식 운영방식이 다양한 지역아동센터는 센터별 다양한 단체급식 운영상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이 높음. 반대로 규모의 경제에 따른 급식비 부정 수급의 틈새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무엇보다 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을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50인 이하 시설이라 조리사(급식담당자) 또는 영양사 의무 배치 및 자격기준 등이 없는 상황임. 이는 급식조리사 채용 여부 및 채용 형태가 센터마다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급식조리사 부재로 인한 센터 종사자(센터장, 생활복지사 등)의 급식 업무 부담뿐만 아니라 명확한 규정 부재로 인한 관리 소홀과 아동급식의 질 제고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 이에 본 연구는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이 그 목적과 취지에 맞게 온전히 취약계층 아동의 급식을 위해 잘 제공되고 있는지,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동일지원방식 및 지원단가는 적절한지, 효율적인 단체급식을 위해 필요한 지원내용 및 요구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함으로써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이는 경기도 내 결식우려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수준의 급식을 제공함으로써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아동·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발달하도록 돕기 위함임.

2. 연구내용 및 방법

○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가. 연구내용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자료 분석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 현황 분석
 - 시군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 현황 분석
-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장 대상 설문조사
 - 단체급식 운영의 실태 및 어려움, 개선점, 지원요구 조사
- 시군 지역아동센터장, 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
 - 센터장, 급식종사자 입장의 만족·불만족 요인, 개선점, 지원요구 의견 수렴
- 시군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총 48명 및 전문가 9명 대상 서면조사
 - 시군별 아동급식 추가지원 여부 및 급식보조금 부정 사례 직·간접 경험
 - 동일단가적용 및 총액 지원방식의 적절성 등에 관한 의견
 - 단체급식 적정 단가 및 단체급식 지원을 위한 효율적인 방안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단체급식)의 발전방안 제시

나. 연구방법

- 문헌 및 정책 분석
 - 법적 근거 및 최근 10년간(2012~2023년)의 아동급식지원 관련 선행연구 고찰
 - 정부 및 교육청(학교급식)의 관련 정책 검토
- 관련 기사 및 통계자료 분석
 - 2020~2023년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분석
 - 시군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보조금 등) 관련 행정통계자료 검토

○ 시군 지역아동센터장 296명 대상 설문조사

[표 1-1] 설문조사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시군 지역아동 센터장 (296명)	일반사항	-지역, 나이, 성별, 자격, 최종학력, 경력, 설립유형, 근무지속기간, 정원/현원, 이용아동 학년/성별, 생활복지사(종사자), 운영시간, 조리실 여부, 1일 기준 급식·간식지원 횟수(학기중/방학중) 등	웹서베이 방식 자기기입 설문조사
	단체급식 운영 현황	-식단활용 방식(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중앙지원단, 기타), 재료구입처, 재료 구입 방법(인터넷 주문, 직접 장보기, 인근 마트 배달), 남은 음식 처리/보관음식, 1인1식 단가, 단가적절성 등 -급식종사자 현황: 채용방법, 나이, 경력, 자격증여부, 급여, 근무시간, 업무내용 등	
	개선점, 지원요구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개선점 등 -지원요구 : 식재료 및 시설관리(식재료, 조리기구, 시설, 식재료구입채널), 행정관리(예산사용, 행정절차, 보조금), 식단관리(식단제공, 조리교육 등), 인력관리(전문인력 확보), 직원교육 등	

○ 초점집단면접 : 지역아동센터장(10명), 급식종사자(5명) 대상 초점집단면접

[표 1-2] 초점집단면접 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	조사목적	조사내용	조사방법
지역아동 센터장 (10명)	단체급식 운영 실태 및 어려움, 개선점, 지원요구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의 구체적 운영 방법(식단, 식재료, 급식인력, 행정관리 등) 및 어려움, 지원요구, -발전방안, 급식단가의 적절성, 적정 단체급식단가	대면/비대면 집단면접 (5명씩 2회)
급식종사자 (5명)	업무상 어려움, 개선점, 기대와 요구	-단체급식 담당자 실태(자격, 급식관련 근로시간, 처우, 어려움, 급식정보 취득방법, 관리방식 등) 및 어려움, 개선점, 기대와 요구	비대면 집단면접 (5명 1회)

○ 시군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각 24명 및 전문가 9명 대상 서면조사

[표 1-3] 서면자문 목적 및 내용

조사대상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시군 아동급식지원 담당공무원 (24명)	-시군별 아동급식 추가지원 여부 -담당자가 바라본 아동급식지원의 적절성, 효율적인 단체급식 방안	서면조사
시군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24명)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관리상 어려움 -담당자가 바라본 아동급식지원의 적절성, 효율적인 단체급식 방안	서면조사
학계·연구·현장 전문가 (9명)	-개인매식·단체급식의 동일단가적용에 대한 의견 -단체급식 지원 시 고려사항, 단체급식의 적정단가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 방안 및 정책 방안	서면조사

○ 전문가 자문 : 연구계획보고 및 내·외부 전문가 자문회의(3회), 도청 담당공무원 간담회(3회)

여 백

II

선행연구 검토 및 관련 정책 현황

1.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검토
2. 정부의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관련 사업안내
3.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 현황
4. 전국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및 학교급식 방향 검토

여 백

1. 법적 근거 및 선행연구 검토

가. 법적 근거

-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를 법적 근거로 함. 「아동복지법」 제3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 사항을 지원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것을 명시하였음.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서는 급식최저단가 결정 시 고려사항, 급식대상자 선정 및 급식 신청 가능자 등을 제시하고 있음.

[표 2-1]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구분	내용
「아동복지법」 제35조 (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 보호자는 아동 건강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해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급식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구분	내용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자료: 「아동복지법」, 「아동복지법 시행령」

- 경기도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2021년 5월 20일 광역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 경기도 조례에는 아동급식지원의 목적과 도지사의 책무, 계획 수립, 아동급식 연구, 지원대상, 지원방법, 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들을 명시하였음.

[표 2-2]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구분	내용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성장기 아동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단체급식 지원”이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급식 지원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도내 모든 아동이 건강한 영양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아동들에게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는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도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가 경기도에서 생산된 우수한 농산물 중심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양질의 아동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동급식에 관한 계획(이하 “아동급식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급식지원 대상아동 선정 및 급식지원 방법 2. 급식단가와 지급 방법 및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3. 식중독 예방 등 급식 위생관리 대책 4.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각 시·군의 자료협조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고 아동급식 계획 수립 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 (아동급식 연구)	① 도지사는 아동의 식생활을 고려한 영양상태 증진 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를 아동급식과 관련된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법인·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분	내용
제5조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4.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5.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6. 보호자가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으로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7.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각 시·군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
제6조 (지원방법 등)	① 도지사는 해당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 급식지원 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집단급식소를 통한 급식 지원 2. 아동급식 카드가맹점(일반음식점, 편의점 등)을 통한 급식 지원 3. 도시락 배달 4. 부식 지원 등 ② 도지사는 아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급식지원의 안내 및 홍보)	도지사는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각 시·군을 통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고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급식지원의 관리)	도지사는 각 시·군의 아동급식 현황에 대한 통계를 취합하여 관리하고, 아동급식 전반에 대한 지도,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경기도 아동급식위원 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경기도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도내 아동의 영양 및 건강 증진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 각 시·군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급식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에서 추천한 경기도의원 2. 교사 또는 학부모 대표 3.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 4.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분	내용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참석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도지사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아동급식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기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자료: 「경기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 경기도 31개 시군 역시 기초단위 지자체별로 조례를 제정하여 해당 지역의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표 2-3] 경기도 31개 시군 아동급식 관련 조례

번호	조례명	번호	조례명
1	수원시 저소득층 아동 지원 조례	17	가평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	안양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18	안산시 아동급식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시흥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9	이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4	화성시 결식아동 급식지원 조례	20	부천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5	용인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1	파주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번호	조례명	번호	조례명
6	광명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22	구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7	군포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3	남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8	안성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24	의왕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9	과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25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0	고양시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6	오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11	의정부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27	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12	동두천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28	여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13	군포시 아동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29	평택시 아동급식지원 조례
14	광주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30	포천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15	연천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31	양평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16	하남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	-	

자료: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검색(2023.6.30.)

- 한편, 결식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근거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아동복지법」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를 기초로 함. 「아동복지법」 제52조제8항에 따르면, 지역아동센터란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의미함.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1조(휴업·폐업 등의 신고), 제54조~제75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비용 징수,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면세, 압류금지, 조사, 권한 위임·위탁, 벌칙 등) 등 「아동복지법」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름(「사회복지사업법」 제3조).

[표 2-4] 지역아동센터의 주요 법적 근거 「아동복지법」

구분	내용
제52조 (아동복지시설의 종류)	8.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제59조 (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2. 보호대상아동의 가정위탁 보호에 따른 비용

구분	내용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 감독,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비용 4. 삭제 <2016. 3. 22.> 4의2. 제26조에 따른 신고의무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4의3. 제29조의7제2항 각 호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5.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에 필요한 비용 6. 제38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비용 7. 제42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 8. 제58조에 따른 아동복지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비용
제61조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장 등 보호수탁자, 보장원의 장,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 아동복지단체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3. 아동복지시설의 경영에 관하여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보조금의 사용잔액이 있는 경우 5.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료: 「아동복지법」

- 결식아동을 위한 급식지원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의 법적 근거인 「사회복지사업법」과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운영됨.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 및 메뉴 선정, 식재료 구입 경로 및 구입처, 구입방법, 급식담당인력, 보조금 지출항목 등에 관해서는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의 급식 관련 매뉴얼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나. 선행연구 고찰

- 최근 10년간(2012~2023년)의 아동급식지원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봄(학위논문 제외). 총 26개의 선행연구 중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연구는 8개, ‘급식서비스 및 품질, 개선방안’ 관련 연구는 7개, ‘아동급식카드’ 관련 연구는 6개, ‘급식종사자 및 이용 아동’ 관련 연구는 3개, ‘배달 도시락’ 관련 연구는 2개로 나타남.
- 주목할 점은 2018년 이후 급식지원 유형 중 아동급식카드 및 도시락 배달 관련 연구는 점차 증가한 반면,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관련 연구는 2018년 이후 1건에 불과해 미비한 수준이라는 것임. 이는 본격적으로 급식단가가 오르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지역아동센터 급식 실태에 관한 실질적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미임. 특히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연구 중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 역시 급식관리자의 지식수준에 따른 급식관리의 중요도와 수

행도에 관한 연구(권수연, 김옥선, 2021)로, 단체급식단가의 적절성 및 단체급식 운영의 실태·개선점과는 관련이 적음.

- 또한 총 26개의 선행연구 중 광역·기초지자체 아동급식 관련 연구는 15개로 나타났는데, 이중 경기도 관련 연구는 ‘경기도 아동급식사업 내실화방안 연구(양정선, 2018)’ 및 ‘성남시를 중심으로 도시락 이용만족도 연구(2개)’ 정도만 있을 뿐 경기도 전 지역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실태 및 아동급식지원 발전방안 연구는 없는 상황임.

[표 2-5] 2012~2023년 아동급식지원 선행연구 목록

구분	내용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연구	•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권수연, 이영미, 김소영, 김진영, 윤지현, 2012) •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위한 적정 배식량 제안(이상은, 심재은, 권수연, 여운재, 윤지현, 2014) • 지역아동센터 급식서비스의 품질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고성희, 이경언, 2014) •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별 급식 실태(이정숙, 2014) •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리 질 향상을 위한 니즈 분석(권수연, 2017) • 대구·경북지역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운영 실태조사(박숙현, 정현아, 2017) •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서비스 경험과 건강 향상(김정은, 도영경, 2018) • 급식종사자의 급식관리 지식수준에 따른 급식관리 중요도 및 수행도 분석 -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권수연, 김옥선, 2021)
급식서비스 및 품질, 개선방안 관련 연구	•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방안 연구(박금식, 하정화, 허두진, 2012) • 원주시 결식아동지원급식의 품질 속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오혜숙, 2014) • IPA분석을 통한 미취학아동 급식의 급식서비스 품질특성 및 급식운영 평가-한국·중국·일본의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박상현, 주나미, 2015) • (서울시)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이승미, 2015) • 강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장은진, 2017) • 경기도 아동급식사업 내실화방안 연구(양정선, 2018) • 대구지역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개선방안 연구(정영태, 2018)
아동급식카드 관련 연구	• 이상패턴 분석을 통한 정책의 적합성 분석 연구 : S시 아동급식전자카드 사례를 중심으로(전종식, 권오병, 2018) • 모바일결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선 제안(전현지, 2020) • 부산시 아동급식전자카드 가맹점 분포 및 이용자 실태 분석(이수진, 이지윤, 강정은, 류호경, 2021) •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송지현, 김창현, 박진호, 남재현, 2021) • 결식아동을 위한 선한 영향력 가게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앱 개발(조원제, 이윤지, 박의진, 박예림, 태형배, 김상진, 2022) •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이수진, 류호경, 2022)

구분	내용
급식 종사자 및 이용 아동 관련 연구	- 결식 경험이 신체건강,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조수민, 노총래, 2014) - 아동위탁급식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소명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김기영, 조원영, 2018) - 원주시 결식아동의 자존감이 지원급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오혜숙, 2019)
배달 도시락 관련 연구	- 성남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사업 도시락에 대한 중요도 및 만족도(ISA) 분석(권수연, 김옥선, 2021) - 경기도 성남지역 아동급식지원사업 배달 도시락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분석(권수연, 김옥선, 2023)

- 특히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연구의 주요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급식서비스의 품질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고성희, 이정연, 2014)」에서는 지역아동센터 급식서비스의 품질요인을 5개요인(위생, 음식, 급식환경, 부대서비스, 급식담당자)으로 구분하였음. 이중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환경’ 개선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인 급식만족도에 ‘음식’, ‘위생’, ‘부대서비스’의 품질요인이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품질 유지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음.
- 또한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별 급식 실태(이정숙, 2014)」에서는 영양사나 조리사가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는 20.7%에 불과하였고, 61.3%가 관리자가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식품구입방법은 72.1%가 ‘직접구매’, 10.8%가 ‘수의계약’을 하였고, 급식담당자 중 영양·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64.9%에 불과하였음.
- 이는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리 질 향상을 위한 니즈 분석(권수연, 2017)」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타났음. 지역아동센터의 식단은 주로 지역아동센터중앙지원단 식단(50.0%) 및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34.1%)을 활용하였고, 급식관리는 센터장(42.9%), 생활복지사(31.1%)가 담당하였음. 보존식을 올바르게 냉동보관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19.7%에 불과하였고, 파견근로자에 의한 조리담당은 지역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음(대도시 22.4%, 중소도시 11.9%, 소도시 9.5%). 식재료 구입 장소의 경우, 주로 대형마트(55.8%)가 가장 높았으나 식재료 전문업체를 통한 공급은 지역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음(대도시 17.4%, 중소도시 16.1%, 소도시 5.8%).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관리 질 향상을 위해 개선되어야 하는 점으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사용(4.5점/5점)’, ‘조리기구 및 시설 개선(4.5점)’, ‘식재료 구입채널 마련(4.4점)’, ‘급식비 행정절차 간소화(4.4점)’, ‘전문인력 확보(4.3점)’, ‘직원교육(4.3점)’, ‘지원금 인상(4.3점)’ 순이었음.

-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실태 중 급식종사자의 급식관리 지식수준에 따른 급식관리 중요도와 수행도를 분석한 연구(권수연, 김옥선, 2021)에서는 급식관리에 있어 높은 지식수준의 급식관리자가 오히려 낮은 지식수준의 급식관리자보다 교육에 참여한 비율이 높았고, 급식관리자의 지식수준에 따라 급식관리 수행도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음. 이에 지역아동센터처럼 급식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은 급식소에서의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급식관리자의 지식수준을 높여 위생적으로 급식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강조하였음.
-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서비스와 이용 아동의 건강 간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이용 아동의 급식서비스 경험이 긍정적일수록 지역아동센터 이용 후 아동의 건강 향상에 긍정적으로 응답할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음. 이에 지역아동센터 급식서비스의 품질에는 급식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을 먹는 과정과 경험도 중요함을 시사하였음(김정은, 도영경, 2018).
- 이를 종합해 보면, 본격적으로 급식단가가 오르기 시작한 2020년 이후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고, 경기도의 경우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 또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 실태를 분석한 많은 연구들에서 지역아동센터의 급식환경 및 식재료 구매방식, 비위생적 식품관리 및 급식관리 종사자를 위한 급식교육 부족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이에 현시점의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실태 조사를 통해 앞으로 경기도 결식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의 발전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라 사료됨.

2. 정부의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관련 사업안내

- 우리나라 아동급식지원은 보건복지부의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을 기준으로 사업이 추진되며, 이중 단체급식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사업안내’를 기준으로 사업이 운영됨. 이에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2023년)’과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2023년)’ 중 급식 관련 내용을 함께 살펴봄.

가. 보건복지부 아동급식지원 사업안내(2023년)

- 2023년 기준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에는 목적과 연혁, 아동급식 지원체계,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 아동급식지원 및 관리, 위생관리·식중독 예방, 연휴기간·재난 및 자연재해 시 아동급식특별대책, 행정사항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음.

1) 사업의 개요

- **목적** :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지원 등을 통해 결식을 예방하고 영양을 개선하기 위함임.
- **연혁** :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2000년 석식 사업을 시작으로, 2001년에는 조식 지원, 2004년에는 방학, 토·공휴일 중식 지원으로 하루 급식의 수가 확대되었음. 이후 2005년 아동급식지원 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으나 2009년~2010년 경제위기로 결식아동이 증가하면서 한시적으로 국비를 지원하였음. 특히 급식단가는 2000년~2018년까지 조정이 없다가 2018년 3,500원에서 4,000원으로 조정되었고, 이후 2020년~2023년까지 매년 1,000원씩 인상되어 현재는 8,000원 이상으로 조정되었음.

[표 2-6]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연혁

연도	내용
2000년	아동급식(석식) 사업 실시
2001년	조식 지원
2004년	방학, 토·공휴일 중 취학아동 중식 지원이 교육부에서 이관, 겨울방학 중식지원 대상 확대
2005년	아동급식지원 사업 지방이양
2009~2010년	경제위기로 인한 결식아동 증가에 따라 한시적 국비 지원
2018년	급식단가 조정(3,500원→4,000원)
2019년	아동급식 온라인(복지로) 신청 개시(2019.1.30.)
2020년	급식단가 조정(4,000원→5,000원 이상), 주소지와 상관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읍·면사무소)에서 아동급식 신청 가능(3.11.~)
2021년	급식단가 조정(5,000원→6,000원 이상)
2022년	급식단가 조정(6,000원→7,000원 이상)
2023년	급식단가 조정(7,000원→8,000원 이상)

자료: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 **지원대상** : 아동급식지원 사업의 대상은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크게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우려되는 아동(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아동급식위원에서 지원 결정),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이 해당함.

- 결식 우려란 근로·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의미함.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 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⑥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표 2-7] 2023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단위: 원

가구원수	23년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1,080,504	38,670	10,320	41,238
2인	1,797,201	63,754	13,845	63,992
3인	2,306,104	81,930	19,779	82,712
4인	2,808,501	100,127	34,325	101,022
5인	3,291,958	116,812	57,522	117,690
6인	3,758,550	134,378	87,215	135,698
7인	4,215,908	150,465	111,038	152,265
8인	4,673,265	166,999	126,555	169,108
9인	5,130,623	186,866	142,060	186,479
10인	5,587,981	200,348	160,832	203,271

자료 :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 미취학 아동은 아동보다 높은 연령의 취학 형제·자매유무 및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을 수 있는 여건, 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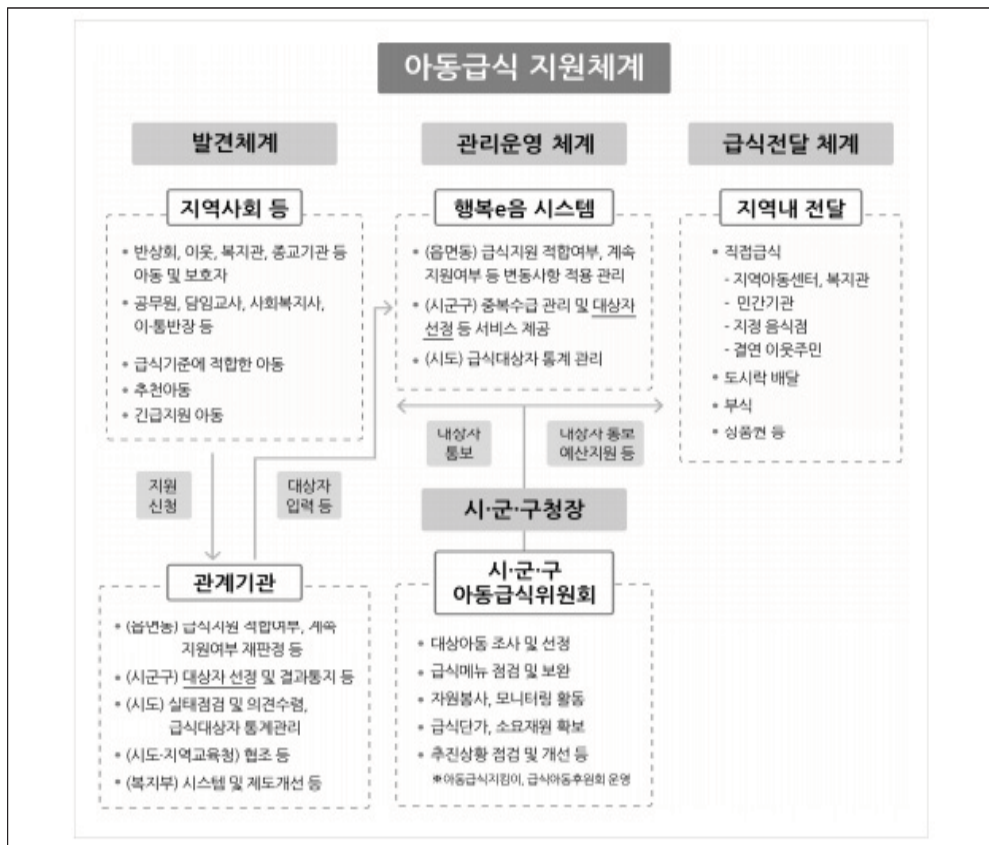
○ **신청방법** : 아동급식지원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온라인(복지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및 전화,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음.

- 제출 증빙서류로는 소득 확인을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납입 영수증명세서, 건강보험증 사본 등이 필요하고, 지원 사유에 따라 부모 등 보호자의 질병·장애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및 근로시간 등을 명시한 고용주의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음.

○ 아동급식 지원체계 :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지원체계 흐름도를 살펴보면 [그림 2-1]과 같음.

[그림 2-1] 아동급식 지원체계



자료: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 **주요 주체별 담당업무** :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주요 주체는 보건복지부, 시·도,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교육청, 읍·면·동 등임. 주체별 담당업무는 다음과 같음.

[표 2-8] 아동급식지원 주요 주체별 담당업무

구분	주요 업무
보건복지부	• 아동급식 관련 법·제도 총괄(표준매뉴얼 등)
시·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재정 지원, 분담 및 통계 총괄 • 아동급식 전반(예산 등)에 대한 점검, 지도 • 관할 시·군·구 아동급식 신청 안내 및 홍보
시·군·구 및 아동급식위원회	• 아동급식 운영 및 관리, 예산확보, 홍보 및 안내 • 아동급식 지원체계 구성·운영
교육청	• 각 학교에 급식신청 안내서 및 급식신청서 배포 • 학기 중 중식 지원 •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예산(시·도교육비특별회계) 지원
읍·면·동	• 아동급식지원 신청 안내 및 홍보 • 아동급식 신청 접수 및 조사(재판정 포함) •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에 아동급식 지원기준 적합 아동 정보 입력

자료: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 **아동급식지원 및 관리** :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지원·관리의 주체는 크게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임. 취학아동의 경우 연중 조·석식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기 중 중식은 교육청(학교급식)에서 지원을 하되,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 지원은 교육청으로부터 시·도 교육비특별회계를 지원받아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관리함.

[표 2-9] 급식제공 주체 및 재원 부담

학기 중				방학중
평일		토·공휴일		
조·석식	중식	조·석식	중식	조·중·석식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자료: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 **급식제공 유형** : 아동급식지원의 제공 유형은 해당 아동 가구의 취사 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시설, 아동의 영양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함.

[표 2-10] 아동급식지원 주요 주체별 담당업무

급식유형	지정 대상 및 고려사항
단체급식소	- 복지관, 대형업체 직원 식당을 사회기여 차원에서 참여 유도 - 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종교 및 민간단체, 학교급식 시설 지정 - 방학기간 중에는 특정 학교급식시설을 이용 협의 ※ 지자체가 지역교육청·학교와 협의하여 지역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결정
일반음식점	- 특정 메뉴에 편중하지 말고 다양한 메뉴의 음식점 지정 - 모범업소 및 협력음식점 지정 등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참여 유도 ※ 지자체 내 위생과와 음식점협회 등 관련 단체의 협조를 통해 추진 - 지역 내 모든 일반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카드를 결제수단으로 제공
도시락 배달	- 자활근로사업(도시락 배달사업), 공공근로사업 등을 아동급식사업과 연계 - 지역·계절 여건 및 대상아동의 의사에 따라 밥·반찬 일체형 외에 반찬형도 가능 - 도시락·반찬 등 배달의 경우 배달장소 및 시간 등을 사전에 약속하여 분식되거나 상온에 오래 방치되지 않도록 주의 - 하절기 도시락 등 배달 시 음식이 부패되지 않도록 일일배달 및 직접인수 - 급식지원 가정에 사람이 없어 도시락 전달을 못한 경우, 하절기에는 약속된 장소 등에 도시락을 두고 오지 말고 차후 다시 배달하여 대상자에게 직접 전달 - 영양가 및 아동 취향 등을 고려하여 식단을 운영하고, 아동의 정서고양을 위한 수단 병행 (예: 희망을 주는 격언, 지역 시민의 도움을 받아 ‘사랑의 편지’ 등을 동봉) - 자원봉사자, 급식단체 등과 연계하여 도시락 배달
기타	- 그 밖의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급식방법 - 편의점 급식 : 아동의 신체발달 고려, 영양가 있는 도시락 등 식사류를 지원하기 위해 유해품목, 간식류, 비식품, 기타(조미료) 등의 구매불가 품목 제외하고 모든 품목구매 가능 - 부식지원 : 지역 특성상 다른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제공, 배달된 식재료로 조리 가능한 메뉴, 식단 등의 안내문을 제공 - 식품권 등 기타 : 오지, 산간벽지, 도시지역 중 급식 현물제공이 곤란한 경우 지원

자료: 「2023년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보건복지부)」

- **급식지원 방법** : 아동급식지원의 방법은 조·중·석식을 아동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선택하게 하되, 아동의 영향을 고려하여 급식형태를 선택하도록 지도하고 있음(현금지급 불가). 또한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결과를 바탕으로 아동 개인별 급식방법, 급식장소, 담당 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급식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함.

2)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지원 관련 사항

- **장점·단점** : 지역아동센터 등 단체급식소를 이용하는 경우, 직접 식사를 제공하여 전달이 용이한 장점이 있으나, 낙인 현상으로 급식률이 저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장점을 살려 이용률을 제고시키고, 단점을 보완·개선하여 예상 문제점을 최소화해야 함.

- **단체급식비 단가 및 지출범위** : 다른 급식제공 유형과 동일하게 급식단가 아동 1식 당 8,000원 이상을 기준으로, 직접 조리하는 단체급식소(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식 당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식기류, 소모성 주방기자재 등), 부식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경비(연 1회 보건소 이용)로 사용이 가능함. 그러나 단체급식소 종사자 또는 공공인력이 조리를 할 경우에는 인건비 집행이 불가하고, 인건비 지원 등으로 급식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함.
 - 예) 급식 이용 아동이 100명인 경우, 한 달 급식비는 $100\text{명} \times 8,000\text{원} \times 20\text{일} = 1,600\text{만원}$ 이며, 이중 20%인 320만원 범위 내에서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 부식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비용으로 사용 가능
- **보조금 지원** : 실제 이용 아동의 급식 수만큼 지급하되, 단체급식소 이용 아동의 수가 전월 1개월간 이용 아동 급식 수의 90% 이상일 경우 1개월분 급식비 전액을 지급함.
 - 예) 전월 1개월간 이용 아동의 급식 수 일평균이 30회일 경우, 1개월간 이용 아동의 급식 수가 일평균 27.3회이면 소수점이하를 올림해 28회로 산정하고, 90%(27회 기준)이상이므로 1개월분 급식비 전액을 지급함.

나.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2023)」 : 급식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1) 목적

- 지역아동센터 사업의 목적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임. 이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는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보호 및 급식 제공을 포함함.

2) 종사자 배치기준 및 의무교육

-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는 이용 아동의 보호·교육·문화·정서지원·지역사회 연계 등의 종합적인 돌봄을 지원함. 현재 지역아동센터의 종사자 배치기준에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를 기본 배치인력으로, 이용 아동 수에 따라 10명 이상 30명 미만에는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각 1명을, 30명 이상에는 시설장 1명과 생활복지사 2명을 배치함. 영양사와 조리사는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에만 배치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에 정원 50명 미만의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급식은 대부분 시설장과 생활복지사 위주로 급식 준비와 지원, 관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조, 「식품위생법」 제88조, 제101조에 의해, 만약 종사자를 포함해 1회 50명 이상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의 경우, 시·군·구청 위생 관련 부서에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음. 집단급식소 설치 시, 영양사 및 조리사 배치(「식품위생법」 제51조, 제52조)해야 함.

[표 2-11]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배치 기준

구분	시설장	생활복지사	영양사
아동 30명 이상	1명	2명 (아동 50명 초과 시 1명 추가)	1명 (아동 5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함)
아동 30명 미만 10명 이상	1명	1명	-
아동 10인 미만	1명	-	-

자료: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게는 필요한 경력·분야별로 교육 참여를 통해 전문역량 강화 및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신규 종사자 교육(집합교육+법정의무교육, 총 25시간) 및 기존 종사자 교육(집합교육+법정의무교육, 총 25시간) 안에 아동급식 관련 아동의 건강·영양·식재료·위생 등에 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음.

- 기존 종사자 필수(집합)교육 : 사업지침, 보조금 사용 기준 등
- 신규 시설장 필수(집합)교육 : 사업지침, 보조금 사용 기준, 재무회계, 사회서비스정보 시스템(희망이음) 활용, 지역사회자원 개발과 연계 포함
- 법정의무교육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어린이안전교육(4시간),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1시간), 개인정보보호교육(1회 이상)

3) 운영시간

- 운영시간은 아동의 급식시간(조·중·석식) 및 급식횟수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 지역아동센터는 월~금요일을 포함하여 주 5일, 1일 8시간 이상을 상시 운영하여야 함. 기본

운영시간은 학기 중 14:00~20:00, 방학 12:00~17:00이나 매 학기 시작 전후(3월, 9월) 이용 아동별 돌봄 필요시간을 확인하고, 19시 이후 돌봄수요가 없는 센터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 보고 후 필수 운영시간을 14:00~19:00로 조정이 가능함.

- 이외 지역아동센터는 상시 운영이 원칙(공휴일 제외)이기 때문에 교사의 하계휴가 사용 등의 사유로 임시휴원(방학)은 불가하며, 종사자는 순번제 하계휴가 계획 등을 수립하여 돌봄 공백을 최소화해야 함.
- 토요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5.1) 운영은 지역 여건과 센터 실정에 따라 아동이 방임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운영 시에는 반드시 시설장 또는 생활복지사 1인 이상이 근무하여야 하고, 그 외 자원봉사자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4) 급식관리

○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에 의한 급식관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표 2-12]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 : 급식관리 사항

법적근거	내용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4조(별3)	① 아동이 필요한 영양을 섭취할 수 있도록 영양사가 작성한 식단에 따라 급식을 공급해야 한다. 다만 영양사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 또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의 지도를 받아 식단을 작성해야 한다. ② 식기, 도마, 칼, 행주, 그 밖에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세척·살균 및 소독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한다. ③ 유통기한이 지나거나 상한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이를 음식물의 조리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미 급식에 제공되었던 음식물을 다시 재사용해서는 안 된다. ④ 식품 등의 원료/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한다. ⑤ 조리원 등 음식물의 조리·직접 종사하는 종사자는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⑥ 조리실, 식품 등의 원료·제품보관실 등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한다. ⑦ 전염성 질환, 고름형성 상처 등을 가진 사람은 아동의 식사를 조리해서는 안 된다. ⑧ 아동복지시설의 먹는물로 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을 끓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정기적인 필터 교환 등으로 수질을 관리해야 하며, 먹는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신청해야 하고, 수질검사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먹는 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

자료: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5) 예산 지원

-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의 근거 및 조건은 「아동복지법」 제59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에 따름.

[표 2-13] 지역아동센터 예산 지원의 근거 및 조건

법적근거	내용
「아동복지법」 제59조	제59조(비용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과 프로그램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 또는 수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비용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4조	제54조(비용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에 따라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이용료를 받는 아동전용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비용으로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의 평가 결과 등 해당 아동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보조할 수 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자료: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은 신고 정원을 기준으로, 지역별 특성 및 법정 중사자 수 등에 따라 지원함(시도 및 시군구는 지역별 여건에 따라 자체 재원으로 추가지원 가능). 또한 운영비와 인건비 간 전용은 불가하며, 최근 3개월 평균 이용 아동 수(현원)가 지원기준의 정원 구분에 미달하는 경우, 최근 3개월 평균 이용 아동 수(현원)로 정원 구분을 적용한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하고 교부함.

- 예) 신고 정원이 35명이나 4월에 최근 3개월(1~3월) 평균 이용 아동 수가 25명으로 확인된 경우 5월부터 정원 구분이 20~29인 이하의 월 기준액을 산정하여 보조금 교부

- 특히 이용 아동 수(현원) 산정기준은 아동이 월 운영일수(주 5일 기준)의 70% 이상 이용하는 경우 현원으로 산정하고, 적용시점은 최근 3개월 평균 이용 아동 수(현원)가 확인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함.
 - 예) 1~3월의 평균 이용 아동 수(현원)는 4월에 확인. 4월에 최근 3개월 평균 이용 아동 수(현원)가 25명으로 확인되는 경우 5월분 보조금부터 이용 아동 수(현원) 25명 적용
- 지역아동센터의 예산 지원은 크게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 운영비로 나뉨. 이중 추가 운영비 지원은 비영리법인 시설 활성화를 목적으로, 2개소 이상의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소속 시설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함.

[표 2-14] 기본운영비 및 인건비, 추가 운영비 지원 기준

정원 구분		법정 종사자 수 및 인건비 기준	기본운영비		추가 운영비 지원
			관리운영비 (월 기준액)	최소 프로그램비 기준	
10~19인 이하	동 지역	2명	1,060천원	480천원	20만원
	읍면 지역	(5,586천원)	1,231천원	490천원	
20~29인 이하	동 지역	2명	1,384천원	500천원	25만원
	읍면 지역	(5,586천원)	1,580천원	520천원	
30인 이상	동 지역	3명	1,460천원	500천원	30만원
	읍면 지역	(8,196천원)	1,645천원	520천원	

자료: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안내(보건복지부)」

주: 1) 10인 이하의 경우, 인건비 1명 기준 지원 (2,976천원)

2) 시설장 월 2,976천원 (월지급액 2,494,000원 +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급액의 19.31%))

3) 생활복지사 월 2,610천원 (월지급액 2,187,000원 + 4대 보험료 사업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월지급액의 19.31%))

- 이외에 특수목적형(장애,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아동 등 특수전용시설 및 20시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저녁돌봄시설)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추가지원 월 60만원(±20만원)을 지원하며, 토요일운영의 경우에도 월 30만원(±10만원)을 지원함,
- 이처럼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의 예산 안에는 급식비 지원에 대한 별도의 항목이 없음. 즉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보조금은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을 기초로 결식아동 지원대상 중 단체급식을 희망한 아동의 급식비를 보조금으로 받는 것임. 이는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의 경우, 담당공무원 1인에게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신청-관리-지원받는 시스템이 아닌 시군 관할 ‘아동급식지원 사업 담당자’로부터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담당자’에게 신청한 아동급식비가 전달되고, 이를 다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장’에게 아동급식

보조금이 지원되는 방식임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결식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의 경우, 2개 사업의 연계를 통한 이원화 지원시스템으로 인해 신청-관리-지원의 시간차 및 관리 소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임. 이에 지역 아동센터의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있어 위생관리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올바른 급식보조금 운용, 급식관리 종사자 교육, 급식의 질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시스템 및 효율적인 단체급식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 현황

-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 현황을 확인하고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사업예산 및 31개 시군의 급식유형별 지원 현황을 살펴봄.

가.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예산 현황

- 2023년 기준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비는 도비와 시비를 합산해 총 118,026,960천원(약 1,180억)임. 이중 취학아동의 연중 조·석식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은 105,758,400천원(약 1,057억)이고, 학기 중 토·공휴일 중식에 해당하는 12,268,560천원(약 123억)은 교육청으로부터 받는 교육비특별회계 재원에 속함.
- 이를 다시 도비와 시군비로 나누어 살펴보면, 도비는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교육비특별회계 약 123억원과 별도의 도비 약 317억을 합해 총 43,996,080천원(약 440억)을 결식아동 급식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나머지 74,030,880천원(약 740억)은 시군에서 지원하는 아동결식지원금임.

[표 2-15] 2023년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사업비(도비 + 시비)	도비	시군비	비고
계	118,026,960	43,996,080	74,030,880	
결식아동급식지원 (자체)	105,758,400	31,727,520	74,030,880	도비 : 시비 = 30% : 70%
결식아동급식지원 (교육비특별회계)	12,268,560	12,268,560	0	도비 100%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현황

나. 시군별 아동급식지원 유형 현황

- 경기도 31개 시군의 아동급식지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시군은 100%(31개), G드림카드(일반음식점, 편의점, 배달앱 이용)를 지원하는 시군은 93.5%(29개), 도시락 배달을 지원하는 시군은 32.3%(10개), 부식 배달을 지원하는 시군은 19.3%(6개)인 것으로 나타남.

[표 2-16] 시군별 급식유형 지원 현황

구분	가평	고양	과천	광명	광주	구리	군포	김포	남양주	동두천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양주	양평	여주	연천	오산	용인	의왕	의정부	이천	파주	평택	포천	하남	화성
단체급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G드림카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도시락(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식배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현황

-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단체급식과 G드림카드 2개 유형으로 지원하는 지자체는 가평군 · 고양시 · 과천시 · 광명시 · 광주시 · 군포시 · 김포시 · 수원시 · 시흥시 · 안산시 · 안성시 · 안양시 · 용인시 · 의정부시 · 이천시 · 하남시 · 화성시 · 동두천시 · 연천군 등 19개로 가장 많음.
- 또한 단체급식, 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배달을 모두 지원하는 지자체는 남양주시 · 양주시 · 오산시 3개임. 단체급식, 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3개 유형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구리시·부천시·성남시·의왕시·파주시 5개임. 단체급식, G드림카드, 부식 배달 3개 유형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여주시·평택시 2개이고,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3개 유형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양평시 1개임. 이외에 단체급식과 도시락 배달 2개 유형으로만 지원하는 지자체는 포천시 1개에 해당함.

다.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관련 현황

- 아동급식 유형 중 단체급식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원됨. 2023년 3월 말 기준, 경기도에는 총 780개소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중 국공립시설은 15개소(1.9%)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개인시설(54.7%) 또는 법인시설(43.3%)에 속함. 또한 정원이 19인 이하 시설은 139개소(17.8%), 20~29인 이하 시설은 330개소(42.3%), 30인 이상 시설은 311개소(39.9%)로, 개소 당 평균 아동 수는 28.1명으로 나타남. 이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대부분이 민간시설이고, 단체급식을 제공하지만 「식품위생법」 제88조제101조에 따른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조리사(영양사) 배치는 의무가 아님.

[표 2-17]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시군별 설치 현황

(23. 3월 31일 기준, 단위 : 개소, 명)

구 분	법정 종사자	*설치자 유형				아동정원별 시설 수				아동 수					
		계	국공립	법인	개인	합계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합계	미취학	초등	중등	고등	탈학교
계 (비율)	1,882	780 (100.0)	15 (1.9)	338 (43.3)	427 (54.7)	780 (100.0)	139 (17.8)	330 (42.3)	311 (39.9)	21,939 (100.0)	294 (1.3)	16,771 (76.4)	3,846 (17.5)	986 (4.5)	42 (0.2)
가평균	9	4	0	1	3	4	1	2	1	104	2	80	22	0	0
고양시	71	31	0	14	17	31	8	14	9	779	17	521	193	44	4
과천시	8	3	1	1	1	3	1	0	2	106	0	70	24	12	0
광명시	73	31	0	15	16	31	9	11	11	792	0	591	160	41	0
광주시	65	26	0	16	10	26	5	9	12	747	46	602	78	19	2
구리시	39	17	0	6	11	17	3	9	5	424	6	282	104	30	2
군포시	34	14	0	6	8	14	1	8	5	411	4	324	62	15	6
김포시	42	20	0	7	13	20	11	7	2	442	2	320	102	18	0
남양주시	148	61	0	29	32	61	7	30	24	1,766	42	1,397	266	61	0
동두천시	34	14	0	3	11	14	4	5	5	346	6	241	66	33	0
부천시	138	58	1	30	27	58	12	25	21	1,593	5	1,307	234	47	0
성남시	129	51	6	31	14	51	9	21	21	1,415	2	1,078	243	92	0
수원시	149	64	1	23	40	64	12	31	21	1,794	4	1,341	351	98	0

시흥시	94	36	2	13	21	36	2	13	21	1,153	12	983	132	26	0
안산시	17	63	1	17	45	63	4	16	43	2,135	16	1,716	329	57	17
안성시	29	13	0	5	8	13	2	8	3	344	9	288	41	6	0
안양시	58	21	0	8	13	21	2	3	16	719	7	473	192	47	0
양주시	41	17	2	0	15	17	5	7	5	457	4	377	66	10	0
양평군	16	7	0	6	1	7	2	3	2	174	0	117	45	11	1
여주시	26	12	0	7	5	12	2	5	5	348	3	278	57	10	0
연천군	7	3	0	1	2	3	1	1	1	81	1	67	9	4	0
오산시	21	9	1	4	4	9	0	7	2	273	1	232	30	10	0
용인시	81	34	0	13	21	34	14	7	13	857	8	634	171	44	0
의왕시	23	11	0	2	9	11	3	7	1	251	0	135	78	38	0
의정부시	74	28	0	9	19	28	1	8	19	826	21	617	149	39	0
이천시	28	14	0	5	9	14	4	8	2	316	4	276	29	7	0
파주시	59	24	0	13	11	24	3	10	11	666	11	466	165	24	0
평택시	82	37	0	22	15	37	3	26	8	1,021	13	725	210	67	6
포천시	24	11	0	4	7	11	4	5	2	263	0	203	44	16	0
하남시	93	13	0	8	5	13	0	4	9	415	4	255	104	48	4
화성시	75	33	0	19	14	33	4	20	9	921	44	775	90	12	0

자료: 경기도청 내부자료-2023년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 현황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은 초등학생이 76.4%로 가장 많음. 그러나 중학생(17.5%)과 고등학생(4.5%)이 22.0%(4,832명)로 이용 아동의 1/5 이상이 청소년기 아동에 속함. 이는 단체급식 제공 시 아동의 연령에 따라 필요로 하는 식사량과 열량,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식단과 급식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임.
- 이외에 경기도 시군별(22개) 아동급식을 위한 추가지원 및 월평균 급식수, 급식종사자 채용 여부 및 일평균 근무시간과 월평균 급여 등을 살펴봄. 취합된 22개 시군 중 아동급식을 위한 추가지원을 하는 시군은 17개(77.3%)로,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시군은 16개, 공공근로인력을 지원하는 시군은 1개임. 가장 많은 추가 지원금을 지원하는 시군은 성남시로 개소당 월 869,000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시군의 추가 지원금 평균은 월 285,097원으로 나타남. 또한 최근(3개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월평균 급식수는 21.5일임.

[표 2-18] 시군별 지역아동센터 월 단체급식 현황(23.7~9월 월평균 기준)

(단위 : 원, 회, 개, 시간)

구 분	개소당 월추가지원	월평균 급식수	급식종사자			
			총 시설수(비율)	채용 시설수(비율)	일평균 근무시간	월평균 급여
계	285,097	21.5	505 (100.0)	398 (78.8)	3.4	861,619
가평군	275,000	21	4 (100.0)	4 (100.0)	3.3	823,000
고양시	-	25	31 (100.0)	10 (32.2)	3.4	781,000
과천시	-	19	3 (100.0)	2 (66.7)	3.5	700,000
광명시	(공공근로지원)	20	30 (100.0)	29 (96.7)	5.0	1,333,000
구리시*	230,000	22	17 (100.0)	7 (41.2)	4.0	809,000
김포시*	200,000	22	20 (100.0)	19 (95.0)	3.0	718,000
성남시	869,000	19	49 (100.0)	48 (98.0)	4.0	1,164,000
수원시*	200,000	20	64 (100.0)	60 (93.7)	2.8	707,000
시흥시*	351,842	22	36 (100.0)	19 (52.8)	3.0	844,000
안양시	-	25	21 (100.0)	21 (100.0)	3.0	975,000
양주시	-	20	15 (100.0)	15 (100.0)	3.8	631,000
여주시	200,000	22	12 (100.0)	12 (100.0)	3.0	888,000
연천군	200,000	21	3 (100.0)	3 (100.0)	3.0	667,000
오산시	220,000	22	9 (100.0)	9 (100.0)	3.6	781,000
용인시*	100,000	24	34 (100.0)	15 (45.4)	3.3	835,000
의왕시*	200,000	21	11 (100.0)	8 (72.7)	4.0	920,000
의정부시	-	21	28 (100.0)	19 (67.9)	3.2	806,000
파주시*	215,714	21	24 (100.0)	21 (87.5)	3.9	972,000
평택시	200,000	21	37 (100.0)	27 (73.0)	-	-
포천시	500,000	17	11 (100.0)	7 (63.6)	3.0	879,000
하남시	300,000	20	13 (100.0)	13 (100.0)	3.0	950,000
화성시*	300,000	29	33 (100.0)	30 (90.9)	3.3	911,000

자료: 경기도 시군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를 통해 취합한 자료임.

취합되지 않은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부천시, 안산시, 안성시, 이천시, 양평군(9개) 시군은 제외함

주: 급식종사자를 채용한 일부 지역아동센터에만 지원함

- 특히 경기도 지역아동센터는 78.8%가 급식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으며, 급식종사자는 1일 평균 3.4시간을 근무하고, 월평균 861,619원의 급여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23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시급 9,860원(실수령) 수준의 급여 책정으로, 종사자의 처우는 서비스의 질과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경기도 단체급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급식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임.

- 평균 월급여 산출 내역(추정) : 9,860원×3.4시간×21.5일+주휴수당(9,860원×3.4시간×4일)=854,862원(4대 보험,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4. 전국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 및 학교급식(50인 이하) 방향 검토

-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의 효율적·체계적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단체급식의 지원시스템에 있어 관리상 맹점이나 미흡한 부분의 원인을 찾고, 바람직한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있는 모범 운영시스템을 통해 방향점을 찾을 필요가 있음.
- 이에 아동급식지원 단가가 매년 오르기 시작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전국에서 나타난 단체급식의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분석하고, 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의 전형인 학교급식 중 50인 이하의 학교는 어떠한 방식으로 단체급식을 지원하는지 검토함.

가. 전국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2020~2023년) 분석

- 만약 시군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이 지역아동센터를 지도·점검하는 중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이 의심된다 하더라도 시군 담당공무원은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부정 사례를 조사할 수 없음. 따라서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는 공익제보 또는 정기적·비정기적 감사를 통해 적발하는 것이 일반적임.
- 또한 공익제보 및 감사를 통해 보조금 부당이익을 취한 사례는 보통 기사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보조금 횡령 등으로 뉴스나 신문 등에서 보도된 기사자료를 수집하였음. 온라인 기사가 해당 기간의 부정사용 사례의 전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으나 뉴스 및 보도기사는 공식적인 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에 있어 반복적인 원인을 찾는 데는 의미가 있을 것임.
- 이에 ‘네이버’와 ‘구글’ 검색창에서 ‘급식보조금’, ‘급식보조금 횡령’, ‘급식비 부정’, ‘급식비 부당이익’ 등의 단어를 검색해 수집된 자료를 검토하였음(단, 같은 기간에 보도된 기사라 하더라도 내용이 같은 사건의 경우 제외하였음).

[표 2-19] 아동 단체급식 보조금 횡령 보도자료(2020~2023년)

보도일자	출처	제목	주요 내용
2023.08.29.	이투데이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 …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됨.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었음.
2023.08.30.	연합뉴스 TV	보조금 횡령·불법임대…복지법인 대표 등 적발	-경기도 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을 돌봄교사로 허위 등록한 뒤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챙겼음. 교사용 급여계좌 직불카드를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7년간 8천400여만원 횡령함. -수원의 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법인 대표는 법인소유 건물물을 허가없이 불법 임대해 최근 3년간 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겼음.
2023.08.29.	한겨레	아동센터 보조금 받아 자기 학비로 써…경기도, 6곳 적발	-안양 ㄴ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허위 강사에게 프로그램비를 지급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48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해 시설 임차료로 쓴 것으로 확인되었음. -같은 지역 ㄷ사회복지법인 전·현직 대표들은 도지사 허가 없이 건축물 11개 동과 부속 토지를 7년 동안 임대해 7억 6500만원을 챙겼음.
2023.06.05.	KBS뉴스 뉴스광장 (울산)	울산지역아동센터 등 보조금 횡령 1,800여 건 적발	-대통령실은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사업 감사 결과 울산의 지역아동센터를 포함해 모두 1,865건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밝혔음. 울산의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보조금으로 받은 센터 운영비를 강사료나 소모품비로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개인계좌로 입금시키는 등 225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음.
2022.07.12.	한스경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보조금 횡령’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도에 의하면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신고를 조사한 결과, A시 B지역아동센터장은 급식비를 부풀려 부당 청구한 뒤 개인 식재료를 구매하는 데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받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비 등을 과다 지급한 뒤 차액을 본인 명의 계좌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보조금 1,783만원을 가로챘음.

2022.06.20.	전남매일	구례 A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횡령 지속 이뤄졌다	-구례군에 있는 A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은 인근 공장에서 가축사료용으로 반출된 빵조각과 라면을 후원받아 간식이나 저녁 식사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음. -또한 A지역아동센터는 더 많은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허위출석 체크로 운영비를 부풀리고 각종 명목으로 학부모에게 후원금과 금전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음. 간식 등을 구매하며 간이영수증을 끊고 이를 조작해 운영비를 늘리는 방법도 사용했음. 지역아동센터는 국비 지원을 받기에 원칙적으로 학부모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돼 있음. 하지만 A지역아동센터는 ‘입소조건’ 이라거나 ‘질 좋은 급식 제공’ 등의 명분으로 후원금을 요구했음. 후원금 외에도 교재비나 프로그램비, 캠프참가비 형태로 비용을 청구하기도 했음.
2022.05.05.	경인방송	[지금, 경기도는?] 가족 동원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법인 적발	▷ 사회자 : 이번에 적발된 지역아동센터에서 횡령한 금액이요, 이건 환수가 되는 겁니까? ▷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복지수사팀장 : 경기도 특사경 복지수사팀에서는 올해 2022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미신고 사회복지시설 불법운영,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횡령 및 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 불법 처분 등의 3건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속수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관련한 범행금액이 한 6,500만원 상당에 이르러서 향후 수사 종결 후에, 해당 지자체의 관리·감독 부서에서 검토해서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을 조치할 계획입니다.
2022.04.27.	전국매일신문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들통’	-이천시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인 B씨는 지난 2018년부터 언니와 직원의 아들을 돌봄인력과 급식조리사로 허위 등록해 이천시의 인건비 보조금 6,500만원을 횡령했음. 이 과정에서 B씨는 이들 허위 종사자의 급여통장을 직접 보관·관리했음.
2022.11.11.	강원도민일보	원주지역 한 아동센터 센터장, 딸과 공모해 보조금 7,700만원 빼돌려	-원주에서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센터장인 A씨는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터 2020년 9월 2일까지 5년간 정부와 원주시 등에 센터 운영 보조금을 신청, 311회에 걸쳐 총 4,2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받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음. -A씨는 보조금을 급식비 등으로 사용해야 함에도 정상적인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결제하고, 일부를 B씨의 계좌로 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음.
2021.10.18.	매일신문	아동 급식비 부풀려 자기 배 채운 ‘못된 어른들’	-경북 포항의 일부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이나 결손가정 청소년들의 급식비를 부풀려 ‘제 뱃속’을 채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매일신문이 포항지역 64개 아동센터에 급식을 제공하는 업체를 찾아 취재한 결과 일부 아동센터가 인원수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매달 최소 100만원 이상의 급식비를 빼돌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음.
2021.09.08	경북일보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대구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적발	-대구 달서구의 한 지역아동센터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 재료를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 한편 해당 센터는 2015년 아동급식 보조금을 부당지출해 행정처분을 받았음. 구청은 해당 센터로부터 보조금 52만6천원을 환수했음.

2021.06.23.	스트레이 트뉴스	결식아동 급식비·보조금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6명 적발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1억 2천만 원에 달한다함. -안산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교육강사비, 인건비, 식자재 비용을 조작하고 급식 조리사 등 직원 인건비를 부풀려 지급한 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시에서 받은 보조금 중 2,315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로 사용했음. -비슷한 사례로 화성시 B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결식아동급식사업 보조금 중 3,128만 원을 자녀 교육비 등에 사용하는 한편 수개월 동안 돌려막기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대담함도 보였음. -수원시 C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급식조리사가 실제 근무한 시간보다 부풀려 인건비를 지급한 후 그 차액 1,100만 원을 되돌려 받아 시설장이 목사로 있는 교회 운영비로 사용했음.
2021.03.10.	뉴스핍	‘결식아동 급식보조금 횡령’ 대전 지역아동센터 대표 징역형	-A씨는 2016년 2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대전 중구로부터 결식아동 급식보조금을 받은 후 실제 구입한 식자재 대금보다 부풀려 자신의 계좌로 돌려받아 총 5,6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음.
2021.03.19.	부안독립 신문	관내 A 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돼 ‘고발’	-부안군의 A 지역아동센터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5월까지 5달 동안 급식지원비 중 50만 원을 매달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했음. 해당 센터의 센터장 B 씨는 본인의 친모를 센터 급식 도우미로 허위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매달 보조금을 빼돌린 것으로 밝혀졌음.
2020.10.21.	KBS뉴스 (광주)	지역아동센터 횡령 적발...차량은 환수	-목포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정부 보조금을 횡령했다 잇따라 적발됐음. 급식 도우미를 허위로 등록해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음. 목포시가 제보를 받아 지난 석달간 지역아동센터 40여곳을 조사한 결과 3곳이 천 4백여만원에서 천 6백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음.
2020.07.07.	MBN뉴스	아이들 급식비인데...지역 아동센터 정부보조금 집단 횡령 의혹	-한부모 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최근 정부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확인됐음. 아동청소년을 위한 급식비로 쓰겠다며 지원받은 보조금 카드를 인근 마트에서 미리 긁고 뒤로는 현금을 챙긴 것임. 지난 2014년부터 5년간 1억 8천만원 정도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음.

자료: 네이버, 구글 검색(검색일-2023.10.18)

○ 단체급식 보조금 부정사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로 출석 아동수 또는 이용 아동수 부풀리기, 급식조리사 허위 등록, 식자재 대금 부풀리기, 허위 식자재비를 현금으로 돌려받기, 유통기한 지난 음식 재료 사용하기, 학부모에게 후원금 명목의 금전 요구하기 등의 형태가 많음. 이중 급식조리사를 허위로 등록해 인건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빼돌린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센터 재량에 따라 급식종사자의 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급식종사자의 근로시간 및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급식비 20% 내에서 인건비와 운영비의 유연한 비용 지출이 가능해 일관되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어려움과 한계가 발생하기 때문일 것이라 예상됨. 따라서 급식종사자에 대한 채용 및 관리·감독 등에 있어 일관된 체계가 필요해 보임.

나. 학교급식(50인 이하)의 방향(경기도교육청 2023년 기본계획)

-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은 학교급식과 법적 근거가 다르고, 지원체계 및 운영방식에도 차이가 있으나 학교급식과 비슷한 점도 많은 것이 사실임. 우선 지원대상이 동일한 아동(초·중·고등학생)이고, 지원유형이 개별 아동이 아닌 단체급식의 형태이며, 성장기 아동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에서 정책의 목표가 같음. 이에 아동 대상 단체급식의 전형인 학교급식이 현재의 지원체계를 갖추게 된 변화 과정을 살펴보고, 학교급식을 모델로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의 방향 및 개선점을 찾는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

1) 법적 근거 및 학교급식비 지원체계의 변화 과정

- 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학교임.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학교급식법 시행령」 등을 법적 근거로 함.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은 초등학교, 중학교·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 및 유치원을 말함(다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수가 50명 미만인 유치원은 제외함).
- 「학교급식법」 6조에 따르면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두어야 함. 또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급식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이에 학교급식의 경우, 조리사와 영양교사를 별도로 두고 매년 학교급식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그러나 주목해야 할 점은 학교급식에 조리사를 의무 배치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처음

부터 학교급식비 지원 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원한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임. 학교 급식비는 2011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시작한 뒤부터 식품비, 운영비, 조리사 인건비를 포함한 총액 단가로 지원하였음. 이는 단가에 포함된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들게 되고, 같은 규모 학교더라도 학교마다 식품비에 차이가 나타나 급식의 질을 보장할 수 없는 등의 문제를 야기하였음.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학교급식비에서 식품비와 인건비를 분리 지원하게 된 것임(2021.12.28. 오마이뉴스).

[그림 2-2] 2022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안) 추진방향

2021학년도			2022학년도		
학교급식 지원단가			학교급식 지원단가	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조리실무사)인건비	식품비	운영비	+ (조리실무사)인건비

자료: 『2022학년도 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경기도교육청)』 p.4

- 현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은 총 급식보조금의 20% 내에서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식기류, 소모성 주방기자재 등), 부식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경비 등을 모두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건비, 연료비, 배송비 등 전체 물가가 상승한 상황에서 식재료비 외 모든 비용을 20% 내에서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급식 인력 채용 및 관리, 단체급식 운영 등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이에 앞서 살펴본 조리사 허위 등록으로 인한 급식비 부정사용 발생의 빌미를 제거하고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2022년부터 학교급식비에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한 것처럼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지원금 역시 인건비와 식품비를 분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2) 학교급식(50인 이하)의 급식단가(경기도교육청 2023년 기본계획)

- 만약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에서 인건비를 분리한다면, 단체급식의 단가 역시 달라져야 함. 이에 50인 이하 소규모의 학교급식에서 적용하는 급식단가를 살펴봄.

[표 2-20] 2023년 학교급식경비 지원기준(50인 이하 학생수)

(단위: 개, %)

구분	초등	중등	고등
지원단가	4,390	5,060	5,240
구간상승률	-	▲670 (15.3%)	▲180 (3.6%)

자료: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경기도교육청)』 p.58

- 2023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제시한 50인 이하 학생수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단가는 초등학생 4,390원, 중학생 5,060원, 고등학생 5,240원으로 나타남. 그러나 학교의 경우, 동일 학령기 아동으로 구성돼 있고, 개인시설이 많은 지역아동센터와는 달리 학교급식 시설로서 급식환경이 보다 우수한 편이며, 급식 외 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고, 출석률과 상관없이 아동수를 기준으로 급식비를 지원하는 등 지역아동센터의 현장과는 많이 다른 상황임이 분명함.
- 또한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 지원단가를 달리 적용할 경우,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아동당 급식지원금이 달라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음. 그러나 사실상 개인 매식비는 식품비를 포함해 인건비, 운영비, 운반비, 홍보비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된 최종 가격임. 따라서 만약 단체급식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급식단가를 재책정한다면, 단체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별도로 산출해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 이를 종합해 보면,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은 애초 적정 단가 책정방식이 달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동일지원방식 및 운영상 적합하지 않은 규정(20% 내 인건비, 연료비, 배송비 등 지출) 등으로 인해 단체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또한 지역아동센터는 서비스의 내용 안에 단체급식이 포함돼 있어 아동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급식 지원을 위해서는 급식종사자가 별도 배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센터장의 판단에 따라 급식종사자 채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 센터별 단체급식 지원의 어려움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단체급식의 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50인 이하 학교급식비 지원단가를 참고로 하되,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다양한 현장 상황을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단체급식 지원단가 재책정 및 운영방식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나아가 만약 광역단위의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정부 차원의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개선을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임.

여 백

III

조사 결과

1. 설문조사
2. 초점집단면접
3. 서면조사

여 백

1. 설문조사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의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사업운영자인 센터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설문조사의 개요 및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가. 설문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및 조사 내용

- 본 조사의 목적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아동센터장을 대상으로 현시점의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의 운영 실태 및 주된 어려움, 지원 요구를 파악하기 위함임. 설문조사 실시 전, 본 사업의 주된 쟁점을 잘 알고 있는 경기도청 담당자 2인과 관련 자료를 공유하며 2회의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설문내용을 확정하였음.
- 설문내용은 크게 센터별 일반적인 운영 현황 및 단체급식 운영 실태, 급식운영시스템 및 급식보조금 지출 현황,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점과 지원 요구 등임. 또한 설문내용은 온라인조사를 위해 웹베이스로 구축하였으며, 휴대폰과 PC 모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였음.

[표 3-1] 설문조사 내용

영역	내용
일반사항	-지역, 나이, 성별, 자격, 최종학력, 경력 등
급식운영 실태	-이용 아동 현황(연령, 이용시간, 급식 관련 특이사항 등) -급식운영 현황(급식운영방식, 급간식 제공 시간 및 횟수 등) -급식종사자 현황(나이, 관련 자격증유무, 근무시간, 급여, 업무내용 등)
급식운영시스템 및 급식보조금 지출 현황	-조리실, 조리도구, 위생환경, 식단 및 식재료 관리, 급식관련 교육 경험 등 -급식보조금(후원금), 식재료 구매 및 지출방식, 급식지출 비율 및 수준 등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점, 지원 요구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개선되어야 할 사항: 단체급식 운영방식의 적절성, 개선 사항 등 -필요한 교육연수 및 지원 요구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 본 설문조사에 시·군 지역아동센터장이 모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기도청에 협조 공문 및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발송하였음. 이를 다시 도청에서 시·군청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시·군청에서 직접 각 지역별 센터장에게 설문조사를 독려하였음.
- 조사방식은 2023년 9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20일간 웹서베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함. 조사기간까지 479부의 설문지가 회수되었으며 설문내용을 누락하였거나 끝까지 설문에 응하지 않은 부실 기재 설문지, 조사대상이 아닌 비대상자 설문지를 제외하고 296개(61.8%)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함.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0.0을 통해 빈도 및 백분율, 평균 등을 실시함.

나. 설문조사 결과

1)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 조사대상자에 포함된 센터장의 지역은 경기남부가 229명(77.4%), 경기북부가 67명(22.6%)이고, 여성이 254명(85.8%), 남성이 42명(14.2%)으로 나타남. 센터장의 연령은 50대가 151명(51.0%)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40대(62명, 20.9%), 60대(56명, 18.9%), 30대(24명, 8.1%), 20대(3명, 1.0%) 순임. 센터장의 최종학력은 4년제 학사 졸업이 130명(43.9%)으로 가장 많고, 석사 졸업이 83명(28.0%), 전문학사 졸업이 76명(25.7%), 고등학교 졸업이 5명(1.7%) 순으로 나타남.
- 또한 센터장이 가장 많이 소지한 자격증의 1·2·3순위는 사회복지사 2급(229명, 77.4%), 보육교사 2급 및 보육교사 1급(각 70명, 23.6%), 사회복지사 1급(66명, 22.3%)이고, 이외에 어린이집원장(39명, 13.2%), 유치원정교사 및 초·중등교사(각 24명, 8.1%), 청소년지도사(12명, 4.1%), 조리사(7명, 2.4%), 유치원원감(2명, 0.7%) 자격 등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남. 이에 지역아동센터장은 매우 다양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나 대부분 아동·아동복지·아동교육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센터장)

(단위 : 명, %, 세, 년)

구분		빈도	(비율)
지역	북부	67	(22.6)
	남부	229	(77.4)
	계	296	(100.0)
성별	여성	254	(85.8)
	남성	42	(14.2)
	계	296	(100.0)
연령	20대	3	(1.0)
	30대	24	(8.1)
	40대	62	(20.9)
	50대	151	(51.0)
	60대	56	(18.9)
	계	296	(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5	(1.7)
	2/3년제 대학 졸업(전문학사)	76	(25.7)
	4년제 대학교 졸업(학사)	130	(43.9)
	대학원 석사 졸업 이상	83	(28.0)
	기타	2	(0.7)
	계	296	(100.0)
자격증	사회복지사2급	229	(77.4)
	사회복지사1급	66	(22.3)
	보육교사2급	70	(23.6)
	보육교사1급	70	(23.6)
	유치원 정교사	24	(8.1)
	유치원 원감	2	(0.7)
	초·중등교사	24	(8.1)
	청소년지도사	12	(4.1)
	어린이집원장	39	(13.2)
	조리사자격	7	(2.4)
	기타	30	(10.1)
	계	573	(193.6)

- 조사대상 지역아동센터장의 경력은 생활복지사로서 0~1년 미만이 35.5%, 1년 이상 5년 미만이 31.4%, 5년 이상 10년 미만이 19.6%,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8.4% 순으로 나타남. 또한 센터장으로서의 경력은 1년 이상 5년 미만 및 5년 이상 10년 미만이 각각 22.6%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0~1년 미만이 21.0%, 10년 이상 15년 미만이 19.2%, 15년 이상 20년 미만이 13.2%, 20년 이상이 2.4% 순으로 나타남.

[표 3-3] 조사대상자(지역아동센터장) 경력

(단위: 개, %)

	0~1년 미만	1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합계
생활복지사	105 (35.5)	93 (31.4)	58 (19.6)	25 (8.4)	13 (4.4)	2 (0.6)	296 (100.0)
센터장	62 (21.0)	67 (22.6)	67 (22.6)	54 (18.2)	39 (13.2)	7 (2.4)	296 (100.0)

2) 단체급식 관련 운영 현황

가) 이용 아동 특성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연령을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이 없는 센터가 77.0%로 가장 많고, 1~5명이 있는 센터가 22.0%를 차지함. 이외에도 미취학 이용 아동이 21~25명·26~30명·31~35명 등인 센터는 각각 0.3%인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6~10명이 있는 센터는 36.8%로 가장 많고, 다음은 11~15명(32.1%), 1~5명(14.9%), 16~20명(11.1%), 21~25명(2.4%) 순으로 나타남.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경우 11~15명이 있는 센터는 38.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6~10명(37.8%), 16~20명(11.1%), 1~5명(8.1%), 21~25명(2.0%) 순임. 반면 초등 저학년 아동이 없는 센터는 1.3%, 고학년 아동이 없는 센터는 1.0%로 대부분 초등학교생 아동이 이용하고 있음.

[표 3-4] 이용 아동 연령

(단위: 개, %)

구분	없음	1~5명	6~10명	11~15명	16~20명	21~25명	26~30명	31~35명	합계
미취학	228 (77.0)	65 (22.0)	0 (0.0)	0 (0.0)	0 (0.0)	1 (0.3)	1 (0.3)	1 (0.3)	296 (100.0)
초1~3학년	4 (1.3)	44 (14.9)	109 (36.8)	95 (32.1)	33 (11.1)	7 (2.4)	3 (1.0)	1 (0.3)	296 (100.0)
초4~6학년	3 (1.0)	24 (8.1)	112 (37.8)	113 (38.2)	33 (11.1)	9 (3.0)	1 (0.3)	1 (0.3)	296 (100.0)
중학생	57 (19.3)	132 (44.6)	81 (27.4)	21 (7.1)	3 (1.0)	1 (0.3)	0 (0.0)	1 (0.3)	296 (100.0)
고등학생	200 (67.6)	83 (28.0)	11 (3.7)	2 (0.7)	0 (0.0)	0 (0.0)	0 (0.0)	0 (0.0)	296 (100.0)

- 중·고등학생의 경우 중학생이 없는 센터는 19.3%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80.7%에 중학생 아동이 이용하고 있고 6명 이상의 중학생이 있는 센터는 36.1%에 해당함. 고등학생

의 경우 없는 센터가 67.6%로 가장 많고, 1~5명인 센터가 28.0%, 6명 이상인 센터가 4.4%에 해당함. 이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5] 이용 아동의 급식 관련 특징

(단위: 개, %)

구분	없음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합계
아토피	164 (55.4)	50 (16.9)	46 (15.5)	19 (6.4)	6 (2.0)	5 (1.7)	6 (2.0)	296 (100.0)
알레르기	161 (54.4)	70 (23.6)	47 (15.9)	11 (3.7)	4 (1.4)	1 (0.3)	2 (0.7)	296 (100.0)
기타 섭식장애	281 (94.9)	11 (3.7)	3 (1.0)	1 (0.3)	0 (0.0)	0 (0.0)	0 (0.0)	296 (100.0)

- 이용 아동의 급식 관련 특징을 살펴보면, 아토피 피부질환이 있는 아동이 1명 이상 속한 센터는 44.6%,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 아동이 1명 이상 속한 센터는 45.6%로 나타나 센터의 1/2 정도가 급식 시 특별 관리가 필요한 아동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외에도 기타 섭식장애를 보이는 아동이 속한 센터가 4.7%에 해당해 음식과 건강, 안전에 관한 정보 및 관리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상황임.

나) 급식운영 현황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83.4%가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를 한다고 응답하였고, 이외에 11.5%는 기타(위탁급식업체 이용, 반조리식품 또는 반찬 구입 등) 지원방식을, 5.1%는 배달 도시락을 지원한다고 응답하였음.

[표 3-6] 급식운영의 유형

(단위: 개, %)

구분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	도시락 배달	기타	합계
빈도 (비율)	247 (83.4)	15 (5.1)	34 (11.5)	296 (100.0)

기타 : 위탁급식, 자활급식, 벌크, 반조리 식품, 반찬 구입/배달, 월 2~3회 배달 또는 외식, 복지관 사랑의 도시락 사업 이용 등

- 학기 중 평일(월~금) 제공하는 급식으로는 70.9%가 1식을 포함해 1회의 간식을 함께 제공하고, 28.4%가 1식(석식)만 제공한다고 응답함.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학교급식과 달리 급

식비로 급식 외 간식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알 수 있음.

[표 3-7] 학기 중(평일) 제공하는 급식 횟수/유형

(단위: 개, %)

구분	1식만(석식)	1식+1회 간식	기타	합계
빈도 (비율)	84 (28.4)	210 (70.9)	2 (0.7)	296 (100.0)

기타 : 1식+2회 간식

- 주말에 급식을 제공하는 센터는 30.1%, 급식을 제공하지 않는 센터는 69.9%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행사 시간 제공하는 센터가 14.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1식만 제공하는 센터 (9.4%), 1식+1회 간식(5.4%), 2식+1회 간식(0.7%), 1회 간식만(0.3%) 순으로 나타남.

[표 3-8] 학기 중(주말/토) 제공하는 급식 횟수/유형

(단위: 개, %)

구분	제공하지 않음	1식만	1회 간식만	1식+1회 간식	2식+1회 간식	행사 시간 제공	합계
빈도 (비율)	222 (69.9)	28 (9.4)	1 (0.3)	16 (5.4)	2 (0.7)	27 (14.2)	296 (100.0)

- 특히 방학 중에는 2식+1회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가 45.6%로 가장 많고, 1식+1회 간식이 34.1%, 1식(석식)만 제공이 9.5%, 1식(중식)만 제공이 6.1%, 기타가 3.0% 순으로 나타나 방학에는 학기 중에 비해 급식 제공 횟수가 확연히 많음을 알 수 있음. 이에 방학 기간에는 학기 중에 비해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 및 급여 수준 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표 3-9] 방학 중(평일) 제공하는 급식 횟수/유형

(단위: 개, %)

구분	1식(중식)만	1식(석식)만	1식+1회 간식	2식+1회 간식	3식+1회 간식	기타	합계
빈도 (비율)	18 (6.1)	28 (9.5)	101 (34.1)	135 (45.6)	5 (1.7)	9 (3.0)	296 (100.0)

기타 : 2식, 1식+2회 간식, 2식+2회 간식, 일부 아동에게 석식 제공

다) 급식종사자 현황

- 아동단체급식 지원을 위해 급식종사자가 있는지 조사한 결과,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83.4%에서 급식종사자를 채용한 것으로 응답함. 급식종사자를 채용한 방식은 공개채용이

56.1%로 가장 많으나 이외에도 지인소개(15.9%), 기타 방식(12.2%), 친인척 고용(3.0%), 생활복지사에서 전환(0.3%)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0] 급식종사자 채용 여부 및 채용 방식

(단위: 개, %)

구분	없음	있음					합계
		공개채용	지인소개	친인척	생활복지사에서 전환	기타	
빈도 (비율)	49 (16.6)	166 (56.1)	47 (15.9)	9 (3.0)	1 (0.3)	24 (12.2)	296 (100.0)

기타 :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시군에서 지원해 주는 인력, 시니어 일자리 또는 시설 학부모로 근무하다가 채용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급식종사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60대가 39.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대(20.9%), 70대(16.2%), 40대(6.4%), 30대(0.7%) 순으로 나타나 60~70대의 급식종사자가 55.4%임을 알 수 있음. 그러나 70대의 경우, 급식종사자이지만 65세가 넘어 인건비로 신청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관리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3-11] 급식종사자 연령대

(단위: 개, %)

구분	없음	있음					합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빈도 (비율)	49 (16.6)	2 (0.7)	19 (6.4)	62 (20.9)	116 (39.2)	48 (16.2)	296 (100.0)

- 또한 근무 중인 급식종사자가 조리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지 조사한 결과, 86.3%가 관련 자격증이 없고, 13.7%만이 자격증을 소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2] 급식종사자의 조리사 자격증 소지 여부

(단위: 개, %)

구분	없음	있음	합계
빈도 (비율)	214 (86.3)	34 (13.7)	248 (100.0)

- 급식종사자 근무시간의 경우, 3시간이 47.3%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4시간(22.3%), 5시간(8.4%), 2시간 이하(4.4%), 6시간(0.7%) 순으로 나타나 아동급식을 위해 급식종사자는 대부분 3~4시간의 근무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3-13] 급식종사자 근무시간

(단위: 개, %)

구분	2시간 이하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6시간 이상	합계(평균추가)
빈도 (비율)	13 (4.4)	140 (47.3)	66 (22.3)	25 (8.4)	2 (0.7)	1 (0.3)	247 (100.0)

- 이와 관련하여 급식종사자 급여의 경우,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이 44.5%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10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이 22.7%,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이 19.2%, 120만원 이상이 5.7%,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이 4.1% 순으로 나타남.

[표 3-14] 급식종사자 급여

(단위: 개, %)

구분	3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기타	합계
빈도 (비율)	10 (4.1)	109 (44.5)	47 (19.2)	63 (25.7)	14 (5.7)	4 (1.6)	245 (100.0)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을 위한 급식종사자 현황을 종합해 보면, 80% 이상의 센터에서 급식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지만 60~70대의 노령층 급식종사자가 55.4%이고, 86.3%가 조리사 자격이 없으며, 69.6%가 1일 3~4시간의 근무를 하며, 67.8%가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는 일반적으로 급식 관련 일을 원하는 전문인력이 있어도 선호하는 근로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우수한 급식 인력을 구하거나 채용된 급식종사자가 오랫동안 근무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으로 예상됨.

3) 단체급식 운영시스템 및 보조금 입출금 현황

가) 단체급식 운영시스템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운영시스템을 확인하고자 식단관리, 식재료 구입 및 배달방법 등을 알아봄. 단체급식을 위한 식단을 작성하는 주체는 센터장이나 종사자들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는 3.4%에 불과하고, 96.6%가 외부 식단을 활용하였음. 이중 외부 식단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55.1%, 외부 식단을 센터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하는 경

우는 41.5%에 해당함.

[표 3-15] 식단 작성 주체

(단위: 개, %)

구분	센터에서 직접 작성	외부 식단 그대로 사용	외부 식단 수정 사용	합계
빈도 (비율)	10 (3.4)	163 (55.1)	123 (41.5)	296 (100.0)

- 이와 관련해 외부 식단을 활용할 경우, 참고하는 기관은 82.8%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을 이용하였고, 일부 지역아동센터중앙(광역)지원단(3.4%) 및 기타(10.4%) 기관을 이용하였음. 기타 기관으로는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학교 식단을 참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6] 외부 식단 참고 기관

(단위: 개, %)

구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중앙(광역)지원단	기타	합계
빈도 (비율)	245 (82.8)	10 (3.4)	31 (10.4)	286 (100.0)

기타 : 육아종합지원센터, 학교 식단 등 활용, 위탁업체 식단, 반찬 구입처의 식단 활용

- 또한 급식재료를 구매하는 주체는 센터장이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50.7%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생활복지사(31.1%), 기타(12.2%), 급식종사자(6.0%) 순으로 나타남. 이에 아동급식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는 주로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 등 지역아동센터의 법정 종사자가 구매를 담당하고 급식종사자는 준비된 재료로 음식 조리 업무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을 예측할 수 있음. 기타 의견으로는 위탁급식 및 도시락 배달을 이용하거나 센터장+생활복지사+급식종사자가 함께 구매, 복지관 조리사가 구매 등이 포함됨.

[표 3-17] 급식재료 구매 주체

(단위: 개, %)

구분	센터장	생활복지사	급식종사자	기타	합계
빈도 (비율)	150 (50.7)	92 (31.1)	18 (6.0)	36 (12.2)	296 (100.0)

기타 : 위탁급식/도시락 배달/아동급식 등으로 해당 사항 없음, 복지관 조리사가 구매, 센터장+생활복지사+급식종사자가 함께 구매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의 주된 식재료 구매처는 대형마트가 34.4%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단체급식 전문업체(위탁운영, 풀무원 푸드머스, 자연드림 키즈푸드 등)(30.0%), 온라인 식자재물(17.6%), 동네가게(10.5%), 기타(5.2%), 동네시장(2.4%) 순으로 나타남.

[표 3-18] 주된 식재료 구매처

(단위: 개, %)

구분	온라인 식자재물	단체급식 전문업체	대형마트	동네가게	동네시장	기타	합계
빈도 (비율)	52 (17.6)	89 (30.0)	102 (34.4)	31 (10.5)	7 (2.4)	15 (5.2)	296 (100.0)

주: 1) 야채류, 과일류, 육류, 생선류, 해산물, 가공식품류, 기타 조미료류 등을 평균한 값임

2) 기타 : 우리농산물살리기운동본부, 친환경 생협 등

- 이와 관련해 급식재료를 운반하는 방식은 배달이 69.5%, 직접 가져오는 방식은 30.5%로 나타남. 이는 센터장을 포함한 생활복지사 등 센터 내 종사자가 급식재료 구매 및 식재료 운반 등의 업무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있다는 의미임. 또한 직접 식재료를 구매하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100% 투명성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관리·점검상 한계가 생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됨.

[표 3-19] 식재료 운반 방식

(단위: 개, %)

구분	배달	직접 가져옴	합계
빈도 (비율)	206 (69.5)	90 (30.5)	296 (100.0)

나) 보조금 입출금 현황

- 단체급식 보조금 입출금 현황을 확인하고자 각 센터별 급식보조금 월총액 대비 식재료비와 인건비, 급식운영비, 단체급식 보조금에 대한 운영 수준을 질문하였음. 각 센터에서 받는 급식보조금은 월 400~500만원 미만인 31.9%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0~400만원 미만(28.5%), 500~600만원 미만(17.6%), 200~300만원 미만(7.1%), 600~700만원 미만(5.4%) 순으로 나타남. 급식보조금은 아동 1식 기준 8,000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이용 아동수가 28.1명임을 감안했을 때, 급식보조금은 월 400~50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됨(설립 2년 내 센터의 경우, 보조금 지원 없음).

[표 3-20] 급식보조금 월총액

(단위: 개, %)

구분	없음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미만	200~300만원미만	300~400만원미만	400~500만원미만	500~600만원미만	600~700만원미만	700~800만원미만	800만원 이상	합계
빈도 (비율)	11 (3.7)	2 (0.7)	2 (0.7)	21 (7.1)	84 (28.5)	94 (31.9)	52 (17.6)	16 (5.4)	8 (2.7)	5 (1.7)	295 (100.0)

- 급식보조금이 단체급식 운영을 위한 수입이라면, 식재료비와 인건비, 급식운영비는 지출에 해당함. 특히 단체급식 운영 규정에서는 급식단가의 20% 내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연료비, 물품취득비, 부식배송비,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경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는 각 센터에 지급되는 월 급식보조금에 따라 달라짐.
- [표 3-20]의 급식보조금 월총액을 기준으로 규정에 따른 급식종사자의 급여를 산출해 보면,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급여는 월 80~100만원 미만(33.1%), 60~80만원 미만(29.6%), 100~120만원 미만(18.3%), 120만원 이상(10.2%), 60만원 미만(8.8%) 순임. 그러나 앞서 [표 3-14]에서 나타난 실제 급식종사자의 급여는 60~80만원 미만(44.5%), 100~120만원 미만(25.7%), 80~100만원 미만(19.2%), 120만원 이상(5.7%), 60만원 미만(4.1%) 순임을 감안했을 때, 규정에 의해 산출된 인건비와 실제 인건비는 차이가 있음.
- 예를 들어, 규정에 따른 급식종사자 인건비가 80만원 미만으로 산출되는 센터는 38.4%인데 비해 실제 인건비를 80만원 미만으로 지급하는 센터는 48.6%로 나타남.
- 이는 (급식인력에 대한 급여 기준 없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센터 상황과 센터장의 재량에 따라 인건비가 다르기 때문으로, 급식종사자 채용으로 인한 급식의 질을 보장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급식종사자의 일관된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됨.

[표 3-21] 실제 인건비 대비 급식보조금 규정 산출 인건비

(단위: 개, %)

구분	60만원 이하	60~80만원 미만	80~100만원 미만	100~120만원 미만	120만원 이상	합계
실제 인건비	10 (4.1)	109 (44.5)	47 (19.2)	63 (25.7)	14 (5.7)	245 (100.0)
규정에 따른 산출 인건비	25 (8.8)	84 (29.6)	94 (33.1)	52 (18.3)	29 (10.2)	284 (100.0)

참고 : 표 3-14(급식종사자 급여) 및 표 3-20(급식보조금 월총액)을 기준으로 재구성한 표임

- 특히 식재료비는 급식보조금 총액의 80% 이상이 지출되는 가장 큰 지출 목록임.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에서 실제 식재료비는 월 300~400만원을 지출하는 센터가 28.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그다음은 400~500만원 미만(25.7%), 200~300만원 미만(23.0%), 500~600만원 미만(6.4%), 600만원 이상(2.7%) 순임.
- 앞서 가장 많은 급식보조금이 월 400~500만원 미만임을 감안했을 때, 이에 해당하는 식재료비는 320~400만원(80%)이므로 300~400만원 미만의 식재료비가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앞서 월 500만원 이상의 급식보조금을 받는 센터는 24.7%인데 비해 그에 따른 80%의 식재료비(400만원 이상)를 지출하는 센터는 38.4%로 나타나 13.7%의 센터가 규정된 식재료비(80%) 보다 많은 식재료를 지출하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만약 80% 수준에서 식재료를 지출한다면, 아동 1식 기준 6,400원을 식재료비로 지출하는 것임. 이는 50인 미만 학교급식 지원단가(초등학생 4,390원, 중학생 5,060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지역아동센터는 급식과 간식을 위한 식재료비로 6,400원 또는 6,40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지출을 하는 센터가 많은 것으로 추측됨.

[표 3-22] 식재료비 월 지출액

(단위: 개, %)

구분	없음	50만원 미만	50~100 만원미만	100~150 만원미만	150~200 만원미만	200~300 만원미만	300~400 만원미만	400~500 만원미만	500~600 만원미만	600만원 이상	합계
빈도 (비율)	26 (8.8)	7 (2.4)	1 (0.3)	3 (1.0)	4 (1.4)	68 (23.0)	84 (28.4)	76 (25.7)	19 (6.4)	8 (2.7)	296 (100.0)

- 이외에도 급식종사자 인건비, 식재료비를 제외하고 아동급식지원을 위해 사용한 기타 운영비를 살펴본 결과, 전혀 기타 운영비가 없다는 응답이 36.4%를 차지함. 직접 식재료를 구매해서 조리하는 센터 외 도시락을 배달하거나 위탁운영을 할 경우 기타 운영비가 들지 않을 수 있으나 이는 16.6%에 불과함. 따라서 이를 제외한 19.8%는 기타 운영비 없이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는 의미로, 기타 운영비로 지출할 비용이 부족한 것인지, 실제 기타 운영비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기타 운영비를 지출하는 센터의 경우, 월 5~10만원 미만을 지출하는 센터는 17.0%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10~15만원(13.9%), 5만원 미만(12.6%), 20~30만원 미만(6.8%), 15~20만원 미만(3.7%) 순으로 나타남. 이에 기타 운영비를 지출하고 있는 센터라 하더라도 기타 급식운

영비는 급식보조금에 비해 소액 수준인 것으로 보임.

[표 3-23] 급식운영비 월 지출액

(단위: 개, %)

구분	없음	5만원 미만	5~10만원미만	10~15만원미만	15~20만원미만	20~30만원미만	30~40만원미만	40~50만원미만	50~100만원미만	100만원 이상	합계
빈도 (비율)	107 (36.4)	101 (12.6)	50 (17.0)	41 (13.9)	11 (3.7)	20 (6.8)	10 (3.4)	5 (1.7)	6 (2.0)	7 (2.4)	294 (100.0)

- 단체급식을 운영함에 있어 급식보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확인한 결과, 센터장은 ‘보통’ 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36.7%로 가장 많음. 그다음은 ‘부족한 편(35.7%)’, ‘충분한 편(14.6%)’, ‘매우 부족(3.7%)’, ‘매우 충분(2.0%)’ 순으로 나타나 부정 응답(39.4%)이 긍정 응답(16.6%)에 비해 22.8% 높음. 이는 식재료비로 80% 이상을 지출하는 센터가 많은 반면 급식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가 낮은 수준임을 감안했을 때, 식재료비 부족보다는 급식종사자 급여 및 기타 운영비 부족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측됨.

[표 3-24] 급식보조금 운영 수준

(단위: 개, %)

구분	매우 부족	부족한 편	보통	충분한 편	매우 충분	합계
빈도 (비율)	11 (3.7)	105 (35.7)	129 (43.9)	43 (14.6)	6 (2.0)	294 (100.0)

4) 개선점 및 지원 요구

가) 단체급식 단가 및 운영의 적절성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장을 대상으로 현 단체급식 지원의 적절성을 조사함. 먼저 단체급식 단가(8,000원)의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센터장은 긍정 응답이 57.8%(매우 적절 2.4%, 적절한 편 55.4%), 부정 응답이 42.2%(매우 부적절 5.7%, 부적절한 편 36.5%)로 나타나 긍정 응답이 15.6% 높음. 반면 인건비를 포함해 식재료비, 운영비 등을 총합해 일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긍정 응답이 34.8%(매우 적절 1.7%, 적절한 편 33.1%), 부정 응답이 65.2%(매우 부적절 20.9%, 부적절한 편 44.3%)로 나타나 부정 응답이 30.4% 높음. 또한 단체급식과 개인 매식의 동일단가적용에 대한 적절성을 조사한 결과, 센터장은 긍정 응답이 48.0%(매우 적절 1.7%, 적절한 편 46.3%), 부정 응답이 52.0%(매우 부적절 7.8%, 부

적절한 편 44.2%)로 나타나 부정 응답이 4.0% 더 높게 나타남.

- 이에 센터장은 현재의 단체급식지원 제도에서 보조금 총액 지원방식 및 동일단가적용 등에 있어 적합하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으나, 급식지원단가(8,000원)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표 3-25] 단체급식 지원의 적절성

(단위: 개, %)

구분	매우 적절	적절한 편	부적절한 편	매우 부적절	합계
단체급식단가 (8,000원)	7 (2.4)	164 (55.4)	108 (36.5)	17 (5.7)	296 (100.0)
지원방식 (인건비+식재료비+운영비 포함 총보조금 지원)	5 (1.7)	98 (33.1)	131 (44.3)	62 (20.9)	296 (100.0)
단체급식/개인매식 동일단가적용	5 (1.7)	137 (46.3)	131 (44.2)	23 (7.8)	296 (100.0)

- 센터장이 생각한 단체급식의 적절한 지원방안을 조사하였음. 센터장은 ‘현재의 급식단가 및 운영방식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4.4%만 동의하였음. 반면 ‘단체급식단가를 높이고,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42.2%를, ‘단체급식단가는 동일하게 유지하되,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27.0%를, ‘단체급식단가를 낮추고,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10.8%를 응답해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총 80.0%가 동의하였음.

[표 3-26] 단체급식 지원의 적절한 방식

(단위: 개, %)

구분	빈도 (비율)
단체급식단가 · 운영방식 현재 유지	13 (4.4)
단체급식단가 높이고, 현 운영방식 유지	24 (8.1)
단체급식단가 동일, 인건비 따로 지원	80 (27.0)
단체급식단가 낮추고, 인건비 따로 지원	32 (10.8)
단체급식단가 높이고, 인건비 따로 지원	125 (42.2)
기타	25 (8.4)
합계	296 (100.0)

기타 : 출결과 상관없는 급식비 지원, 선지급, 조리사 4대보험, 체험활동 시 추가지원,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 방학중 근무시간 연장, 운영비를 20%로, 간식비 별도 등

- 이외에도 ‘단체급식단가를 높이고 현 운영방식을 유지해야 한다’ 는 의견이 8.1%, 기타 (출결과 상관없는 급식비 지원, 급식보조금 선지급, 조리사 4대보험 적용, 체험활동 시 추가지원, 연령에 따른 급식비 차등 지원, 방학 중 급식종사자 근무시간 연장, 간식비 별도 지원 등) 의견이 8.4%로 나타남.

나)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점

-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에 있어 센터장들은 1순위로 급식종사자 채용(42.2%), 급식보조금 부족(21.3%), 급식종사자 관리(10.1%) 등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또한 2순위로 급식종사자 관리(19.3%), 급식보조금 부족(17.6%), 급식종사자 채용(17.3%) 등이 나타나 1·2순위를 합쳐 ‘급식종사자 채용(59.5%)’, ‘급식보조금 부족(38.9%)’, ‘급식종사자 관리(29.4%)’, ‘급식환경의 열악함(24.7%)’ 등이 어렵다고 응답하였음.
- 이에 센터장은 단체급식 운영에 있어 ‘급식보조금 20% 내’ 라는 규정에 따라 급식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적합한 급식종사자를 채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3~4시간의 짧은 근무시간 및 낮은 처우로 급식종사자 관리상의 어려움을 가장 크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이외 기타 어려움으로는 아동 입맛에 맞지 않는 식단, 선구입 후정산, 출석인원에 따른 급식보조금 지원, 공공근로 10개월 근무로 인한 2개월 조리사 공백, 급식관리센터의 지도에 따른 갈등, 방학 2식 중 1식만 지원, 양질의 식재료 구입의 어려움 등이 포함됨.

[표 3-27]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단위: 개, %)

구분	1순위	2순위
급식종사자 채용	125 (42.2)	51 (17.3)
급식종사자 관리	30 (10.1)	57 (19.3)
급식보조금 부족	63 (21.3)	52 (17.6)
식재료 전문업체 선정	27 (9.1)	39 (13.2)
남은 식재료 처리	11 (3.7)	20 (6.8)
급식환경의 열악함	28 (9.5)	48 (16.2)
기타	12 (4.1)	29 (9.8)
합계	296 (100.0)	296 (100.0)

기타 :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 식단, 한정적인 식단, 급식재료 선 구입 후 정산 시 출석인원만큼만 급식보조금 지원, 공공근로 10개월 파견 근무로 2개월 조리사 공백 발생, 급식관리센터의 지도방침에 대한 갈등 및 스트레스, 정산 및 서류 작업 어려움, 방학 시 제공하는 2식 중 1식만 지원, 양질의 식재료 구입 어려움, 단체급식업체 선정 등

다)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

-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를 조사하였음. 센터장들은 지원 요구 1순위로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56.1%), 단체급식단가 상향(16.9%), 급식환경 개선(11.5%)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음. 또한 2순위로 급식행정처리 간소화(38.5%),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18.2%), 급식환경 개선(13.5%) 등이 나타나 1·2순위를 합쳐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74.3%)’, ‘급식행정처리 간소화(48.3%)’, ‘단체급식단가 상향(30.1%)’, ‘급식환경 개선(25.0%)’ 등을 요구하였음.

[표 3-28]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을 위해 필요한 지원

(단위: 개, %)

구분	1순위	2순위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	166 (56.1)	54 (18.2)
단체급식단가 상향	50 (16.9)	39 (13.2)
급식환경 개선	34 (11.5)	40 (13.5)
공공 식재료 전문업체 지원	10 (3.4)	26 (8.8)
급식행정처리 간소화	29 (9.8)	114 (38.5)
단체급식 관련 교육	4 (1.4)	10 (3.4)
합계	296 (100.0)	296 (100.0)

2. 초점집단면접

- 설문조사를 통한 수치화된 분석 결과의 한계를 보완하고,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자와 급식종사자 입장의 생생하고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자 시·군 지역아동센터장 및 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을 실시하였음.

가. 지역아동센터장 초점집단면접

1) 지역아동센터장 초점집단면접 개요

- 지역아동센터장 대상 초점집단면접의 목적은 설문조사 결과 중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구체적인 현장 상황에 대한 질문과 센터장이 생각한 단체급식 제도상의 개선점,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지원 요구에 대한 세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임.
- 센터장 대상 초점집단면접의 내용은 설문조사 결과를 기초로 크게 3개의 질문으로 구성된 질문지를 활용하였음. 구체적으로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지원의 다양한 사례(다문화, 연령, 간식, 방학급식 등), 현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생각(동일단가적용, 급식단가, 총액보조금 지급방식, 20% 내 인건비 및 운영비 사용 등), 단체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요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의견을 묻는 문항들로 구성하였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였음.

[표 3-29] 초점집단면접 내용(지역아동센터장)

영역	내용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의 구체적인 현황 및 어려움	- 단체급식 운영의 다양한 구체적 현황(다문화, 연령, 인력 채용 등) - 방학급식 운영의 구체적인 사례
현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생각	- 지원단가 8,000원, 동일단가적용에 대한 의견 - 총액보조금 지급방식 및 20% 내 인건비/운영비 사용에 대한 의견
단체급식 운영의 발전을 위한 지원 요구	- 단체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발전방안 - 정부 및 경기도에 바라는 점

- 센터장 대상 초점집단면접은 2023년 11월 3일(5명), 6일(5명) 양일간 2회에 걸쳐 비대면회의로 진행하였고, 회당 2시간씩 총 4시간이 소요되었음. 초점집단면접 참여자의 배경 정보는 [표 3-30]과 같음.

[표 3-30]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배경 정보(지역아동센터장)

(단위: 명, 천원)

번호	지역	성별	종사자	이용 아동 (현원)	급식운영 유형	급식종사자				FG일정
						채용여부 및 채용방식	근무기간	근무시간	급여	
1	남부	여	복지사 3 조리사 1	총 32명 (초27, 중5)	직접조리	공개채용	1개월	4시간	1,011	11.3.금 10:00~12:00 (120분/ 비대면)
2	북부	여	복지사 1 조리사 1	총 21명 (초20 ,중1)	직접조리	지인소개	3년6개월	3시간30분	950	
3	남부	여	복지사 2 조리사 1	총 42명 (초30, 중12)	직접조리	공개채용	4년8개월	5시간 (휴게시간 30분포함)	1,423 (방학중 1,923)	
4	남부	여	복지사 1 조리사 1	총 21명 (초20, 중1)	직접조리	공공일자리	9개월	5시간30분	962	
5	남부	여	복지사 4 조리사 0	총 44명 (초26, 중11, 고7)	위탁운영	해당 사항 없음				
6	남부	남	복지사 1 조리사 1	총 19명 (초18, 중1)	직접조리	공개채용	4년8개월	4시간 (휴게시간 30분포함)	1,100	11.6.월 9:30~11:30 (120분/ 비대면)
7	남부	여	복지사 1 조리사 1	총 29명 (초29)	직접조리	공개채용	5년	3시간	760	
8	남부	여	복지사 1 조리사 2	총 14명 (중9, 고5)	직접조리	노인일자리 (2명)	9개월	2시간	-	11.6.월 9:30~11:30 (120분/ 비대면)
9	남부	여	복지사 1 조리사 1	총 18명 (초18)	직접조리 (방학중한 식 뷔페배달)	지인소개	6년9개월	2시간30분	700	
10	남부	여	복지사 1 조리사 2	총 20명 (초9, 중9, 고2)	직접조리	노인일자리 (2명)	1년	4시간30분	- (수당지급)	

2) 지역아동센터장 초점집단면접 결과

가) 단체급식 운영 현황 및 어려움

: 급식비 20% 내 인건비 규정으로 급식종사자의 짧은 근무시간 및 노령 종사자 채용, 적정 종사자 채용의 어려움과 인건비 부족 등의 문제가 있고, 이외에 방학급식, 규모가 작은 센터와 중고등학생 이용 센터의 급식보조금 부족, 다문화아동 및 결석 아동으로 인해 급식 지원에 있어 어려움이 발생함.

(1) 급식종사자 인건비 규정으로 인한 문제 : 짧은 근무시간 및 연령 제한

-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센터장들은 급식비의 20% 내에서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2~4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인력 구인에 어려움이 발생하며, 마무리하지 못한 설거지 등의 뒷정리를 생활복지사가 해야 하는 상황이라 급식으로 인한 업무가 부담된다고 하였음. 또한 식단표에 조리를 해야 하는 간식류가 포함돼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고 싶지만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이 짧아 간식을 만들어 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하였음.
- 특히 짧은 근무시간 및 낮은 처우로 적정 급식종사자를 채용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은 급식 인력으로 보고를 할 수가 없어 행정상 사업비로 등록하고 급식보조금 회계처리 시에는 급식종사자 인력비로 넣는 등 규정과 행정이 현장과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음.

25인 시설에 조리사님 근무시간이 3시간 반인데 급여가 많지 않아서 오는 사람이 드물어요. 구인이 굉장히 어렵고 저희 조리사님은 55년생(68세)이세요. 근데 연령 제한이 있잖아요. 희망이음에서 65세 이상이면 종사자 보고가 안 돼요. 그래서 인건비가 아니라 사업비로 신청을 해요. 정산할 때는 인건비가 되니까 회계상으로 안 맞는 거죠. 【센터장 2】

얼마 전에 00시에서 60세 넘어가는 사람들은 근무할 수 없다. 이래서 한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 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오지 않으려고 해요. 하루에 2시간 반 3시간 반 매일 와서 조리하는 거를 원치 않거든요.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데 시에서는 보조금 수령에 따른 연령을 60세로 정해놓고, 그 이상 넘어간 사람들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건지 【센터장 7】

현재 초등학생 16명이 이용하고 있고 급식선생님이 계시지만 근무시간이 2시간 반 정도로 짧다 보니 종사자들이 뒷정리를 한다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가 연차라도 쓰면 혼자 아이들도 보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간식은 공산품을 사서 먹고요. 만들어 먹이고 싶지만 시간이 부족해 쉽지는 않아요. 【센터장 9】

저희는 초등학생 29명이고 그중 다문화아이들이 3~4명있어요. 사실 조리사님은 3시간도 부족해요. 왜냐면 아이들이 다 먹고 나와 뒷정리를 하니까 빨리 먹으라고 재촉하거나 뒷정리를 저희 선생님들이 하게 되는 거예요. 간식은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가끔 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에 보면 조리를 해서 줘야 되는 것들이 나와요. 근데 간식할 시간이 안 되거든요. 결국 종사자들이 해야 된다는 얘기죠.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센터장 7】

(2) 불안정한 급식종사자 배치 및 인건비 부족 문제

-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센터장 중에는 시에서 자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급식종사자를 지원해 주는 사례가 포함돼 있음. 그러나 공공근로 및 노인일자리 사업이 10개월만 운영되는 사업이라 겨울방학 기간인 12월부터 1월까지의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3개월분의 운영비를 모아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급식종사자의 공백을 생활복지사 및 센터장이 대신해 급식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였음. 또한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급식종사자의 경우, 경험 부족으로 단체급식 업무가 서툰 분, 나이가 너무 많아 건강이 안 좋으신 분 등 급식종사자로서 적합하지 않은 분들이 많다고 하였음.

- 특히 25인 이하 센터장의 경우, 급식비의 20% 내 인건비가 실수령액 정도밖에 안 돼 근로기준법에 따른 퇴직적립금·4대 보험 등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실제 급식종사자의 인건비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였음. 이에 센터 운영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센터장의 사비로 기타 비용을 지급하거나 후원금을 모아 지급할 수밖에 없다면서 아동이 센터를 이용하는 1년 내내, 급식종사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시에서 급식종사자는 공공근로 5시간 인력을 10개월 동안 지원해 줘요. 근데 1월과 12월은 공백이 있어요. 이때는 시하고 합의해서 3개월분 운영비를 당겨서 시설장이 먼저 선지급하거나 조리사하고 논의해서 2월달에 지급해요. 문제는 공공근로는 간식비, 월차, 주차비 같은 생활임금제를 주거든요. 조리사님하고 합의가 잘 되면 생활임금제 없이 해 주시지만 어떤 분은 돈 안 주면 안 하겠다 하거든요. 또 공공근로다 보니 조리를 너무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10개월 내내 힘들어하시는 센터들도 있어요. 게다가 겨우 맞춰 놓으면 이분은 2년 이상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또 새로 파견돼 오는 거예요. 【센터장 4】

시니어 인력이 없는 12월에서 1월 중반까지.. 또 방학에는 2식을 하니까 방학 중에는 주로 제가 하고, 무슨 일 때문에 못할 경우에는 주문을 해서 먹이고 있습니다. 【센터장 10】

저희 시는 노인일자리라고 두 분이 오셔서 2시간 정도 일을 하세요. 문제는 노인일자리 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으시고 몸이 안 좋으신 분들도 계시고 어린이급식센터에서 나오는 식단을 못 만드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와서 해 주시는 거 감사하긴 하지만 급식의 질은 분명히 저하된다 생각하고 그것마저 12월 1~2월에는 없어요. 사업이. 그러면 종사자들이 급식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매일 식재료 사다가 조리하고 먹고 치우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교육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센터장 8】

실수령액이 95만원이지 퇴직적립금, 사회보험, 주휴수당 이런 부분은 낼 수가 없어서 제 월급에서 적립해서 드리던가 후원금 받아서 8만원 넘게 들어가거든요. 사회보험료도 5~6만 원이라 총 14~5만 원 되거든요. 인건비가 너무 부족하죠. 【센터장 2】

- 반면 지자체에서 4시간 이상의 급식종사자를 장기간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경우,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대체 음식 및 아이들이 좋아하는 간식 등을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등

안정적으로 급식이 운영될 뿐만 아니라 시간적 여유로움으로 급식종사자가 아이들과 정서적 교류를 하는 등의 긍정적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19명 중 다문화아동이 8명 있고 학기 중 1식, 방학 2식 다 합니다. 조리사님은 휴게시간 포함 해서 학기 중 4시간 반, 방학 중 7시간 정도 근무하십니다. 조리사님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시에서 86만 9천 원 지원을 받으세요. 00시의 모든 시설들은 4시간 이상의 안정적인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 86만 9천 원도 문제가 돼서 종사자들이 이를 대체하고요. 간식은 조리할 때도 있고 과일이 나가기도 해요. 조리사님이 2시부터 6시 반이니까 아이들과 교류하는 시간이 있어서 긍정적인 시너지를 내고 그렇습니다. 【센터장 6】

(3) 방학 중 급식 문제

- 방학은 지역별 센터별 단체급식의 운영이 매우 다양하였음. 어떤 지자체는 방학 때도 2식이 아닌 1식 급식비만 나와 어쩔 수 없이 1식 제공밖에 할 수 없다고 하였고, 어떤 지자체는 2식 급식비가 지원되고 실제 2식을 운영하지만 모든 아동들이 2식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2식을 위한 급식종사자 인건비는 지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하였음. 이에 센터장들은 방학 중 1식은 생활복지사나 센터장이 임의대로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제공하거나 주변 한식뷔페 배달로 지원은 하고 있지만 문제가 생길까 봐 불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방학도 똑같이 저녁만 제공해요. 왜냐면 방학급식비가 따로 나오지 않고 1식만 나오니까. 그래서 방학 때는 점심을 제공하는 센터도 있고 저녁을 제공하는 센터도 있어요. 아침밥 안 먹고 10시에 오는 아이들이 많지는 않지만 10명 정도 돼요. 부모님들께는 점심식사는 식단대로 못 한다 미리 얘기하고 양해가 가능하면 김치볶음밥 같은 간단한 거를 선생님들이 만들에서 제공하는데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걱정이 되는 거죠. 【센터장 2】

방학에 저희는 2식을 하는데 신청하면 급식비가 나오기는 하지만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일찍 와야 되는 친구들이 5명에서 8명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선생님들이 먹는 대로 아이들이랑 같이 먹겠다. 매뉴얼 없이 그거에 부모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먹기는 하는데... 저희도 2식 하면 좋겠죠. 근데 2식 하면 조리사 인건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힘들어도 계란말이 하나 더 해서 같이 먹는 거예요. 【센터장 4】

방학에 저희는 두 끼를 다 먹고 있어요. 근데 급식선생님 시간이 짧다 보니까 점심은 주로 근처에 있는 한식뷔페에다 주문을 해서 먹고 저녁만 급식을 해 주세요. 【센터장 9】

(4) 규모가 작은 센터 및 중고등학생 이용 센터의 급식보조금 부족 문제

- 센터장들은 시설의 규모가 작을수록 단체급식 지원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하였음. 예를 들어, 19인 시설의 경우 급식종사자 인건비 자체가 나오지 않고, 20% 내에서 인건비를 지급하려면 4대 보험 및 퇴직금 등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인원이

적어도 조리도구나 조리용품은 똑같이 필요한데 남은 금액이 없어 급식운영비는 전혀 쓸 수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 특히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포함된 시설의 경우 먹는 양이 초등학생과는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급식비가 똑같아 항상 모자란 상황이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래도 25인 시설은 조금 나아요. 제가 19인 하다 증원한 건데 19인 시설을 할 때는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줄 수가 없어요.【센터장 2】

작은 센터는 20% 내에서 급여량 4대보험을 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범법자가 되지 않으려면 따로 분리되고 인건비가 보장되어야 해요.【센터장 7】

19인 시설은 인원이 적다 뿐이지만 조리용품이나 조리도구 다 똑같이 필요하고 똑같은 조리료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운영비는 전혀 쓸 수가 없어요.【센터장 1】

19인 시설에 중고등 아이들이 14명 정도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중고등생이니까 굉장히 많이 먹는데 똑같이 8천 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급식비가 모자라고 종사자를 채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급여가 아예 안 나오기 때문에, 초등 아이들이 먹는 거랑 중고등생이 먹는 거랑은 진짜 다르잖아요. 양 자체가 달라요.【센터장 8】

(5) 급식운영비 부족 문제

- 센터장들은 급식비의 20% 내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급식운영비를 써야 한다는 규정은 현장에 맞지 않는다고 불만을 호소하였습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로도 부족하기 때문에 급식운영비로 쓸 금액이 남지 않아 급식에 필요한 조리도구 및 소모품은 모두 일반 운영비에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아무리 친환경의 식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조리도구가 사용기한을 넘겨 불량한 상태에서는 급식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급식운영비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저희는 급식운영비로 소모품이나 조리도구 사고 이런 걸로는 전혀 뺄 적 없어요. 항상 급식인건비로 뺐어요. 급식에 관련된 소모품은 일반 보조금 운영비에서 수용비, 수수료에서 썼고요. 급식비 20% 기준은 이미 인건비가 부족한 상황이니깐【센터장 2】

저희도 소모품이나 이런 거는 사실 20%에서 쓴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일반 운영비에서 썼어요.【센터장 1】

프라이팬이나 냄비 이런 거 1년 단위로 쓰니까 바닥 다 긁힌 거예요. 교체를 해야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재료가 아무리 좋으면 뭐하겠어요. 프라이팬이 긁어져 있고, 주방이 불결하면 친환경 제품이 의미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운영비가 없는데 어떡해요.【센터장 6】

(6) 기타 다문화아동 및 결석 아동으로 인한 급식 문제

- 이외에도 센터장들은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정 아동이 많은 지역들이 있다면서 다문화가정 아동의 경우, 종교적 신념으로 못 먹는 음식들이 있기 때문에 단체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또한 아동이 아파서 갑자기 결석을 한 경우, 이미 식재료는 구입을 했고 음식이 남았지만 출석률이 90% 미만이면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였음.

지역 특성상 다문화가 100%라고 보시면 돼요. 종교적 신념 때문에 우즈베키스탄이나 이슬람 종교는 돼지고기, 힌두교 친구들은 소고기를 안 먹고, 몽골 아이들은 생선을 전혀 먹지 않거든요. 대체식품이 있어야 되는 점과 조리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센터장 1】

또 아이들 아파서 갑자기 결석을 하면 시장을 봤고 음식은 남지만 급식비는 그만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요. 【센터장 9】

나) 현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생각

： 센터장들은 현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방식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하였음. 이때 급식종사자의 근로시간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달리하되 안정된 근로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또한 동일단가적용을 센터 규모별/이용아동의 연령별로 세분화하고, 단가책정 시 간식비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음.

- 센터장들에게 현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센터장들은 모두 급식비에서 인건비는 당연히 분리되어야 하고 처음부터 그렇게 세팅되었어야 한다고 비판하였음. 인건비 문제로 인해 도시락 배달, 위탁운영 등 다양한 급식지원 유형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역아동센터의 본래 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불안정한 인력 및 짧은 근무시간으로 인해 센터장이나 생활복지사가 급식 일을 대신 하는 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전반적인 운영 및 교육의 질에 문제가 생기는 원인이라고 하였음.
- 특히 센터장들은 현재 아동급식지원 제도는 센터의 규모나 이용 아동의 연령과 상관없이 똑같은 급식단가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문제가 된다고 하였음. 이외에도 지역아동센터는 학교와 달리 간식을 제공하는데 간식비가 따로 책정돼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식비가 많이 올라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면서 간식비 책정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지역아동센터는 결식아동 무료급식소에서 출발 시원을 갖고 있으니 조리사가 당연히 세팅이 됐어야 되는데, 조리사 세팅이 안 되다 보니까 배달해서 먹겠다 위탁해서 먹겠다 해서 원래 본질이 상실되고 있는 거죠. 기본적으로 조리사가 세팅돼야 센터장님이나 복지사가 급식 일을 한다 그러면 센터장님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얘기에요. 【센터장 6】

인건비는 분리가 되면 좋겠다. 그런데 취사원의 근무시간이 최소한 5시간 이상 확보가 돼야 전 조리과정이라든지 뒤처리과정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센터장 5】

당연히 종사자 인건비가 분리돼야 된다, 그건 처음부터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재료비는 소규모 시설일수록 재료비 단가가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50명이랑 16명 구입하는 단가 자체가 다를 수 있고 중고등생이 있는 센터면 중고등생이 훨씬 많이 먹기 때문에 먹는 양이나 이런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센터장 8】

급식종사자 지원금이랑 순수 급식비하고는 분리되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외에 간식비가 정말 많이 들어요. 과일이라든지 아이들에게 먹고 싶은 간식을 주려면 급식비에 맞먹거든요. 10인이든 19인이든 들어가야 될 재료나 기본적인 재료는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일수록 단가를 올려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센터장 10】

다) 단체급식 운영 발전을 위한 지원 요구

： 센터장들은 단체급식 운영의 발전을 위해 식재료비와 인건비 분리, 안정적 급식종사자 배치 및 근로시간 보장, 순수 식재료비 보장, 종사자 동반 식사 허용, 급식환경 개선, 급식종사자 의무교육, 상황에 따른 운영의 유연성 보장 등을 요구하였음.

(1) 인건비 분리 및 안정적인 급식종사자 배치, 근로시간 보장

- 센터장들은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운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급식종사자가 안정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이를 위해 급식비에서 인건비가 따로 분리되어야 하고, 시설 규모에 따라 적정 근로시간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하였음. 구체적으로 25인 기준 3시간 30분, 30명 기준 4시간, 40명 기준 5시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급식 준비부터 위생관리와 마무리까지를 할 수 있다고 하였음.
- 이에 센터장들은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최우선으로 확보한 후, 식재료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책정해야지 인건비 부분을 해결하지 않은 채 급식단가만 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였음.

음식은 조리사님이 만드는 거잖아요. 친환경 재료를 쓰네, 좋은 재료를 쓰네 하는 것보다 그 음식을 제공하고 만드는 사람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아이들과 교류하면서 아이들 시선을 보고, 가정을 대체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8천 원 중에 조리사 인건비를 5천 원 6천 원이 주는 한이 있더라도 00시처럼 안정적으로 조리사 인건비를 분리하고, 그 다음 재료비는 정말 첨예하게 책정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 6】

25인 시설인데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두 분을 지원을 해주세요. 2시간 간격으로 겹치지 않게 3시간 반 일하시는데 조리사님이 3시간 반이면 괜찮다고는 하시거든요. 그 정도는 돼야 안정적으로 급식이 운영될 거 같아요. 【센터장 2】

지금 42명 아이들을 위해 학기 중에는 5시간 반, 방학 때는 8시간 반을 근무하세요. 간식 준비해 주시고 쓰레기 분리수거, 아이들 식사 후 수저 삶아서 말리고 가시는 것까지 하면 그 정도 걸려요. 【센터장 3】

조리사 근무시간은 4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4시간은 적정 수준이라고 보거든요. 저희 선생님들 하는 거 보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32명 있어요. 【센터장 1】

(2) 순수 급식비 안정적 보장

- 인건비 분리 다음으로 센터장들은 순수 급식비(식재료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였음. 결식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은 경제적 효율성만으로 접근할 수 없는 사업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와는 별도로 순수 급식비는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하고, 인건비 확보로 식재료비를 줄이게 된다면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음. 이에 센터장들은 현재의 총액급식단가(8,000원) 중 인건비 20%를 제외한 6,400원 선은 유지되기를 고대하였음.

8,000원에서 인건비 20% 빼면 6,400원이잖아요. 그것도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저도 6,400원 식재료비를 건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센터장 8】

재료비 6,400원에서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려되는 건 급식이 그냥 밥 먹이는 거 정도로 접근을 해서 경제적 효율성만을 가지고 접근이 들어간다면 지역아동센터가 만든 출발이랑은 좀 너무 다르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센터장 6】

6,400원 안에서 운영비를 고정하기보다 순수 급식비가 안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쌀이나 이런 게 후원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을 땐 쌀 이런 걸 구입해야 되고, 양념도 한 번씩 사다 보면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간식비도 많이 들고요. 【센터장 9】

(3) 센터 종사자의 동반 식사 허용

- 초점집단면접에서 센터장들은 지역아동센터가 단지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 아닌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기관임을 강조하였음. 예를 들어,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면서 생활복지사들이 함께 둘러앉아 대화를 나누며 집과 같은 분위기에서 밥을 먹는 것은 아동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음. 그러나 현재는 아동을 위한 급식비라는 이유로 센터 내 종사자들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없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였음. 특히 방학의 경우,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시간은 종사자들도 식사를 해야 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위해 급식을 지원하지만 함께 식사를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였음.

- 이에 센터장들은 아동 급식 시간과 종사자 식사 시간이 겹치는 방학만이라도 종사자들이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종사자들이 아동과 같은 급식비를 지불해서라도 함께 식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지역아동센터는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 아니라, 진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그중 하나가 선생님들이 같이 얘기 나누면서 밥을 먹는 거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근데 언제부터인가 아이들 급식을 위해서 나오는 돈이니까 선생님들은 절대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특히 방학 때는 점심 주는 시간이 선생님들도 밥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에요. 방학 때 선생님들이 자기 휴게시간을 제대로 쓰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최소한 방학 때만이라도 아이들과 같이 둘러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같이 밥 먹고 정리하는 시간으로 같이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센터장 7】

저는 교사도 똑같은 급식비를 내더라도 같이 먹게라도 해주면 좋겠다. 안 그러면 굉장히 이질감이 있고 교사들도 배고프시잖아요. 그 시간에. 【센터장 8】

(4) 단체급식 환경 개선

- 센터장들은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급식환경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하였음. 일부 센터장 중에는 센터 이전으로 인해 주방 환경이 좋아지자 급식의 질이 개선된 것을 경험했다면서 청결과 위생 부분에 있어 열악한 센터를 중심으로 환경개선 사업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하였음.
- 또한 급식환경 중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밥솥 등 조리에 필요한 가전제품의 경우, 운영비로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가격이라 운영상 어려움이 많으면서 이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예를 들어, 모든 센터가 동일한 시기에 냉장고나 가스레인지를 교체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년에 1~2회라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필요한 센터들이 신청을 하도록 하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센터에 급식환경 개선비를 지원해 주는 방식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저희는 이번 21년에 이전을 했어요. 이전을 하면서 주방 환경을 제일 많이 신경을 썼어요. 주방을 참 좋게 하니깐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곳들이 좀 열악한 곳이 많아서 주방 환경이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센터장 3】

조리실 환경적인 거 위생이나 청결 부분에 있어서 질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가끔 지자체에서 환경개선사업을 하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센터장 1】

저는 물품 구입비가 분기별로 한 번씩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들어요. 진짜 뭐가 큰 게 하나 고장이 났을 때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밥솥이 고장 났다. 밥을 못 해. 가전제품이라는 게 한 번 샀다고 그게 쭉 가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가면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게 막 가슴이 떨려요. 굉장히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고장 나면 사용할 수 있도록. 【센터장 7】

소독기 망가지면 60~70만 원, 냉장고는 100만 원 넘어가는데.. 저희 예전에 한번 냉장고 망가졌을 때 한 달 동안 김치냉장고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누가 버린 거 없나 돌아다닌 거예요. 온 동네를.. 뭔가 살 거면 후원금 받아서 사라예요. 그렇다고 언제 망가질지 모르는 것을 대비해서 받아놓을 수도 없고 누가 1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게 아니잖아요. 물품 구입비는 급식의 질하고 연동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후라이팬 이런 건 소모품으로 사면 되는데 큰 물건들은 없으면 안 돼요. 【센터장 8】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은 운영비에서 어느 정도는 살 수 있겠는데, 냉장고라든지 좀 큰 거. 환경개선이라는 거를 해서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기능보강사업을 해서 지원이 되면 필요한 센터들이 응모를 하듯이. 왜냐하면 모든 센터가 다 냉장고를 구입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급식시설보강사업 이런 걸 좀 편성을 해 주시면 어떨까. 【센터장 10】

(5) 급식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 센터장들은 현재의 인건비 수준으로는 조리사 자격을 갖춘 급식종사자를 채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자들이 급식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급식종사자들이 단체급식 규정에 맞지 않는 업무 처리를 하는 경우들이 생긴다면서 급식의 질 관리를 위해서는 급식종사자 의무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음.
- 예를 들어, 어린이급식 식단에 나온 메뉴를 조리하지 못하는 경우, 위생·청결관리가 부실한 경우, 아이들을 위한 음식 및 남은 식재료를 잘못이라는 인식 없이 함부로 싸 가는 경우 등 조리방법, 위생교육, 단체급식 지원에 관한 교육, 마인드교육 등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저희는 집단급식소가 아닌데 점검은 집단급식소 수준이에요, 특히 어린이급식지원센터에서 순회는 영양사가 나와요. 뺏속부터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에 대한 게 투철하셔서 굉장히 하드하게 요구하고 그게 문서로 남겨드요. 단체급식소 채용 기준은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임금으로는 조리사 자격증 있는 분을 채용할 수가 없는데. 사실 노인일자리나 공공근로하는 어르신들한테 단체급식소 기준으로 관리나 조리를 부탁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교육을 철저히 해 주던가 현실적인 절충안이 필요하다. 【센터장 5】

조리사 분들은 되게 다양한 성향들이 갖고 있어요. ‘저 요리 못해요’ 라는 분도 있고 위생관리에 있어 ‘옛날에 나 이랬어’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린이급식 점검을 맞출 수가 없어요. 센터장이 교육을 시키라는데 그건 사실 불편합니다. 의무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 의무교육을 해 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센터장 4】

어린이집관리센터에서 오면 저희들한테 시설장이 조리사 교육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설문지를 작성해 가요. 유명무실하죠. 의무적으로 위생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특히나 조리사분들이 손을 댄다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식자재가 좋고 혼자 독립된 공간에서 조리를 하다보니... 저희들이 대놓고 교육하기는 어렵거든요. 【센터장 4】

(6) 센터 상황에 따른 규정의 유연성

- 마지막으로 센터장들은 현재 단체급식 규정이 현장의 상황에 맞지 않는 점들이 많다고 지적하였음. 구체적으로 앞서 조리사 자격이 있는 종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인건비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점검은 조리사 자격이 있는 종사자만이 가능한 업무 수준을 요구한다는 점, 다문화가정 아동은 먹을 수 없는 식단임에도 불구하고 대체식 기능에 대한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 지역아동센터의 기능에 가정 같은 분위기의 정서 지원이 포함돼 있지만 가정처럼 여유 식재료는 보관할 수 없다는 점 등임.
- 이에 센터장들은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 운영 상황이 다양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급식을 포함해 종합적인 서비스가 지원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관리 규정의 유연성이 가능해지기를 기대하였음.

현실과 정책이 우려되는 지점이 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00센터장님이 중고등학생들이 간식을 직접 해서 먹는다고 했잖아요. 가족 같은 분위기에 애들이 해 먹고 너무 이상적인 분위기인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식단표에 없는 식자재가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지적이 되거든요. 해 주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센터장 5】

저희는 다문화 외국인들이 많아서 예외 사항으로 좀 고려해서 준비를 미리 해놓을 때도 있거든요. 이런 특수지역은 대체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명시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근거에도 없는 거를 저희가 만들어 먹이는 것도 사실 불안하더라고요. 【센터장 1】

나. 급식종사자 초점집단면접

1) 급식종사자 초점집단면접 개요

- 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의 목적은 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의 주체인 급식종사자 입장에서 바라본 해당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지원의 구체적인 사례를 듣고, 급식종사자로서 업무수행의 어려움 및 개선점, 필요한 지원 등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임.
- 이를 위한 질문 내용은 크게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역할, 급식종사자로서의 만족감과 보람, 급식종사자가 바라본 업무상 어려움 및 사업의 개선점, 필요한 지원 요구 등 3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 내용을 사전에 공유하였음.

[표 3-31] 초점집단면접 내용(급식종사자)

영역	내용
급식종사자 근로환경 및 역할(업무내용)	-급식종사자로 일을 하게 된 계기 및 근로기간 -근로시간, 업무내용(간식 조리 여부, 김치 등), 남은 음식 처리 방식 등 -방학 중/다문화아동 급식 지원 사례
급식종사자로서의 보람	-급식종사자로서의 보람을 느낄 때 -근로지속희망 여부
업무상 어려운 점 및 개선점, 적정 근로시간	-업무상 어려운 점 및 개선점 -효율적인 단체급식 지원을 위해 적정 급식종사자 근로시간

- 급식종사자의 초점집단면접은 2023년 11월 2일 1회 동안 5명 대상 비대면 회의로 진행하였고, 2시간 가량이 소요되었음. 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참석자의 배경 정보는 [표 3-32]와 같음.

[표 3-32] 초점집단면접 대상자 배경 정보(급식종사자)

(단위: 세, 명, 천원)

번호	지역	연령	이용아동 (현원)	근로 계기	근로 기간	계약 근무시간	실제 근무시간	실수령 급여	4대보험 적용여부	FG 일정
1	북부	61	총 35명 (초 29, 중 6)	지인소개	7개월	2시간30분	4시간	1,000	고용보험 산재보험	11.2.목 13:00~15:00 (120분/ 비대면)
2	남부	55	총 40명 (초 28, 중 10, 고 2)	모집광고	6년	3시간	4시간	800	가입	
3	남부	60	총 30명 (초 30)	손자 이용중	10개월	3시간	3시간20분	900	가입	
4	남부	70	총 19명 (초 16, 중 2, 고 1)	지인소개	9년	2시간30분	3~4시간	700	고용보험	
5	남부	63	총 29명 (초 29)	공개채용	3년	3시간	3시간30분	880	건강보험 고용보험	

2) 급식종사자 초점집단면접 결과

가) 급식종사자의 근로환경 및 역할

: 급식종사자들은 주로 지인소개를 통해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짧게는 7개월에서 9년간 급식 일을 하고 있다고 하였음. 보통 1일 기준 2시간 30분에서 3시간 동안 근무를 하고, 식단 작성 및 장보기를 제외한 급식 준비부터 마무리, 위생관리 등의 업무를 혼자 담당한다고 하였음. 방학 중 업무는 센터마다 다양하였음.

(1) 근무하게 된 계기 및 근로 지속 기간

- 초점집단면접에 참여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의 근무 계기는 센터장이나 생활 복지사, 기타 지인을 통한 소개, 또는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손자가 다니고 있는 경우 등 친분관계가 많았음. 또한 모집광고 및 공개채용을 통해 근무를 시작한 경우도 포함되었음. 근로 지속 기간의 경우 7개월, 10개월, 3년, 6년, 9년 등으로 다양하였음.

저는 다른 데서 5년 했고 여기는 올 5월부터 시작했어요. 소개로 우리 센터장님이라 복지 사님은 예전부터 좀 아시던 분들이라 믿는 마음으로 왔어요. 【급식종사자 1】

저는 9년이 됐거든요. 잘 아는 분이 힘들다고 해서 봉사직으로 왔다가 집도 가깝고 단식 간 하니까 지금까지 하게 됐어요. 【급식종사자 4】

들어오게 된 동기는요 제 손자가 여기를 다니고 있고요. 원장님이 전화와서 사람을 좀 구해달라 그래서 사람이 없다 해서 제가 하게 됐어요. 1월 1일 날부터 해서 10개월 정도 했습니다.【급식종사자 3】

집 근처에 전단지가 붙어 있어서 왔다가 한 지 한 6년 됐어요.【급식종사자 2】

제가 전에는 시립어린이집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3년 근무하다 퇴직하고 공개채용으로 가까운 쪽으로 여기 들어왔는데 벌써 3년이 넘었네요.【급식종사자 5】

(2) 근로 시간

- 급식종사자의 근로 시간은 2시간 30분 또는 3시간이었음. 그러나 급식종사자들은 모두 실제 근무시간이 계약된 시간보다 30분에서 1시간 30분 정도 길다고 하였음. 그 이유는 이용 아이들의 급식 시간이 다르고 생일잔치 등 특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메뉴가 포함된 날이 있으며 출퇴근의 버스 시간이 맞지 않거나 급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마무리를 하는 데 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 등이라고 하였음.

아이들이 40명이고 3시부터 6시 근무예요. 급식은 5시 시작인데 태권도 가는 아이들 3~4명이 4시반에 밥을 먹으니까 힘든 메뉴가 있으면 2시 정도에 오고 아니면 2시 반에 와요. 설거지까지 하면 사실 6시가 넘어요. 중학생 몇 명은 늦게 오거든요.【급식종사자 2】

여기는 19명인데 저녁 안 먹고 가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무시간은 3시부터 5시 반까지인데 5시 반에 못 끝내더라고요. 설거지까지 하면 거의 6시고. 한 달에 한 번은 생일잔치 때 김밥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2시에 와서 6시까지 할 때도 있고요.【급식종사자 4】

현원은 35명이고 출근시간은 3시 30분부터지만 저는 2시 전에 와요. 왜냐면 버스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빨리 오게 되는데요. 급식시간은 4시 50분 정도에 시작하고 화요일은 조금 더 빨리 해요. 퇴근시간은 원래 6시예요.【급식종사자 1】

시간은 3시부터 6시까지라고 하는데 6시까지 거의 못 끝나요. 6시 10분 20분 그렇게 되고 아이들이 30명인데 거의 6학년이에요.【급식종사자 3】

인원은 29명인데요. 다 초등학생이에요. 근무시간은 3시간이거든요. 3시부터 6시까지인데 사실은 일찍 오고 늦게 가는 편이죠.【급식종사자 5】

(3) 업무 내용

- 급식종사자의 업무 내용은 주로 밥, 국, 반찬 3가지 등의 조리를 기본으로 떡볶이 등을 직접 만들거나 과일을 썰어서 제공하는 등 급·간식을 제공하는 일임. 이를 위해 급식 준비부터 설거지, 위생 관리, 냉장고 및 주방 청결 관리, 식자재 관리 등 주방에서의 모든 업무

를 담당함. 또한 일부 급식종사자 중에는 직접 김치를 담그는 경우도 있고 겉절이와 깍두기 등은 대부분의 급식종사자가 직접 만들어 제공한다고 하였음. 그러나 급식종사자는 식단을 짜거나 장을 보는 등의 업무는 모두 하지 않는다고 하였음.

- 남은 음식 처리는 한부모가정 아동에게 싸 주기도 하고 센터에 근무 중인 생활복지사 및 기타 보조 인력들의 간식으로 활용하기도 하며, 나머지 음식의 경우 모두 폐기 처리해 남기지 않는 편이라고 하였음.

청소, 청결 같은 거, 설거지까지 혼자 다 해요. 메뉴는 어린이급식대로 하고, 장은 센터장님이 봐 주시고 밥, 국, 반찬 세 가지, 과일 정도가 기본으로 나가요. 간식은 2시 반에 나가는데 만들 때도 있고 아니면 과일, 빵 종류 같은 거 매일매일 틀려요. 전에는 제가 깍두기는 직접 담았거든요. 겨울철 김치는 센터장님들이 직접 담아가시고 오셔요. 김치가 없는 경우에는 국산 김치 사서 먹고요. 남은 음식은 다 폐기하고 있고요. 【급식종사자 2】

마트에서 배송이 오면 그걸로 식단표를 보고 음식을 하는데 간식도 있어요. 어느 때는 떡볶이 같은 거 직접 조리해 주고요. 김치도 저는 직접 담습니다. 김장철에는 후원이 들어와서 김장 때만 안 하고요. 깍두기는 늘 제가 하죠. 남은 음식은 선생님들이 드시기도 하고요. 그냥 폐기 처리할 때도 있어요. 【급식종사자 5】

국하고 반찬 세 가지 정도로 하고요. 간식은 과일을 썰어서 나가요. 아니면 빵이나 우유 나갈 때도 있고요. 김치는 안 담그고 겉절이 정도는 하고 있어요. 【급식종사자 3】

밥하고 국 한 가지, 반찬 서너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간식은 만들 때도 있고 과일이나 다른 거 주실 때도 많아요. 급식 준비부터 설거지까지 제가 다 하고요. 위생 관리, 냉장고 및 주방 청결 관리, 식자재 관리 모든 거 하고 있어요. 장보기는 센터장님이 직접 다 봐주시고요. 식단도 해놓으시니까 저는 조리만 하면 됩니다. 남은 음식은 한부모가정 그 아이들만 골라서 싸 주고 나머지 상할 위험이 있는 거는 폐기 처리합니다. 【급식종사자 1】

(4) 방학 중 급식 지원

- 방학 급식의 경우, 학기 중과 똑같이 근무하는 급식종사자도 있고, 시간대만 바뀌 근무(학기 중-저녁 급식, 방학 중-점심 급식)하는 급식종사자도 있었음. 일부 급식종사자 중에는 오전에 점심 급식을 지원하고 퇴근 후 집에서 쉬었다가 저녁 급식을 지원하러 다시 출근하는 경우도 있었음. 이에 방학 급식은 센터마다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었음.
- 급식종사자들은 방학 급식의 경우, 대부분 1식은 정해진 식단과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지만 1식은 종사자(센터장 또는 생활복지사)가 임의대로 만들어 주거나 사비로 사주는 등의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어 종사자들의 어려움이 느껴진다는 의견이 많았음. 또한 부모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방학급식 때문에 불안감과 불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여기는 방학에 애들이 한 10시에 와요. 그러면 저도 10시에 와서 12시에 애들 먹고 치우면 1시쯤에 저는 집에 가죠. 저녁 먹을 것까지 내가 웬만한 걸 조금 준비해 놓고 가면 선생님들이 먹더라고요. 【급식종사자 4】

방학 기간에는 점심을 해주잖아요. 저녁 대신.. 그래서 일찍 출근을 해요. 11시 반에 와서 2시 반 정도에 가요. 그래서 일반 때는 간식을 2~3시쯤 먹었던 것을 방학 때는 저녁으로 옮겨요. 【급식종사자 3】

방학 때 시간은 11시에서 12시 반인가 잡아놨는데, 방학 때도 일찍 나와야 되죠. 요리를 1시간 안에 할 수 없으니까 거의 1시까지 있죠. 방학 때는 점심 저녁을 해주는 거예요. 1시 끝나고 집에 갔다가 다시 좀 쉬었다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2시에. 【급식종사자 2】

저는 방학 때 똑같이 3시에 와서 6시에 가는데요. 그전에 애들이 빨리 왔을 때는 선생님들이나 원장님이 간식을 먹이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부모님들 얘기도 들어보잖아요. 밖에서.. 그러면 방학 때가 제일 고통스럽다고 직장을 가니까. 두 끼를 주면 좋은데 한 끼니까 직장 가서도 편안하지 않다. 방학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급식종사자 3】

방학도 학기 중하고 똑같이 합니다. 점심 먹고 등원하고요.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방학이라고 확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저희 센터는 1식 제공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전에 오는 아이들은 선생님들이 챙기시고 사비로 사주는 경우도 많고요. 또 대신 간식을 일찍 먹고 간식을 푸짐하게 주는 편이에요. 【급식종사자 1】

나) 급식종사자로서의 보람

： 급식종사자들은 엄마/할머니 같은 마음으로 아동들에게 좋은 식재료로 따뜻하고 정성어린 집밥을 해 주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아동들이 음식을 잘 먹을 때 매우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였음.

- 급식종사자들은 방학 중 아침밥을 못 먹고 오는 아이 및 다문화 아이, 인스턴트 음식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따뜻하고 정성어린 집밥을 해주는 것에 가장 큰 보람을 느낀다고 하였음. 특히 정성껏 만든 음식을 맛있다고 잘 먹고 더 달라고 할 때 뿌듯함을 느끼지만 반대로 아이들의 입맛에 맞지 않은 메뉴로 아이들이 음식을 남길 때 속상함을 느낀다고 하였음. 일부 급식종사자 중에는 원래 음식 만드는 것을 좋아하고 아이들과 함께 지내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여기는 다문화 아이들도 많고 아침밥도 못 먹고 오는 아이들도 참 많아요. 방학 때 따뜻한 밥해주는 거 잘 먹고 그러면 되게 보람이 느껴지죠. 맛있다고 더 달라고 하면 기분이 좋아요. 한국 아이들이 한 6~7명 정도고 거의 다문화 아이들인데 다 적응을 해 가지고 아주 매운 것만 빼고 다 잘 먹는 거 보면 너무 예뻐요. 【급식종사자 2】

센터 음식은 직접 조리를 하기 때문에 사 먹는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인스턴트는 절대 안 하고 모든 음식을 직접 조리하기 때문에 아이들도 건강에도 좋고, 아이들이 집밥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요새 아이들은 엄마도 사 먹는 걸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될 수 있는 한 집밥처럼 해주고 제가 봐도 꾸집하고 정성을 다해요. 아이들이 이 맛있게 먹어주고 선생님 더 주세요 하면 뿌듯하더라고요. 【급식종사자 1】

아이들이 맛있다고 최고라고 더 달라고 할 때 뿌듯하고 보람 느끼고요. 또 우리 손자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손자 해준다는 마음으로 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급식종사자 3】

영양사들이 조리식단을 짜서 주시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느 때는 아이들한테 입맛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밥도 남기고 그럴 때는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뭐 많이 달라고 할 때가 정말로 기분이 좋고 즐겁고 행복해요. 【급식종사자 5】

저는 본래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손자들 같아서 내가 해주면 맛있게 먹고 또 와서 더 먹고 갈 때 보람이 있어요. 애들하고 지내는 게 참 좋아요. 다문화 아이들이랑 우리나라 애들이랑 반반인데 음식 같은 거는 한국 애들하고 똑같이 잘 먹어요. 【급식종사자 4】

다) 업무상 어려움 및 개선점, 걱정 근로시간

： 급식종사자들은 급식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면서 급식환경 개선 및 조리도구/조리물품의 주기적 교체를 바라였음. 또한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걱정 근로시간 확보, 아동이 선호하는 식단 및 단체급식 점검 횟수 조절 등을 기대하였음.

(1) 급식환경 개선

- 급식종사자들이 생각하는 업무상 가장 큰 어려움은 열악한 급식환경 문제임. 예를 들어 주방이 좁아 조리 시 불편함을 느낄 뿐만 아니라 불 앞에서 조리를 하다보면 여름에는 너무 더워 땀띠가 나거나 땀이 음식에 들어갈까 봐 염려된다고 하였음. 또한 좁고 열악한 주방임에도 불구하고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아 여름철 근무와 건강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급식종사자들은 에어컨이나 선풍기 등 냉방시설 또는 열 발생이 적은 인덕션 설치 등을 요구하였음.

주방이 좁아요. 여름에 불 앞에서 하다 보면 엄청 덥거든요. 여기에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인덕션 같은 거 있으면 조리사들 건강에도 도움이 될 거 같아요. 【급식종사자 4】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제가 1월에 와서 10개월 정도 했는데, 마음먹기로 내년 여름 되기 전에 그만 뒤야 되지 않나 이런 마음이 항상 들어요. 올여름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땀띠가 조리를 안 해도 덥잖아요. 여름에 에어컨 하나도 없이 조리를 한다는 게 돈 벌러 나왔는데 몸을 혹사시켜 가면서까지 벌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야 되나 하고 자꾸 여름에는 많이 갈증을 느껴요. 음식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더워서 죽겠고요. 【급식종사자 3】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주방이 굉장히 좁아요. 좁다 보니까 여름에는 땀띠가 날 정도로 덥거든요. 선풍기, 에어컨 이런 게 좀 열악해요. 가스를 우리 나이에 많이 맡으면 몸에도 해롭잖아요. 그런 게 개선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급식종사자 5】

(2) 조리도구 및 조리물품 교체

- 급식종사자들은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소형 냉장고 등 가전제품이 고장나도 교체가 되지 않아 불편함이 크고, 40명이 넘는 인원의 설거지를 일일이 손으로 하기에는 벅차다는 의견이 있었음. 특히 냄비와 후라이팬 같은 조리도구의 경우 오래 사용하면 위생상 교체가 되어야 하는데 요구하는 것 자체가 편치 않다면서 소형 가전제품 및 조리도구의 정기적인 교체와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음.

소형 가전 같은 거는 보조금 지출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방 가전제품 같은 거 어떨 때는 원장님이 사비로 사 오실 때도 있고 저는 집에서 필요 없는 가전들 갖고 와서 쓰는 경우가 종종 많아요. 일일이 따져서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일단 음식을 하는 사람이니까 좋은 조리도구로 음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를 조금 다른 방면에서 보조가 돼야 마음 편하게 부담 안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식종사자 1】

저희는 가스레인지가 잘 안 돼요. 하나만 되니까 불 가지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원장님한테 얘기해도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부탄가스 있잖아요. 그거를 한쪽에다 놓고 거기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을까 봐 늘 초조하죠. 저는 손자가 다니니까 해 준다는 마음으로 하지 돈으로 따지면 안 다니고 싶어요. 【급식종사자 3】

혼자 조리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설거지 같은 경우 손으로 다 해야 되니까 벅차거든요. 식기세척기 같은 거 좀 보급 좀 해줬으면 좋겠고.. 조리그릇들 있잖아요. 프라이팬이나 냄비, 국그릇 같은 거 오래 사용하다 보면 바뀌야 하잖아요. 오래 사용하면 튀김 그릇이나 볶음 그런 거 하게 되면 바닥에 냄비가 다 일어나잖아요. 바뀌달란 얘기하기가 편치가 않아요. 냉장고 같은 것도 고장나면 여기서 직접 사야 되잖아요. 【급식종사자 2】

(3) 급식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적정 근로시간 확보

- 급식종사자들은 낮은 급여로 인해 생활이 안 되고 불안정한 퇴직금 등 처우가 너무 열악

하다며 불만을 호소하였음. 센터장이 사비로 일부 급여와 퇴직금을 지원해 주지만 부담스럽다면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또한 적정 근로시간은 이용 아동수에 따라 달라야 하고, 19인 센터의 경우 3시간, 30인 기준 3시간 30분~4시간, 35~40인 기준 4~5시간의 근무시간이 적절하다고 제시하였음.

원래 시간은 3시간으로 잡혀 있지만 평균 4시간은 돼야 조리를 하지. 조급하고 불안해서 1시간 미리 오거든요. 빨리 와서 편안하게 해주는 게 낫지. 내 마음이. 기본적으로 4시간 정도는 되지 않아야 될까 그렇게 생각돼요. 【급식종사자 2】

센터가 여러 가지로 또 어려운 점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센터장님들 보면 급여 문제든지 모든 게 걸려 있으니까. 근데 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이 급여로는 생활을 못하잖아요. 그러니 센터장님들이 사비로 많이 지출하시는 것 같아요. 퇴직금도 센터장님 부담으로 하는데 서로 부담이 되잖아요. 서로 좋은 관계에서 그런 게 조금 안 좋잖아요. 서로가 기분 좋게 아이들한테 하는 건데. 선생님들도 월급은 받으시지만, 내 아이처럼 항상 돌보시기 때문에 저는 그에 합당한 게 법적으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급식종사자 1】

저는 하루에 5시간 근무가 적당한 것 같고요. 실제로도 5시간 근무를 하고 있어요. 준비해서 조리하고 배식하고 설거지하고 마무리까지 하는 데 거의 5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야 여유 있게 아이들한테 좋은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바쁘게 음식을 하다 보면 맛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떨어지고요. 【급식종사자 1】

애들이 한 19명밖에 안 되니까 저는 2시간 반으로 정해있는데 한 3시간만 쥐도 넉넉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급식종사자 4】

손자가 다니니까 봉사하는 마음으로 다니지 못해요. 요즘 인력 구하기도 어려운 데 더 준다는데 많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30명이거든요. 3시부터 6시까지인데 3시간은 너무 짧아요. 조리할 때 항상 시계를 보면서 불안한 거죠. 늦을까 봐. 퇴근도 6시에 가야 되는데 항상 30분에 갈 때가 많아요. 그래서 4시간이 적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급식종사자 3】

저는 10분 전에 오고 20~30분 늦게 가요. 제가 볼 때는 30분 정도만 늘리면 좋을 것 같아요. 3시간 반. 통상 30분은 오버되는 것 같아요. 29~30명이예요. 【급식종사자 5】

(4) 아동이 선호하는 식단 및 단체급식 점검 횟수 조절

- 이외에도 급식종사자들은 아동 단체급식의 식단에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는 메뉴들이 포함돼 있어 잘 먹지 않을 때 너무 속상하다면서 아동이 좋아하는 식단으로 짜 주기를 원하였음. 또한 단체급식 점검이 1년에 6번 나오는데 횟수가 너무 많으며 잘 운영되고 평가가 좋은 센터의 경우 점검 횟수를 줄여 주기를 바란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저는 3년 정도 어린이집을 다녔는데 거기에는 영양사가 계셨었어요. 직접 관리를 해주셔서 서로 의지해서 했거든요. 식단 짜 때 같이 의논해서 짜니까 우리 아이들이 먹는 잘 먹는 음식은 조리사가 잘 알잖아요. 그런 게 반영이 돼서 아이들을 잘 먹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식단표만 와요. 어느 때는 잘 먹고 몇 번씩 달라고 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음식이 안 맞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는 굉장히 속상하거든요. 아이들이 뭐를 잘 먹는지 통계를 내서 식단표를 짜줬으면 좋겠어요. 【급식종사자 5】

1년에 6번인가 시에서 어린이급식 점검이 나오잖아요. 그거 횟수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6년 내내 똑같은 질문 똑같은 대답을 해야 되니까. 제가 하는 동안 아이들이 배탈 난 적도 없고 집에서 밥하듯이 깨끗하게 하고 정말 성심성의껏 음식 해서 아이들 주는데 너무 자주 나오니까 그것도 약간 좀 스트레스예요. 못 하고 많이 감점당한 곳은 집중적으로 해서 개선을 하게끔 하든가 하고 잘하는 데는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급식종사자 2】

3. 서면조사

-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장들은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방식 및 보조금 20% 내 인건비·운영비 지출 규정은 현장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호소함. 이러한 (개인매식과 단체급식) 동일단가적용 및 (인건비와 식재료비 포함) 보조금 총액 지원방식, 단체급식단가의 적절성 등은 모두 급식제도와 관련된 내용임.
- 만약 현재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있어 더 나은 발전을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면, 이는 현장의 목소리뿐만 아니라 아동급식지원 담당 행정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 수렴이 중요함. 그 이유는 각 시군에서 실제 다양한 아동급식을 지원하고 각 지역아동센터를 관리·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서 들을 뿐만 아니라 현장의 문제점을 깊이 있게 들여다 볼 수 있고, 학계·연구·현장의 전문가는 아동급식지원 제도를 다양한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임. 이에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에 있어 단체급식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총 48명) 및 전문가(9명)들을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함.

가.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서면조사

1) 서면조사 개요

- 행정공무원 대상 서면조사는 2023년 9월 22일부터 10월 6일까지 2주간 실시하였고, 시군

아동급식지원 담당공무원 24명,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24명으로부터 총 48개의 서면 자료를 수집하였음.

- 서면조사는 실시 전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질문 내용을 확정하였음. 이에 아동급식지원 담당자 대상 질문 내용은 아동급식 유형 중 단체급식에 대한 이용 아동의 만족도, 동일단가적용에 대한 의견,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험, 개선점 및 지원 요구 등을 포함하였음. 또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대상 질문 내용으로는 시군 추가 지원 여부, 아동급식 보조금 점점 주기 및 관리 방법, 동일단가적용에 대한 생각,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험, 개선점 및 지원 요구 등을 포함하였음.

2) 서면조사 결과

가) 조사대상자 일반적 특성

- 서면조사에 참여한 아동급식지원 담당자의 지역은 경기북부 8명, 경기남부 16명이고, 업무기간은 3개월 이하 7명, 4~12개월 6명, 13~24개월 8명, 25개월 이상 3명임. 또한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지역은 경기북부 6명, 경기남부 18명이고, 업무기간은 3개월 이하 8명, 4~12개월 3명, 13~24개월 7명, 25~36개월 2명, 36개월 이상 4명임. 특히 지역아동센터 담당자가 관리하는 지역아동센터 수는 1개소 4명, 2~5개소 4명, 6~10개소 2명, 11~20개소 6명, 21~30개소 2명, 31~40개소 5명, 41개소 이상 1명으로 나타나 차이가 큼을 알 수 있음.

[표 3-33] 서면조사 참여자 정보(시군 담당공무원)

단위: 개월, 개

번호	담당업무	지역	업무기간	번호	담당업무	지역	업무기간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수
1	아동급식지원	남부	2	25	지역아동센터	남부	2	37
2	아동급식지원	북부	22	26	지역아동센터	남부	223	1
3	아동급식지원	남부	14	27	지역아동센터	남부	12	33
4	아동급식지원	남부	9	28	지역아동센터	남부	1	13
5	아동급식지원	남부	3	29	지역아동센터	북부	9	11
6	아동급식지원	남부	26	30	지역아동센터	남부	178	1
7	아동급식지원	남부	3	31	지역아동센터	북부	9	28
8	아동급식지원	남부	18	32	지역아동센터	남부	20	9
9	아동급식지원	북부	25	33	지역아동센터	남부	3	36
10	아동급식지원	남부	20	34	지역아동센터	남부	35	64
11	아동급식지원	북부	27	35	지역아동센터	남부	3	20
12	아동급식지원	남부	2	36	지역아동센터	북부	22	4

13	아동급식지원	남부	9	37	지역아동센터	북부	25	31
14	아동급식지원	남부	8	38	지역아동센터	남부	20	3
15	아동급식지원	남부	1	39	지역아동센터	남부	2	5
16	아동급식지원	북부	9	40	지역아동센터	남부	1	11
17	아동급식지원	남부	14	41	지역아동센터	남부	1	10
18	아동급식지원	북부	14	42	지역아동센터	남부	14	12
19	아동급식지원	남부	3	43	지역아동센터	북부	14	4
20	아동급식지원	남부	15	44	지역아동센터	남부	21	34
21	아동급식지원	남부	7	45	지역아동센터	남부	2	11
22	아동급식지원	북부	9	46	지역아동센터	북부	20	24
23	아동급식지원	북부	3	47	지역아동센터	남부	218	1
24	아동급식지원	북부	21	48	지역아동센터	남부	154	1

나) 시군별 단체급식 추가지원 및 만족도, 급식보조금 관리체계

- 경기도 단체급식을 위해 급식비 외 시군이 추가로 지원하는 경우는 조사에 응답한 24개 시군 중 18개(75%)로 나타남. 시군의 추가 지원내용은 주로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17개)이 가장 많고 체험학습 시 1식 기준 2,000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시군이 1개로 나타남.

[표 3-34] 경기도 단체급식을 위한 시군의 추가 지원(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단위: 명, %)

구분	없음	있음		합계
		인건비 지원	체험학습 시 추가 급식비 지원	
빈도 (비율)	6 (25.0)	17 (70.8)	1 (4.2)	24 (100.0)

- 또한 단체급식, G드림카드,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중 단체급식에 대한 이용 아동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아동급식지원 담당자들은 ‘중’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6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29.2%로 나타났음. 응답의 이유에 대해서는 단체급식의 경우 균형 잡힌 식사가 가능해 사업 목적에 부합하나 아동의 자발적인 메뉴선택에 한계가 있고, 급식지원금 전부가 아동에게 전달되지 않는 것 같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음.

[표 3-35] 단체급식 이용 아동의 만족도(아동급식지원 담당자)

(단위: 명, %)

구분	상	중	하	모름	합계
빈도 (비율)	7 (29.2)	16 (66.7)	0 (0.0)	1 (4.2)	24 (100.0)

- 이외에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대상 급식보조금 관리체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담당자들은 급식보조금 점검 주기는 1개월(45.8%)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음. 반면 6개월(20.8%) 주기로 점검한다는 시군도 2순위로 많아 시군별 점검 주기에 큰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다음은 12개월(16.7%), 3개월(12.5%), 9개월(4.2%) 순으로 나타남.

[표 3-36] 급식보조금 점검 주기(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단위: 개, %)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2개월	합계
빈도 (비율)	11 (45.8)	3 (12.5)	5 (20.8)	1 (4.2)	4 (16.7)	24 (100.0)

- 급식보조금 관리 방법에 있어서는 온라인 자료제출이 54.2%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방문 점검이 29.2%, 온라인 자료제출 및 방문 점검 병행이 16.7%로 나타났음.

[표 3-37] 급식보조금 관리 방법(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단위: 명, %)

구분	온라인 자료제출	방문 점검	온라인 자료제출 +방문 점검	합계
빈도 (비율)	13 (54.2)	7 (29.2)	4 (16.7)	24 (100.0)

다) 급식단가 동일적용에 대한 생각 및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경험

- 시군 아동급식지원 담당자와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에게 모두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 지원 단가의 동일적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하였음. 그러나 아동급식지원 담당자와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의견은 서로 다르게 나타났음.

[표 3-38] 급식지원단가의 동일적용에 대한 의견

(단위: 개, %)

구분	동일 적용해야 한다	개인매식과 단체급식 단가는 달라야 한다	잘 모르겠다	합계
아동급식지원 담당자	14 (58.3)	8 (33.3)	2 (8.3)	24 (100.0)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10 (41.7)	12 (50.0)	2 (8.3)	24 (100.0)

- 아동급식지원 담당자는 급식지원단가는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 모두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58.4%로 가장 많았음. 그 이유로는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 단가가 다를 경

우, 형평성 문제 및 행정에 맞지 않음(비효율적 업무 초래), 단가가 높은 쪽으로 쏠림 현상 우려, 단가를 다르게 할 근거 부족, 민원·반발 소지 발생 등의 의견이 나타나 주로 행정과 민원에 대한 우려가 많았음.

- 반면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단가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50.0%로 가장 많았음. 그 이유로는 규모의 경제에 따라 인원수가 많을수록 급식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이 완제품을 구매하는 비용과 식재료 구입비용은 다르기 때문에, G드립카드 이용 시 급식비가 부족하다는 민원은 있으나 단체급식비가 부족하다는 시설은 없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났음.
- 또한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것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아동급식지원 담당자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모두 직접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4.2%,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5%로 나타나 총 16.7%가 직간접으로 보조금 목적 외 사용을 경험한 바 있다고 응답하였음.

[표 3-39] 단체급식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직·간접 경험 여부

(단위: 개, %)

구분	있음		없음	무응답	합계
	직접 경험	간접 경험			
아동급식지원 담당자	1 (4.2)	3 (12.5)	18 (75.0)	2 (8.3)	24 (100.0)
지역아동센터 담당자	1 (4.2)	3 (12.5)	18 (75.0)	2 (8.3)	24 (100.0)

- 보조금 목적 외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로는 아동출결이 없는 일요일 지출, 잦은 외식, 센터장의 집과 가까운 거리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의 지출내역, 조리사 가족채용으로 인건비 과다지출 의심, 급식조리사 허위 등록 보고로 인건비 횡령, 종사자 간식 비용 지출 등의 의견이 포함되었음.

라) 단체급식 발전을 위한 개선점 및 지원 요구

- 마지막으로 시군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들에게 단체급식 발전을 위한 개선점 및 지원 요구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하였음. 이에 급식담당자들은 급식비와 조리사 인건비를 분리하고 급식비의 20% 내에서 기타 운영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이외에도 급식비 20% 내 인건비·운영비·기타 비용 지출

규정 개정, 조리사 채용에 있어 가족 채용 금지, 경기도 차원의 정기적·비정기적 급식 점검 실시, 급식비에 종사자 식사비 추가지원, 적절한 급식량과 식단제공에 대한 사진자료 제출 의무사항 추가, 1명의 담당자가 관리해야 하는 센터 개소 수 조절 및 인력 충원, 보조급 관련 지침 보완 및 급식비 지출항목에 대한 명확한 매뉴얼 등을 요구하였음.

나. 전문가 서면조사

1) 서면조사 개요

-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의 제도 개선에 관한 현장의 요구 및 시군 담당공무원의 의견 등을 기초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를 실시함. 전문가 서면조사는 2023년 11월 17일부터 11월 23일까지 1주간 실시함. 서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는 학계 전문가 2명, 연구직 전문가 4명, 현장 전문가 3명으로 총 9명임.

[표 3-40] 서면조사 참여자 정보(전문가)

번호	활동영역	소속기관	직위	아동 관련 경력
1	학계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4년 3개월
2	학계	00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22년 9개월
3	연구	00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9년 3개월
4	연구	00연구원	연구위원	3년
5	연구	00연구소	연구위원	8년 8개월
6	연구	000원	부장	18년 3개월
7	현장	지역아동센터 00지원단	단장	26년 10개월
8	현장	지역아동센터 00지원단	단장	10년 9개월
9	현장	지역아동센터 00지원단	단장	16년 8개월

- 전문가 서면조사의 내용은 설문조사, 초점집단면접, 공무원 서면조사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되었던 아동급식지원 제도의 동일단가적용 및 단체급식 보조금 총액 지원방식에 대한 적절성, 급식종사자 자격기준, 적정 근무시간 및 급여 산출의 적절성, 단체급식에서 식재료비 적정 단가 산출에 대한 의견, 효과적인 단체급식 지원을 위한 방안 등을 포함하였음.
- 이를 위해 296개 설문조사와 15명의 초점집단면접(센터장, 급식종사자), 48개 서면자료(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임의로 산출해서 작성한 센터 규모별 급식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 및 예상 급여, 단체급식에서 식재료비 적정

단가 등을 질문지로 활용하였음. 이에 전문가들로부터 임의 산출한 내용의 타당성 및 적절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음. 연구자가 임의로 산출한 급여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과 예상 급여, 식재료비 적정 단가는 다음과 같음(전체 서면자료 질문지는 부록에 첨부함).

[표 3-41] 설문조사 내용 : 연구자가 임의 산출한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의 적절성

(단위: 원)

구분		19인 미만	19~25인 미만	25~30인 미만	30~40인 미만	40인 이상
조사결과 현 근로시간		2시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연구자 산출) 적정 근로시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예상 급여 (월)	월 수령액	(기본급) 577,200원 =9,620원×60시간 (주휴수당) 115,400원 =9,620원×12시간 (연차수당) 26,455원 9,620원×3시간×11개 월÷12개월 (4대보험) 55,670원	(기본급) 673,400원 =9,620원×70시간 (주휴수당) 164,680원 =9,620원×14시간 (연차수당) 30,864원 9,620원×3.5시간×11 개월÷12개월 (4대보험) 64,940원	(기본급) 769,600원 =9,620원×80시간 (주휴수당) 153,920원 =9,620원×16시간 (연차수당) 35,273원 9,620원×4시간×11개 월÷12개월 (4대보험) 74,210원	(기본급) 865,800원 =9,620원×90시간 (주휴수당) 173,160원 =9,620원×18시간 (연차수당) 39,682원 9,620원×4.5시간×11 개월÷12개월 (4대보험) 83,490원	(기본급) 962,000원 =9,620원×100시간 (주휴수당) 192,400원 =9,620원×20시간 (연차수당) 44,092원 = 9,620원×5시간×11개 월÷12개월 (4대보험) 92,800원
	월 적립금	(퇴직적립금) 48,100원 =577,200÷12개월	(퇴직적립금) 56,117원 =673,400÷12개월	(퇴직적립금) 64,133원 =769,600÷12개월	(퇴직적립금) 72,150원 =865,800÷12개월	(퇴직적립금) 80,167원 =962,000÷12개월
	월 총급여	822,825원	990,001원	1,097,136원	1,234,282원	1,371,459원

[표 3-42] 설문조사 내용 : 단체급식 적정 식재료비 단가 산출의 적절성

(단위: 원)

구분		19인 이하(현원)	20~29인 이하(현원)	30인 이상(현원)
식재료비 적정단가 (산출)	급식비	총 6,420원 4,62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 증액비) + 간식비(1,800원)	총 6,300원 4,50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증액비) + 간식비(1,800원)	총 6,190원 4,390원(학교급식단가)+ 간식비(1,800원)
	간식비	(간식비) 1,800원 (원제품 간식 주 3회+ 조리식 간식 주 2회) (산출근거) -2022년 경기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기초금액 2,000원(2022.10.03. 도종환의원 보도자료) -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돌봄교실 간식비 기초금액 1,200~3,000원 -급식종사자가 있음을 전제로, 주 2회 이상 조리식 간식(떡볶이, 만두 등)을 포함함		
	청소년 이용 아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부 중고등학생 포함 센터, 또는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가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중고등학생) 급식단가를 학교급식 중간 금액인 5,150원으로 책정함. 이에 초등학생 기준 급식단가 (4,390원)에 60원을 추가 지원함. ▶단체급식 보조금 총액 예시 -초등학생 25인, 중학생 4인, 고등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31인×6,19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6인×760원×20일) = 3,929,000원 -초등학생 21인, 중학생 5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26인×6,30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5인×760원×20일) = 3,352,000원 -초등학생 15인, 중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17인×6,42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2인×760원×20일) = 2,213,200원		

2) 서면조사 결과

가)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 동일단가 적용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

- 현재 아동급식지원은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 모두 아동 1식 기준 8,000원의 동일단가를 적용하고 있음. 이에 전문가들에게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동일단가 적용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질문하였음. 그 결과 전문가들은 찬성 3개, 반대 6개의 의견을 보여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단가는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2배 많았음.

[표 3-43] 동일단가 적용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이유
찬성	3	-아동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서 -개인 매식 및 단체급식 모두 아동의 건강한 식단 유지에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반대	6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에 필요한 단가가 다르기 때문 -단체급식은 식재료 구입비 및 제반 관리 비용이 개인 매식 단가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이루어지기 때문

구분	의견 수	이유
		-단체급식이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단가가 더 저렴할 수 있어서 -단체급식은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되 급식단가는 개인 매식보다 낮추고 그 비용을 개인 매식비용을 증액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함 -단체급식비가 매식보다는 비용 절감이 존재하므로 차등을 줄 필요가 있음. 인건비를 별도로 지원한다면 급식단가는 당연히 현재보다는 낮아지는 것이 합당하다고 사료됨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단가는 다름

나) 단체급식 보조금 지원 시,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에 대한 찬반 의견

- 현재 단체급식 보조금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운영비를 포함해 총액 지급방식으로 지원함. 이에 전문가들에게 단체급식 보조금의 총액 지원방식을 인건비와 식재료비로 분리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문함. 전문가 9명은 모두 단체급식 보조금 지원 시, 인건비와 식재료비는 분리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함.

[표 3-44] 총액 지급방식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이유
분리 찬성	9	-각각의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것이 보장되도록 분리 필요 -인건비 분리를 통해 매년 물가를 고려한 급식비 인상이 가능 -인건비와 사업비가 함께 포함되어 있으면 인건비를 우선 지출할 수밖에 없음. 또한 경력 종사자를 채용하기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음. -인건비를 별도로 지급하고, 식재료비 단가 지급을 명확히 해야 규모나 지역센터 상황에 따른 차이 없이 양질의 급식 확보가 가능할 것임 -급식비의 20% 내 인건비와 연료비 등이 지급될 경우, 아동 수가 적은 시설일수록 노력/단시간 급식종사자 운영으로 시설장과 생활복지사가 급식종사자 역할을 수행하게 됨으로써 아동 서비스 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음 -인건비와 급식비를 분리함으로써 급식인력관리의 체계성과 아동급식의 효율적 운영 관리 확보가 동시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됨 -아동수가 적을 경우 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해 조리사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움.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아동수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조리사 확보방안이 필요함. 또한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를 통해 급식보조금이 식재료비만으로 사용될 수 있게 정리하여 급식비 지출의 적정성을 확보해야 함 -지역아동센터는 결석아동 급식비는 지원하지 않음. 급여는 정해져 있으나, 출석률에 따라 매달 지원받는 급식비가 달라져 센터에서는 인건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음.

다) 급식종사자의 자격기준

- 만약 급식보조금에서 인건비를 분리한다면, 급식종사자에게 어떤 자격기준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함. 급식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나이 제한, 조리사 자격증 취득 여부, 단체급식 경

력, 기타 자격기준 등으로 나누어 질문함. 이에 전문가들은 나이 제한은 필요하지 않고, 조리사 자격증 및 단체급식 경력은 권고사항 정도의 기준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음. 이외에 기타 자격기준으로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종사자 친인척 채용 지양, 아동단체급식에 관한 이해 교육 필수 등을 제시하였음.

[표 3-45] 급식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전문가 의견 결과

구분	이유
나이 제한	-필요(3명), 제한 나이(65세-1명, 70세-2명), 필요하지 않음(6명)
조리사 자격증	-필수(2명), 권고사항(6명), 상관없음(1명)
단체급식 경력	-필수(1명), 권고사항(5명), 상관없음(3명)
기타 자격기준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약물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종사자의 친인척 채용은 지양할 것 -아동단체급식, 영양, 위생 등에 관한 이해 교육 필수

- 급식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의 이유로 전문가들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조리사 자격증을 요구할 만큼의 충분한 급식실이 구비돼 있지 않은 점, 인건비 수준이 높지 않는 점 등을 제시함. 반면 급식종사자의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3명)도 있었는데, 이유로서는 고령의 종사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가 또는 연차를 요구하거나 퇴사는 원치 않으면서도 업무 과중을 호소하는 점, 위생과 관련된 급식관리지원센터의 권고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일정의 연령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라)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 산출에 관한 의견

- 급식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및 예상 급여에 있어 연구자가 임의로 산출한 내용과 산출근거(표 3-41)에 대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함. 먼저 시설 규모별 5개로 나누어 급식종사자의 근로시간을 산출한 부분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 4명, 수정 필요 4명,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소규모 시설의 경우 더욱 세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시설 규모를 5개로 세분화하기보다 2개·3개·4개로 나누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표 3-46] 시설 규모별 5개로 나누어 산출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4	-아동 수, 시설규모를 반영하여 적절함 -19인, 25인 미만 같은 소규모 시설은 더욱 세밀한 구분이 필요함. 기준점을 명확히 제시하여 단시간 근로 종사자의 근로여건을 확보하고 시설 운영기준을 세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함 -근로시간 및 급여를 세분화하여 산출할수록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이 더욱 명확해지므로 이와 같은 세분화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수정 필요	4	-3개 구간으로 나눌 것을 제안함(30인 미만, 30~40인 미만, 40인 이상) -2개 구간으로 나눌 것을 제안함(29인 이하, 30인 이상). 30분 단위로 나누기 어렵고,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의 휴게시간을 필수로 주어야 하기 때문임 -10명 단위로 4개 구간으로 나눌 것을 제안함(20인 미만/3시간, 20~30인 미만/3시간 30분, 30~40인 미만/4시간, 40인 이상/5시간) -뒷마무리(설거지 포함)까지를 위해 최소한 근무시간은 4시간이라 생각함. 19인 미만, 20~29인, 30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3단계 구분이 더 적절해 보임. 특히 방학 중 2끼 제공에 대한 추가 근무시간 지원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부적절	1	-시설규모 5개로 나눈 부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음

○ 시설 규모에 따라 산출한 급식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및 예상 급여(표 3-41)에 대해 전문가들은 적절 의견 4명, 수정 필요 4명,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규모별 급식종사자의 채용과 운영관리의 기준으로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2식 제공 기준을 추가 제시, 근로시간 산출에 따른 과업범위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표 3-47]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4	-기본급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기준점이 되고, 최소한의 근무시간임에도 근무조건과 급여기준이 제시되었다고 판단됨. 앞으로 인건비 상승에 따른 급여기준이 반영될 가능성이 더해지면 급식종사자 채용과 운영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임 -적정 근로시간에 대한 이견 없음
수정 필요	4	-30인 미만 구간을 통합(3시간, 30~40인 미만(4시간), 40인 이상(5시간) 제안함 -고용형태(정규직 여부 등)에 따라 기타 복지제도를 포함시킬지 검토되어야 함 -29인 이하(3시간), 30인 이상(휴게시간 포함 4시간~4시간30분). 또는 29인 이하(3시간 30분/약 99만원), 30인 이상(4시간 30분/약 123만원) 등을 제안함 -2식 제공 기준의 제안 필요, 근로시간 산출 기준에 따른 과업범위 제시 필요(예-재료구매, 조리, 음식처리, 설거지, 급식실 청소 등)
부적절	1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이 잘못되었음(경기도 돌봄교사지원사업 급여계산법 참조) ※월급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1주 근로시간+주휴시간)×365÷7÷12 -최저임금이 아니라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필요

마) 식재료비 적정 단가 산출에 관한 의견

- 규모의 경제에 따라 단체급식 식재료비의 적정 단가를 시설 규모별 3개로 나누어 산출한 부분(표 3-42)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함. 전문가들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5명, 수정 필요 3명, 부적절 1명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대체로 현장 상황이 잘 반영되었고 시설 규모에 따라 급식비 차등 방식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급식단가를 세분화할 경우 1~2인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것에 대해 우려하거나 2개 또는 3개로 구간을 축소하는 게 낫겠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표 3-48] 시설 규모를 3개로 나누어 산출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5	-현장의 상황을 잘 반영한 산출이라 생각됨 -식재료비 단가 산출에 있어 적절한 구분이라 생각됨. 이견 없음 -시설 규모에 따라 급식비에 차등을 주는 방식에 대해 찬성
수정 필요	3	-시설 규모를 30인 미만과 이상으로 간결하게 -앞선 종사자 근로시간하고 기준을 통일시키는 것 필요 -아동양육시설 등의 아동 수 대비 급식지원 단가 기준, 소수인원증액비 고려 인원 수 등을 근거로 제시하는 것도 고려 필요
부적절	1	-보통 급식단가는 50인 정도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 시설 규모를 너무 세분화한 것으로 보임. 시설규모를 세분화하게 되면 1~2인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이와 관련해 시설 규모별 적정 식재료비를 산출한 부분(표 3-42)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6명,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3명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학교 급식비에 간식비를 합하고 소수인원증액을 포함한 것이 타당함 또는 이용 아동의 특성과 기준이 잘 반영되었음 등의 의견이 포함됨. 반면 소수인원증액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보다 운영비나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는 급식종사자를 안정적으로 채용한다면 조리식 간식을 제공하고 간식비를 낮추어야 함 등의 의견도 포함되었음.

[표 3-49] 시설 규모별 적정 식재료비 산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6	-학교급식비에 간식비를 합한 금액에 소수로 인한 증액 타당 -이용아동 및 급식대상자의 특성과 기준에 잘 부합됨 -급식비 및 간식비 산출 내역이 적정하다 생각됨. 이견 없음
수정 필요	3	-초등학교 급식단가와 간식비를 동일하게 적용하되, 소수인원 증액비를 별도로 줄 것이 아니라 운영비나 인건비를 좀 더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초등돌봄교실 간식비보다 낮게 책정한 사유 보완. 만약 완제품 조리식 때문이라면 근로소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안정적인 조리사를 파견한다면, 조리식 간식을 권장할 필요가 있음. 조리 3번, 완제품 2번으로 조정 필요함. 조리식 간식의 비중을 높인다면 19인 시설 기준, 급식단가 4,620원에 비해 간식단가 1,800원의 비중이 너무 큼

- 청소년 이용 아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를 지원하는 것(표 3-42)에 대해서는 7명의 전문가들이 적절을, 1명이 수정 필요를, 1명이 부적절 의견을 보임. 구체적으로 중학생과 고등학교의 중간금액으로 책정한 것은 적절하다 또는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점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대체로 많음. 반면, 고등학교 이용 비율이 미비하므로 중학생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는 청소년은 급식에 대한 호불호가 명확히 청소년이라고 급식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표 3-50] 청소년 이용 아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7	-청소년 급식단가를 학교급식 중간금액으로 책정한 것으로 적절 -추가 급식비를 정산하려면 복잡하긴 하지만 가능한 방안임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추가 급식비를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됨.
수정 필요	1	-고등학교 이용 비율이 미미하고 학원이용 등으로 급식 이용 여부가 불투명하므로 학교급식 중학생 기준 적용이 적절함
부적절	1	-현재 청소년만 이용하는 시설은 아주 극소수며, 대부분 초중고가 함께 이용하고 있음. 초중고가 함께 이용할 경우, 중고등학생을 위한 별도의 식단을 운영하지 않음. 청소년은 초등학생에 비해 센터 이용시간도 짧고 급식에 대한 호불호(식단이 나 다이어트 등)가 명확해 청소년이라고 급식비가 더 많이 든다고 볼 수는 없음

바)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을 위한 방안

- 센터장 대상 설문조사와 초점집단면접의 결과, 센터장들은 ‘간단한 조리도구, 그릇류, 위생용품, 양념류, 쌀 등은 일반운영비(소모품, 비품)와 명확한 구분이 어려워 일반운영비에 포함하고, 급식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아동의 급식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낮

다’ 는 의견이 많았음. 이에 전문가 의견을 확인한 결과, 전문가들은 적절 2명, 수정 필요 1명, 부적절 6명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그릇류, 양념류, 쌀, 위생용품 등은 명확히 식재료비로 급식운영비 사용해야 투명한 급식 운영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주로 나타남.

[표 3-51] 일반운영비에 급식운영비를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2	일반운영비에 급식운영비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
수정 필요	1	-조리도구/그릇은 매월 운영비보다 연간 운영비 지원을 고려하고, 위생용품(상시 사용 물품), 양념/쌀 등(소모성 식품)은 월간 운영비 지원 고려
부적절	6	-양념/쌀과 같은 것은 급식운영비에 식재료에 포함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봄 -양념류나 쌀 등은 급식운영비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쌀이나 양념류와 같이 식재료의 경우에는 급식보조금으로 처리해야 할 것임 -간단한 조리도구, 그릇, 위생용품, 양념, 쌀 등 급식을 위한 다양한 부자재 및 식자재에 해당되므로 이를 일반운영비에 포함하는 것보다는 급식소모품 또는 급식필요물품으로 급식비의 일정부분 지출 가능 항목으로 유지하는 것이 투명한 급식 운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 됨 -만약 주방용품 구입과 관련된 비용을 시도가 일반운영비로 별도 편성할 경우, 국비 보조금과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조리도구나 그릇류 등을 구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쌀과 양념류는 명확하게 식재료비임. 후라이팬 등 소모품을 구입할 비용이 필요한 것은 맞으나 현재의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한정적인 상태에서 사용 가능할 비용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고민 필요

○ 운영비와 관련해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급식 운영에 필요한 전자제품에 대해 분기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하는 것’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확인함. 그 결과 전문가들은 적절하다는 의견이 7명, 수정 필요가 2명으로 나타나 대체로 긍정 반응을 보였음. 구체적으로 지출 단위가 큰 급식용품들은 급식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사업을 통해 지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혹은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용품을 통해 조리하는 것이 위생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개선 사업은 꼭 필요하다 등의 의견이 많이 나타남. 이와 더불어 분기별 사업보다는 월별 사업 신청 및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환경개선 사업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포함되었음.

[표 3-52] 분기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 추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7	-지출 단위가 크거나 불확실한 용도들은 급식보조금으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분기별 개선 사업에 따라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급식지원 환경은 곧 아동의 위생/안전에 영향을 미치므로 환경개선 지원 필요

구분	의견 수	의견
		-적극 동의함. 보조금으로 가전제품을 구입하지 않게 미연에 방지하면서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라 생각됨 -현재 모든 복지시설은 보조금 안에서 급식과 관련된 비용뿐만 아니라 재산조성비 자체를 사용하지 못함. 지자체가 정기적으로 급식과 관련된 부분 포함하여 재산조성과 관련된 비용을 책정하여 지원할 필요 있음
수정 필요	2	-갑작스런 구입이 필요하거나 교체가 있을 수 있어 분기별보다는 월별 신청과 선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봄 -고장, 생산년도, 에너지효율 등 환경개선 지원 우선순위 기준을 고려해 지원, 교체물품 사용 기관의 소요물량, 위치할 공간 등을 고려해 부정사용 사례가 없도록 지원,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련하는 등 세부적 지원/점검 방안 마련

- 또한 단체급식 지원 시 법적 종사자의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 결과, 부적절 5명, 수정 필요 1명, 적절 1명으로 나타남. 구체적으로 전문가들은 다른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아동급식지원이라는 목적에 맞는 사용에 있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대신 개인적으로 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는 방법은 고려할만하다 또는 도 차원의 호봉제에 종사자의 식비 항목이 없다면 가능하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표 3-53] 법적 종사자의 급식비 추가지원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수	의견
적절	3	-적절한 제안이라고 봄 -학교의 경우에도 교직원 급식지원비가 별도로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법적 종사자에 대한 급식비 지원도 필요함
수정 필요	1	-서울의 경우, 지역아동센터 단일임금이 적용되면서 종사자에게 제수당으로 식비를 지급하고 있음. 이 경우 급여 항목의 식비 외 추가 식비 지원은 중복지원으로 볼 수 있기에 시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의 경우 호봉제에 종사자의 식비 항목이 없다면 제안한 방법이 유효하다고 생각됨.
부적절	5	-아동급식비에 법적종사자 급식비를 포함하려면, 종사자의 중식비 지원수당을 아동급식비에 편성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다른 아동복지시설에서는 종사자의 급식비를 종사자가 개인 부담하고 있으므로, 다른 아동복지시설과의 형평성을 위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급식비는 종사자가 개인 부담하는 것이 적절 -지역아동센터 또한 여타 사회복지시설에 기준하여 법정 종사자라 하여 급식비를 추가 지원하는 부분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지역아동센터는 법정 종사자, 돌봄교사, 사회복지무원, 아동복지교사등의 기타 인력이 함께 근무하며 아동의 급식을 비롯한 여러 활동을 지도하며 모두 역할을 분담하여 지도함. 지역아동센터의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급식 지도 시 아동을 지도하는 인력에 대한 동반 식사를 허용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제안함. -급식비는 종사자들을 위한 비용이 아닌 아동들을 위한 비용임. 지역아동센터 운영비에는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고, 외부체험 시 매식하는 경우에는 프로그램비에서 종사자 급식비 사용 가능. 별도의 종사자 급식비 책정은 어렵고,

구분	의견 수	의견
		교육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개인적으로 식비를 내고 식사를 하는 방법은 고려할 수 있으나 종사자와 아동 급식비를 어떻게 분리해서 정산할지에 대한 고민 필요 -아동과의 관계형성 등을 위해 종사자가 함께 식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아동급식지원의 목적에 맞는 사용과 지원이 되어야함. 예를 들어, 종사자 운영비 내 식비 예산을 추가 지원하여 해당 예산은 종사자 급식에만 사용하고, 아동급식비 사용처와 동일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조치 필요

- 마지막으로 단체급식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기타 전문가의 자유 의견을 물음. 전문가들은 조리인력의 교육 지원을 통해 급식의 질 제고를 이룰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이외에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 부가급식비 지원(월 1회 피자, 치킨 등의 외식비), 다함께돌봄센터와의 동일단가 적용, 급식종사자 공개채용 의무화, 광역단위 친환경급식재료 보급 등의 의견이 포함되었음.

[표 3-54] 효율적인 단체급식 지원에 대한 기타 전문가의 의견 결과

구분	의견
기타 의견	-환경과 아동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친환경 식재료 의무화를 제안함 -열악한 가정환경에 놓여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있을 수 있어 부가급식비 지원을 하는 것을 제안함. 부가급식비로는 피자나 치킨 등 외식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1달에 1회 정도로 비용 지원 -다함께돌봄센터 등 기존 시설의 식재료비와 같은 단가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조리인력에 대한 교육 지원이 필요해 보임. 특히 최근에는 알러지 문제와 같은 전문적 지식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에 어린이급식지원센터나 각 지역 대학과 연계하여 연 1회 이상 조리법 및 관련 기본교육을 들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아동별 욕구가 반영(다문화, 알레르기 등)된 단체급식 지원을 통해 질 제고 필요. 이를 위해 급식종사자 교육(영양, 알레르기, 위생 지식 등)과 조리시설의 환경 개선,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정책 방안 고민 필요 -제도적 개선 및 지자체 지원으로 급식사업이 정상화 된다면 급식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 방안과 급식환경 및 재료 위생에 대한 점검 방안도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음. 급식종사자 인건비 정상화를 전제로 급식종사자 공개채용 의무화, 친인척 채용 제한 또는 친인척 채용 시 지자체에 보고토록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장기적 정책으로는 급식재료 수급을 개별 센터가 조달하는 것이 아닌 광역 단위의 친환경급식재료 보급 방식을 고려하여 더 나은 급식환경이 조성되길 바람 -급식비에서 식재료비와 인건비 분리를 기본으로 나머지는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IV

논의 및 정책제언

1.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2.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여 백

1. 주요 연구결과 및 논의

- 본 연구는 결식이 우려되는 취약가정 아동의 권리 보장 및 건강권 침해 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아동급식지원 사업에 있어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동일단가지원 및 보조금 총액 지원방식이 합리적인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되었음.
- 물가상승률에 따라 아동급식지원 단가가 매년 인상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규모의 경제에 따라 단체급식에 필요한 경비는 개인 매식비와 점차 차이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임. 또한 결식아동의 급식에 사용되어야 할 보조금이 목적 외 사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제도상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고 보다 효율적인 방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임. 무엇보다 총액 보조금 지원 및 급식보조금 20% 내 인건비와 운영비 지출 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임.
- 이에 실제 결식아동을 위한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장 대상 설문조사(296명)를 기초로 센터장·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총 15명)을 실시함. 또한 경기도에서 아동급식지원 및 지역아동센터 관리·지원을 담당하는 시군 공무원(총 48명) 및 학계·연구직·현장 전문가 대상 서면조사(9명)를 통해 현 아동급식지원 제도의 적절성 및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 마지막으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도청 담당공무원 및 전문가 자문(총 6회) 등을 통해 정책 제언을 도출함.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가. 단체급식 운영 현황

- **이용 아동 현황** : 2023년 5월 기준 경기도 내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수는 총 50,817명으로, 이중 급식카드 지원 아동은 25,899명(51.0%), 단체급식 지원 아동은 24,918명(49.0%)임. 단체급식 이용 아동 중 초등학생은 76.4%, 중학생은 17.5%, 고등학생은 4.5%, 기타 아동(미취학, 탈학교 아동)은 1.5% 순으로, 초등학생이 가장 많이 이용하나 청소년(중·고등학생)도 전체의 22.0%를 차지해 1/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음.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중·고등학생이 없는 센터는 19.3%로 경기도 내 지역아동센터의 80.7%에 청소년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급식의 경우,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별로 급식단가가 다름. 그러나 지역아동센터

에서 단체급식을 지원받는 아동은 초등학교부터 고등학생까지 다양하지만 동일급식단가를 지원받고 있음. 이에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초등학생과 먹는 식사량, 필요한 열량과 영양, 선호하는 급식메뉴가 달라 단체급식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따라서 청소년 이용 단체급식의 경우, 청소년에 맞는 급식단가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경기도에서 급식과 관련하여 아토피 피부질환 아동이 1명 이상 속한 지역아동센터는 44.6%, 음식 알레르기 반응 아동이 1명 이상 속한 센터는 45.6%에 해당함. 이에 음식과 건강, 위생과 안전에 관한 급식종사자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 **단체급식 운영의 유형** : 경기도 내 단체급식 운영의 유형은 83.4%가 식재료를 구입해서 직접 조리함. 이외 11.5%는 위탁급식업체 또는 반조리식품으로 제공하고, 5.1%는 배달 도시락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단체급식의 주된 형태가 급식인력을 통한 직접 조리를 지원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단체급식 지원은 곧 우수한 급식인력 채용 및 안정된 고용유지, 급식인력의 역량 등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음. 그러나 센터장 설문조사 결과, 센터장들은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1순위로 ‘급식종사자 채용(59.5%)’, 2순위 ‘급식종사자 관리(29.4%)’를 응답해 급식인력의 안정적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급식횟수·유형** : 단체급식의 지원 횟수는 학기 중이나 방학 중이나에 따라 다름. 학기 중에는 평일 1일 기준 1식+1회 간식(70.9%)이 가장 많고, 1식(28.4%), 2식+2회 간식(0.7%) 순임. 방학 중에는 평일 1일 기준 2식+1회 간식(45.6%)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1식+1회 간식(34.1%), 1식/석식(9.5%), 1식/중식(6.1%), 기타(3.0%) 순으로 나타남. 이에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의 단체급식 지원에 있어 대부분 급식과 간식을 함께 제공하고, 방학기간에는 학기 중에 비해 급식 지원 횟수가 확연히 많아짐을 확인할 수 있음. 이는 개인 매식 이용 아동이 현 급식단가 8,000원으로 1식의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단체급식 이용 아동은 같은 급식단가 안에서 균형 잡힌 식사와 함께 간식을 제공받기 때문에 단체급식이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훨씬 효과적임을 의미함.
- **급식종사자 현황** : 현재 경기도 지역아동센터는 단체급식을 위해 83.4%가 급식인력을 채용하고 있음, 채용방식은 공채채용(56.1%), 지인소개(15.9%), 기타(공공근로 등)(12.2%), 친인척 고용(3.0%), 생활복지사에서 전환(0.3%) 순으로 나타남. 또한 급식종사자의 연령대는 60대(39.2%)가 가장 많고, 50대(20.9%), 70대(16.2%), 40대(6.4%), 30대(0.7%) 순으로 나타나

60~70대 급식종사자가 55.4%를 차지함. 근무시간은 3시간(47.3%)이 가장 많고, 4시간(22.3%), 5시간(8.4%), 2시간 이하(4.4%), 6시간(0.7%) 순으로 나타나 대부분 3~4시간을 근무함. 이와 관련해 급식종사자의 급여는 60~80만원 미만(44.5%)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100~120만원 미만(22.7%), 80~100만원 미만(19.2%), 120만원 이상(5.7%), 30~60만원 미만(4.1%) 순으로 나타나 67.8%가 100만원 미만의 급여를 받음.

- 이는 급식종사자가 선호하는 근로조건 및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센터장의 급식종사자 채용·관리상 어려움이 나타난다고 응답한 원인으로 작용할 것이라 예상됨. 특히 2023년 최저임금기준에 비해 낮은 처우가 의심되는 경우들이 있어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 및 주휴수당, 연차 및 4대 보험 적용, 퇴직적립금 등에 관한 급식인력 채용과 급여체계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되는 상황임.
- **급식보조금 입출금 현황** : 현재 경기도 각 지역아동센터의 급식보조금은 월 400~500만원 미만(31.9%)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300~400만원 미만(28.5%), 500~600만원 미만(17.6%), 200~300만원 미만(7.1%), 600~700만원 미만(5.4%) 순임. 이는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평균 이용 아동수가 28.1명이기 때문에 급식보조금은 월 400~500만원이 가장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중 가장 큰 지출비용은 식재료비로, 경기도 단체급식을 위한 실제 식재료비는 월 300~400만원 지출하는 센터가 28.3%로 가장 많고, 400~500만원 미만(25.7%), 200~300만원 미만(23.0%), 500~600만원 미만(6.4%), 600만원 이상(2.7%) 순임. 이는 급식보조금이 월 500만원 이상인 센터가 24.7%인데 비해 400만원(80%의 식재료비) 이상을 식재료비로 지출하는 센터는 38.4%로 나타나 13.7%의 센터가 급식보조금의 80% 이상을 식재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의미임. 반면 급식인력의 급여는 100~120만원 미만(22.7%), 80~100만원 미만(19.2%), 120만원 이상(5.7%), 30~60만원 미만(4.1%) 순으로 나타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인건비(상한선)보다 적은 인건비를 지출하고, 운영비도 전체의 26.4%가 전혀 없거나 대부분 소액 수준의 운영비만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체급식 지원에 있어 음식의 맛·양·위생·안전 등 급식내용과 질은 상당 부분 급식인력에 따라 달라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단체급식의 급식인력에 대한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수준, 과업범위, 교육 등에 있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체계가 없어 단체급식의 질이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급식인력의 인건비를 분리하고, 단체급식에 적합한 급식단가 재조정을 통해

안정된 급식인력 확보 및 단체급식 운영의 질 제고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나.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따른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점

-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동일단가적용** : 본 연구에서는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에 있어 동일단가적용의 적절성에 대해 지역아동센터장(296명), 시군 공무원(48명), 전문가(9명) 대상 동일하게 조사하였음. 센터장들은 부정 응답이 52.0%, 긍정 응답이 48.0%로 나타나 부정 응답이 4.0% 높게 나타남. 학계·연구직·현장 전문가 역시 부정 응답이 6명, 긍정 응답이 3명으로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동일단가에 대해 부정 의견이 2배 많음. 그러나 시군 공무원의 경우 아동급식지원 담당자와 지역아동센터 담당자의 의견이 서로 다르게 나타남. 지역아동센터 담당자는 부정 응답이 50.0%, 긍정 응답이 41.7%로 부정 의견이 8.3% 높은 반면, 아동급식지원 담당자는 동일적용에 대한 긍정 응답이 58.4%, 부정 응답이 33.3%로 나타나 긍정 의견이 25.1% 높게 나타남.
 - 이에 급식카드, 단체급식,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아동급식지원 유형을 모두 담당하는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지역아동센터장, 지역아동센터 담당공무원, 전문가 등은 대체로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단가는 서로 달라야 한다는 데 동의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함.
 - 구체적인 긍정 의견의 이유로는 아동의 선택권 보장, 형평성 또는 행정상 비효율적 업무 예방 차원 등이고, 부정 의견의 이유로는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에 필요한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식재료를 대량 구매 시 단가가 저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등으로 나타남.
- **급식보조금 목적 외 사용 직·간접 경험** : 아동급식을 관리·지원하는 시군 공무원(총 48명)을 대상으로 급식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지 조사함. 아동급식지원·지역아동센터 공무원 모두 직접 경험(4.2%), 간접 경험(12.5%)이 있다고 나타나 16.7%가 목적 외 보조금 사용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함.
 - 구체적인 사례로는 아동의 출결이 없는 일요일 지출, 잦은 외식, 센터장의 집과 가까운 거리의 백화점이나 마트에서의 지출 내역, 조리사 가족 채용으로 인건비 과다 지출 의심, 급식조리사 허위 등록 보고로 인건비 횡령, 종사자 간식 비용 지출 등의 의견이 포함됨.
-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방식** : 단체급식을 위한 보조금을 인건비, 식재료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액 지원하는 방식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지역아동센터장(296명) 및 전문가(9명)에게 조사함. 센터장들은 부정 응답이 65.2%, 긍정 응답이 34.8%로 나타나 부정 응답이

30.4% 높게 나타났고, 전문가들은 100% 부정 의견을 보임. 이에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센터장 및 전문가들 모두 현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방식은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로 전환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동일함을 알 수 있음.

- 분리(전환)의 이유로는 목적에 맞는 보조금 사용 보장을 위해, 급식비 20% 내 인건비 지출 규정으로 규모가 작은 시설일수록 급식인력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식비 20% 내 인건비와 운영비를 모두 지출해야 하는 규정으로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느라 지출 가능한 운영비가 없기 때문에, 안정적인 조리사 확보 때문에 등의 의견이 나타남.

○ **단체급식 단가** : 현재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단가는 아동 1식 기준 8,000원으로, 단체급식의 경우 보조금의 20% 내에서 인건비를 포함해 기타 운영비 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식재료비의 지출 비용은 아동 1식 기준 최소 6,400원임. 단체급식 단가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센터장들은 긍정 응답이 57.8%, 부정 응답이 42.2%로 나타나 긍정 응답이 15.6% 높게 나타남. 그러나 급식보조금 운영 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보통’이 36.7%, ‘부족한 편(35.7%)’, ‘충분한 편(14.6%)’, ‘매우 부족(3.7%)’, ‘매우 충분(2.0)’ 순으로 나타나 부정 응답(39.4%)이 긍정 응답(16.6%)에 비해 22.8% 높게 나타남. 이처럼 급식보조금 운영에 있어서는 부정 의견이 높은 반면, 급식단가에 있어서는 긍정 의견이 높다는 것은 급식보조금을 운영함에 있어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비율을 효율적으로 지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함.

○ 이에 급식보조금을 총액 지원이 아닌 인건비와 식재료비(운영비 포함)로 분리해서 지원한다면 인건비 및 식재료비의 적정 단가를 어떻게 책정하면 좋을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함. 전문가들은 인건비의 적정 단가는 급식종사자의 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야 하고, 급식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은 시설 규모에 따라 달라야 한다고 제시함. 따라서 지역아동센터의 시설 수 기준처럼 3개 구간으로 나누어 이용 아동 수가 19인 이하(3시간), 20~29인 이하(3시간 30분), 30인 이상(휴게시간 포함 4시간 30분)의 3구간으로 나누거나 생활복지사 배치기준처럼 30인 미만(3시간 30분), 30인 이상(휴게시간 포함 4시간 30분)의 2구간으로 나누어 적정 인건비를 책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또한 방학급식의 경우, 2식 기준을 위한 급식종사자 근로시간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더불어 식재료비 역시 시설규모에 따라 3개 또는 2개로 나누어 지원하되, 학교급식 단가를 기준으로 간식비, 소수인원증액비, 청소년 추가 급식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

급합. 따라서 식재료비는 학기 중(1일) 1식+1회 간식을 기준으로 19인 이하(6,320원), 20~29인 이하(6,200원), 30인 이상(6,090원)으로 나누거나 30인 미만(6,200원), 30인 이상(6,090원)으로 책정하되, 주 3회 이상 조리식 간식 제공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짐. 일부 전문가들은 인건비를 분리할 경우, (불필요한 행정 낭비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50인 이하 식재료비는 동일해야 한다는 의견도 포함되었음.

-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점** :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장 대상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및 개선점을 조사한 결과, 센터장들은 급식종사자 채용(59.5%), 급식보조금 부족(38.9%), 급식종사자 관리(29.4%), 급식환경의 열악함(24.7%) 등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함. 이에 효율적인 단체급식 운영을 위해서는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73.4%), 급식행정처리 간소화(48.3%), 단체급식단가 상향(30.1%), 급식환경 개선(25.0%) 등을 요구함.
- 이를 종합해 보면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은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으로 인해 급식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인건비와 식재료비(운영비 포함) 분리 및 단체급식에 적합한 급식단가 재조정을 통해 안정적인 단체급식을 지원해야 함.

2.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여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정책 제언은 아동급식지원 제도에 대한 일부 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 요구할 사항과 더 나은 경기도 아동급식지원을 위한 도 차원의 역할을 제시함.

가.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

1) 급식보조금 총액 지원방식에서 인건비·식재료비 분리 지원방식으로의 전환

- 현재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은 아동 1식 8,000원을 기준으로, 실제 이용 아동 수의 급식 수만큼을 해당 아동이 속해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총액 급식보조금(8,000원×급식 수×이용 아동 수)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음. 이때 직접 조리하는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1식당 급식단가의 20% 범위 내 인건비, 연료비, 물품취득비(개별단가 50만원 이하의 식기류, 소

모성 주방기자재 등), 부식배송비, 급식종사자 건강진단 경비 등의 사용이 가능함. 또한 이용 아동 수가 전월 1개월간 이용 아동 급식 수의 90% 이상이 되어야만 1개월분 급식비를 전액 지원함.

- 그러나 이러한 급식보조금의 총액 지원방식은 현장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발생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예를 들어, 소규모 지역아동센터는 총액 급식보조금이 적어 20% 내에서 적정 급식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움. 겨우 급식인력을 채용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여 채용을 하다 보니 급식인력이 설거지와 뒷정리 등 급식 관련 마무리를 다하지 못하고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문제는 급식인력이 하지 못한 급식 마무리 업무를 센터 종사자(센터장 혹은 생활복지사 등)가 대신해야 하는 상황이 많아 센터 종사자는 급식 업무에 부담이 생기고, 다른 업무의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것임. 또한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센터장은 급식인력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다 보니 운영비로 지출할 금액이 모자라 조리도구·그릇류 등을 사용기한에 맞춰 제때 교체하지 못한다고 호소함. 특히 이용 아동이 갑작스러운 질병·가족/학교 행사·이사 등으로 결석을 할 경우,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아 안정적인 급식 지원에 어려움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급식서비스의 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함.
- 이에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지역아동센터장 및 전문가들은 급식인력의 인건비와 식재료비(운영비 포함)를 분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단체급식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함. 이는 인건비·식재료비·운영비 등 단체급식에 필요한 각 항목별 경비에 따라 목적에 맞는 지출 보장 및 양질의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제도 개선이라고 말함. 따라서 현재 아동급식지원 제도의 총액 보조금 지원방식을 인건비·식재료비(운영비 포함) 분리 지원방식으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함.

2) 단체급식에 적합한 적정 급식단가로의 재조정

- 만약 단체급식 지원에 있어 인건비와 식재료비를 분리 지원한다면 현재 아동급식지원 단가는 단체급식에 적합한 적정 급식단가로 재조정 되어야 함. 이때 인건비와 식재료비(운영비 포함)는 시설 규모 및 이용 아동의 특성(이용 아동 수, 연령)을 반영하여야 하고, 급식인력의 근로시간은 급식준비(재료 손질 등)부터 급식마무리(설거지 외 급식실 정리) 등을 포함해 적정 근로시간이 보장되어야 함. 이유는 30인 이상의 급식 지원과 19인 미만의

급식 지원은 급식인력의 적정 근로시간이 다르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식재료비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용 아동이 초등학생인 경우와 중·고등학생인 경우는 필요한 영양, 먹는 양, 선호하는 급식내용이 다르기 때문이다.

- 그러나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을 나누고 단체급식의 적정 단가를 재조정함과 동시에 시설 규모별 급식단가를 또다시 나누는 것은 행정 처리에 혼란과 불편함이 생길 우려가 있음. 이에 인건비와 식재료비(운영비 포함)의 적정 단가를 현 지역아동센터의 시설규모에 따른 이용 아동수 기준(3개 구간)과 생활복지사 배치기준(2개 구간)으로 나누어 2안의 급식인력 적정 근로시간 및 인건비(2023년 최저임금 기준), 식재료비 등을 제시함. 이는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센터장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산출한 예상 내역임. 또한 급식운영비의 경우, 월 식재료비의 10%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제안함.

[표 4-1] 단체급식 적정 단가에 대한 제안(1안)

(단위: 원)

구분		19인 이하(현원)	20~29인 이하(현원)	30인 이상(현원)
급식인 력 인건비	적정 근로시간	3시간 30분	4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5시간 (휴게시간 30분 포함)
	소정근로 시간(계산)*	1주 21시간×4.345주=91.25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24시간×4.345주=104.28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27시간×4.345주=117.32시간 (주휴시간 포함)
	급식인력 월 수령액	(기본급) 877,825원 =9,620원×91.25시간 (연차수당) 30,864원 9,620원×3.5시간×11개월÷12개월	(기본급) 1,003,174원 =9,620원×86.9시간 (연차수당) 35,273원 9,620원×4시간×11개월÷12개월	(기본급) 1,128,618원 =9,620원×117.32시간 (연차수당) 39,682원 9,620원×4.5시간×11개월÷12개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87,630원	96,760원	108,850원
	센터 월 적립금	(퇴직적립금) 73,152원 =877,825원÷12개월	(퇴직적립금) 83,598원 =1,003,174원÷12개월	(퇴직적립금) 87,382원 =1,128,618원÷12개월
	월 총급여	1,069,471원	1,218,805원	1,364,532원
식재료 비 (운영비 포함)	급간식비	총 6,320원 4,62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증 액비) + 간식비(1,700원)	총 6,200원 4,50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증 액비) + 간식비(1,700원)	총 6,090원 4,390원(학교급식단가)+ 간식비(1,700원)
	청소년 이용 아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	▶단체급식 기준안 - 학기 중 기준, 1일 1식1회 간식을 원칙으로 함 - 급식인력 채용을 기준으로 조식 간식(떡볶이, 만두 등) 주 3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함 - 간식비와 급식비의 사용은 월 단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이 가능함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부 중고등학교 포함 센터, 또는 중고등학교 전용 센터가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중 고등학교) 급식단가를 학교급식 중간 금액인 5,150원으로 책정함. 이에 초등학교 기준 급식단가(4,390원)에 760원을 추가 지원함 ▶단체급식 보조금 총액 예시 - 초등학교 25인, 중학생 4인, 고등학교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31인×6,19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6인×760원×20일) = 3,929,000원 - 초등학교 21인, 중학생 5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26인×6,30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5인×760원×20일) = 3,352,000원 - 초등학교 15인, 중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17인×6,42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2인×760원×20일) = 2,213,200원		

주: 1)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산출한 금액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함 (4.345주=365일÷12월÷7일)

3) 4대 보험료 등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기본급을 입력하여 산출함

[표 4-2] 단체급식 적정 단가에 대한 제안(2안)

(단위: 원)

구분(종사자 배치 기준)		29인 이하(현원)	30인 이상(현원)
급식인 력 인건비	적정 근로시간	3시간 30분	4시간 30분 (휴게시간 30분 포함)
	소정근로 시간(계산)*	1주 21시간×4.345주=91.25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24시간×4.345주=104.28시간 (주휴시간 포함)
	급식인력 월 수령액	(기본급) 877,825원 =9,620원×91.25시간 (연차수당) 30,864원 9,620원×3.5시간×11개월÷12개월	(기본급) 1,003,174원 =9,620원×86.9시간 (연차수당) 35,273원 9,620원×4시간×11개월÷12개월
	4대 보험 사업주 부담금	87,630원	96,760원
	센터 월 적립금	(퇴직적립금) 73,152원 =877,825원÷12개월	(퇴직적립금) 83,598원 =1,003,174원÷12개월
	월 총급여	1,069,471원	1,218,805원
식재료 비 (운영비 포함)	총 6,090원 = 4,390원(학교급식단가) + 간식비(1,700원)		
	급간식비	▶단체급식 기준안 -학기 중 기준, 1일 1식+1회 간식을 원칙으로 함 -급식인력 채용을 기준으로 조리식 간식 (떡볶이, 만두 등) 주 3회 이상 제공을 원칙으로 함 -간식비와 급식비의 사용은 월 단위 내에서 융통성 있게 사용이 가능함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부 중고등학생 포함 센터, 또는 중고등학생 전용 센터가 있음을 감안하여, 청 소년(중고등학생) 급식단가를 학교급식 중간 금액인 5,150원으로 책정함. 이에 초등학생 기준 급식단 가(4,390원)에 760원을 추가 지원함 ▶단체급식 보조금 총액 예시 -초등학생 25인, 중학생 4인, 고등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31인×6,19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6인×760원×20일) = 3,929,000원 -초등학생 21인, 중학생 5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26인×6,30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5인×760원×20일) = 3,352,000원 -초등학생 15인, 중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17인×6,42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2인×760원×20일) = 2,213,200원	

주: 1) 2023년 최저임금 기준 소정근로시간을 통해 산출한 금액임

2) 소정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 간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함 (4.345주=365일÷12월÷7일)

3) 4대 보험료 등은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기본급을 입력하여 산출함

3) 센터별 단체급식 유형 선택권 보장 및 급식인력의 자격기준 제시

- 현재 단체급식의 유형은 급식인력을 통한 직접 조리 지원, 위탁업체를 통한 지원, 반조리 식품을 통한 지원, 도시락 배달 지원 등 다양함. 이는 지역 특성 및 센터 상황상 급식인력을 채용하기 힘든 경우, 조리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수요자 요구를 통해 급식유형이 선정된 경우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최선의 급식을 지원할 수 있는 유형이 다르기 때

문임. 이에 지역아동센터를 통한 단체급식을 지원하더라도 어떤 급식 유형을 지원할 것인지 센터별 선택이 가능해야 함. 또한 급식인력이 직접 조리 지원을 하는 유형을 제외하고는 급식보조금 역시 개인 매식과 동일한 단가를 적용해야 할 것임. 급식인력을 통한 지원이 아니라면 인건비 책정이 별도로 필요하지 않고, 아동에게 개인 매식과 동일한 완제품의 급식이 지원되기 때문임.

- 이와 더불어 직접 조리를 통한 단체급식을 지원하는 경우, 급식인력의 자격기준은 나이 제한(70세 이하)·조리사 자격증 취득 여부·단체급식 경력 등은 모두 권고사항으로 하되,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아동단체급식에 관한 소정의 교육 이수를 필수로 하도록 제안함.
- 특히 급식인력의 과업 범위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식단 준수를 기본으로, 식재료 준비부터 마무리까지의 급식 전 과정을 포함하며(식단 작성은 제외, 식재료 구입은 센터 상황 및 급식인력 근로시간에 따라 다름), 주 3회 이상의 조리식 간식 지원 및 위생관리, 의무교육 등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제안함.

[표 4-3] 급식인력 자격 및 과업 범위 기준

구분	내용
나이 제한	- 권고사항(70세 이하)
조리사 자격증	- 권고사항
단체급식 경력	- 권고사항
기타 자격기준	- 식품위생법상 결격사유(정신질환자, 감염병환자, 약물중독자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 매년 관련 진단서 제출 필수(지역아동센터 관리지표에 포함) -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종사자의 친인척 채용은 지양할 것)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단체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에 관한 교육 필수
과업 범위 및 준수사항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식단을 준수하여 급식을 제공함(※식재료 구입이 어렵거나 체험활동 등으로 대체식 지원 시, 센터장과 상의하여 조정하되 기록으로 남김) - 식재료 준비 및 조리, 위생관리, 남은음식처리 및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설거지, 급식실 청소 등의 업무를 담당함(조리식 간식은 주 3회 이상을 포함함) - 깍두기와 겉절이 정도의 김치류를 담을 수 있음 - 주방용구(칼, 도마 등)·행주 등은 매일 살균·소독을 원칙으로 함 - 주 1회 이상 급식실 대청소를 실시함

나. 경기도의 역할

1) 경기도 단체급식 활성화 방안 : 방학급식·특별식 지원

- 아동급식지원 중 단체급식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균형 잡힌 식단을 기초로, 매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해 정성껏 만든 가정식의 급식을 제공함. 또한 혼자가 아닌 또래친구·형·동생·선생님들과의 정서적 교감과 밥상머리교육, 따뜻한 대화를 통해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급식이 진행됨. 특히 1식 기준 급식단가로 균형 잡힌 1끼의 식사와 더불어 1회의 간식을 함께 제공해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데 효과적임.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 내 결식 우려 아동들이 단체급식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단체급식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선점을 보완해야 할 것임.
- 이중 개선점이 필요한 첫 번째는 방학급식 지원임. 현재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은 방학급식이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임. 일반적으로 방학 중에는 학기 중과 달리 1끼의 식사 공백이 더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방학 중 2끼 이상을 지원하는 센터는 47.3%에 불과함. 이는 지자체별로 방학 중 2식의 급식비가 지원되지 않는 시군이 있을 뿐만 아니라, 1식의 급식비가 추가로 지원된다고 하더라도 이용 아동 모두 방학 중 2끼를 단체급식으로 신청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임.
 - 예를 들어, 학기 중 평균 30명의 단체급식을 지원하던 센터도 방학 중 1식은 30명이 급식을 이용하지만, 1식은 15명 이하만 급식을 신청해 이용 아동 수에 차이가 큼(방학 중 학원 이용, 여행, 늦잠 등). 이에 결식이 우려되는 15명의 아동을 위해 2끼의 단체급식을 지원하고 싶지만, 센터에서는 2끼의 급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급식인력의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2끼의 단체급식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 따라서 경기도는 방학 중 2끼의 단체급식을 직접 조리식으로 제공하는 지역아동센터에 개소당 급식인력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30~50만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경우, 취약가정 아동의 이용률이 높은 만큼 외식의 기회나 피자나 치킨 등 아동이 선호하는 메뉴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할 수 있음. 이에 경기도는 센터에서 아동이 자신들의 기호에 따라 월 1회 정도 특별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센터당 부가급식비를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이는 경기도 단체급식을 활성화하고 아동의 단체급식 만족도를 높이는 데 효과적일 것이라 기대함.

2) 아동급식환경 개선 및 질 제고 확립

- 단체급식의 질은 안정적인 급식인력 확보와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급식환경 및 신선하고 품질 좋은 식재료 사용이 중요함. 이에 경기도는 단체급식의 환경 개선 및 질 제고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함.
- 먼저 단체급식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깨끗하고 안전하며 우수한 성능의 급식시설과 도구가 갖춰져야 함. 예를 들어, 냉장고가 고장 난 경우 아무리 신선한 육류와 생선류를 구매해도 보관이 잘못된다면 신선함이 유지될 수 없음. 또한 가스레인지의 사용기한이 넘어 가스가 누출된다면 아동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음.
- 그러나 현재 단체급식 급식보조금은 급식시설의 가전제품이나 급식도구를 제때 교체할 만큼 운영비의 여유가 없는 상황임. 단체급식의 운영비 지출을 조사한 결과, 급식운영비가 전혀 없는 센터가 36.4%, 월 10만원 이하 센터가 29.6%에 해당함. 이에 냉장고나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밥솥 등 고가의 가전제품류는 사용기한이 지나 제대로 성능이 되지 않는 물품들이 있어도 교체를 하지 못 하는 경우가 많음. 급식종사자 대상 초점집단면접에서도 급식종사자들은 단체급식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장 난 가전제품을 수리·교체하거나 급식도구들의 사용기한에 맞춰 교체가 가능해야 한다고 강조함.
- 따라서 경기도는 월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 추진을 통해 정기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급식에 필요한 오래된 가전제품 및 급식도구 등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제안함. 예를 들어, 단체급식을 위한 급식시설 및 급식도구, 가전제품 등이 고장나거나 사용기한이 다 된 경우, 해당 지역아동센터가 물품의 구입년월, 사용기한, 사용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신청을 하면 경기도가 선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임.
- 또한 경기도는 단체급식의 질 제고를 위해 급식인력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단체급식의 인력은 학교급식 종사자와 달리 관련 자격증이나 경력이 없어도 급식업무가 가능함. 이에 아동급식지원에 대한 이해 및 단체급식 종사자로서의 역할, 영양·위생·안전·조리 등에 관한 지식과 태도가 부족할 수 있음. 또한 급식종사자는 짧은 근로시간 및 낮은 처우 등으로 인해 대체로 노령의 인력이 많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온라인 교육만으로는 교육의 효과를 보장할 수 없음. 따라서 경기도는 급식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급식종사자 신규 채용이 보고되면 해당 지역아동센터에서 직접 단체급식의

이해를 기초로 영양·위생·안전·조리 등에 관한 실질적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파견직 급식 전문강사를 지원할 것을 제안함.

- 이외에도 경기도가 믿을만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를 공식 입찰하여 광역단위의 친환경 식재료 공급업체를 선정·지원해 줄 것을 제안함. 이 경우, 경기도의 결식 우려 아동들은 좋은 품질의 식재료를 통해 보다 건강한 1끼의 식사를 할 수 있고, 각 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뢰할만한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받을 수 있을 것이며, 경기도는 전체 단체급식의 질 제고를 확립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함.

3) 단체급식 운영의 유연성 보장

- 마지막으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의 단체급식은 아동의 수, 연령, 특징 등이 다양한 아동들이 이용을 하고 있음. 이중 다문화가정 아동은 종교에 따라 먹지 못하는 식품류가 다르고, 아토피·알레르기 피부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동은 특정 음식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식단을 그대로 제공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음. 또한 청소년 이용률이 높은 센터의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선호와 흥미에 따라 직접 간식을 요리해 먹고 싶어 하기도 함.
- 그러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지도·점검이 나왔을 때, 식단에 없는 식재료가 보관돼 있는 경우 지적을 받거나 평가에 영향을 받는 등의 사례들이 있어 센터장 및 급식종사자는 어려움을 호소함. 이에 다문화가정, 아토피·알레르기 피부질환, 청소년 아동들의 자체 요리활동 등을 위해 일부 식단에 없는 식재료 및 대체품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유연한 운영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이 경우, 급식보조금 부정사용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체품을 활용하거나 청소년 요리활동에 필요한 식재료 구매할 때는 반드시 날짜와 보관용 식재료 보관이유, 용도 등을 기록으로 남겨 관리·감독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참고문헌

- 경기도교육청. (2023). 2023년 학교급식 기본방향.
- 고성희, 이경언. (2014). 지역아동센터 급식서비스의 품질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7(5), 914-920.
- 권수연. (2017). 지역아동센터 급식관리 질 향상을 위한 니즈 분석. **한국식품영양학회지**. 30(4), 749-758.
- 권수연, 김옥선. (2021). 급식종사자의 급식관리 지식수준에 따른 급식관리 중요도 및 수행도 분석 - 충북지역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34(1), 123-131.
- 권수연, 김옥선. (2021). 성남지역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아동급식사업 도시락에 대한 중도도 및 만족도(ISA) 분석.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021(11), 171-171.
- 권수연, 김옥선. (2023). 경기도 성남지역 아동급식지원사업 배달 도시락의 이용현황 및 만족도 분석.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33(2). 149-159.
- 권수연, 이영미, 김소영, 김진영, 윤지현. (2012). 전라남도 지역아동센터의 급식관리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 평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7(1). 91-100.
- 김기영, 조원영 (2018). 아동위탁급식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 직업소명의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조리학회지**. 24(10). 38-47.
- 김정은, 도영경. (2018).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급식서비스 경험과 건강향상. **한국청소년연구**. 27(1). 125-148.
- 박금식, 하정화, 허두진. (2012).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효율적인 급식지원 방안 연구. **부산여성가족개발원**.
- 박상현, 주나미. (2014). IPA분석을 통한 미취학아동 급식의 급식서비스 품질특성 및 급식운영 평가 -한국·중국·일본의 미취학아동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한국식품영양학회지**. 28(1). 160-169.
- 박숙현, 정현아. (2017). 대구·경북지역 지역아동센터 급식시설 운영 실태조사. **동아시아식생활학회지**. 27(4). 459-472.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결식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 보건복지부. (2023). 2023년 지역아동센터 지원 사업 안내.
- 송지현, 김창현, 박진호, 남재현. (2021). 아동급식카드가 아동의 신체건강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70(4). 33-67.
- 오혜숙. (2014). 원주시 결식아동지원급식의 품질 속성에 대한 만족도 조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5(2). 233-246.
- 오혜숙. (2019). 원주시 결식아동의 자존감이 지원급식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상지한의 논문집**. 7(1). 29-44.
- 양정선. (2018). 경기도 아동급식사업 내실화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이상은, 심재은, 권수연, 여윤재, 윤지현. (2014). 지역아동센터 급식을 위한 적정 배식량 제안.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지**. 19(4). 361-371.
- 이수진, 류호경. (2022). 아동급식카드를 이용한 식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연구 -부산시 거주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3(2). 205-221.
- 이수진, 이지윤, 강정은, 휴호경. (2021). 부산시 아동급식전자카드 가맹점 분포 및 이용자 실태 분석.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32(1). 29-40.
- 이승미. (2015).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 이정숙. (2014). 부산지역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주체별 급식 실태. **대한영양사협회학술지**. 20(1). 50-62.
- 장은진. (2017). 강원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강원특별자치도여성가족연구원**.
- 전종식, 권오병. (2018). 이상패턴 분석을 통한 정책의 적합성 분석 연구 : S시 아동급식전자카드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IT서비스학회지**. 17(1). 135-153.
- 전현지. (2020). 모바일결제 및 정보제공 플랫폼을 활용한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 개선 제안. **한국정보처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7(1). 37-40.
- 정영태. (2018). 대구지역 결식우려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개선방안 연구. **대구여성가족재단**.
- 조수민, 노충래. (2014). 결식 경험이 신체건강, 문제행동 및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6(2). 229-254.
- 조애저. (2008). 지역아동센터의 빈곤아동 급식지원 실태 및 개선방안. **보건복지포럼**. 139. 43-54.

- 조원제, 이윤지, 박의진, 박예림, 태형배, 김상진. (2022). 결식아동을 위한 선한 영향력 가게와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앱 개발. **한국정보기술학회지**. 2022(6). 734-737.
- 강원도민일보. (2022.11.11.). 원주지역 한 아동센터 센터장, 딸과 공모해 보조금 7700만원 빼돌려.
- 경북일보. (2021.09.08.).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 사용 대구 달서구 지역아동센터 적발.
- 경인방송. (2022.05.05.). ‘지금, 경기도는?’ 가족 동원 부당이득 챙긴 사회복지법인 적발.
- 뉴스핌. (2021.03.10.). ‘결식아동 급식보조금 횡령’ 대전 지역아동센터 대표 징역형.
- 대한급식신문. (2022.07.14.). ‘급식비 횡령, 공익신고로 딱 걸렸다’
- 매일신문. (2021.10.18.). 아동 급식비 부풀려 자기 배 채운 ‘못된 어른들’ .
- 부안독립신문. (2021.03.19.). 관내 A지역아동센터,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돼 ‘고발’ .
- 스트레이트뉴스. (2021.06.23.). 결식아동 급식비·보조금 빼돌려 자녀 교육비로 사용? 지역아동센터 시설장 등 6명 적발.
- 연합뉴스. (2022.06.17.). “사료용 라면·빵 먹여” 구례 지역아동센터 학대 의혹.
- 연합뉴스TV. (2023.08.30.). 보조금 횡령·불법임대,,, 복지법인 대표 등 적발.
- 오마이뉴스. (2021.12.28.).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비에서 식품비 인건비 분리.
- 에이블뉴스. (2023.01.25.). 경기도 특사경,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불법행위 집중 수사 예고.
- 이투데이. (2023.08.29.).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싹짓돈’ ... 경기특사경, 17명 적발.
- 일요신문. (2021.06.23.). “식자재 비용 조작에 횡령까지” 결식아동 급식비를 자녀 교육비로 빼돌려 쓴 ‘간 큰 아동센터장’
- 전국매일신문. (2022.04.27.). 경기지역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횡령 ‘들통’
- 전남매일. (2022.06.20.). 구례 A지역아동센터 아동학대·횡령 지속 이뤄졌다.
- 한겨레. (2023.08.29.). 아동센터 보조금 받아 자기 학비로 써... 경기도, 6곳 적발.
- 한스경제. (2022.07.12.).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보조금 횡령’ 공익제보자에 포상금 지급 결정.
- KBS뉴스 뉴스광장(울산). (2023.06.05.). 울산지역아동센터 등 보조금 횡령 1,800여 건 적발.
- KBS뉴스(광주). (2020.10.21.). 지역아동센터 횡령 적발,,, 차량은 환수
- MBN뉴스. (2020.07.07.). 아이들 급식비인데... 지역아동센터 정부보조금 집단 횡령 의혹.

여 백

부 록

부록 1. 경기도 단체급식지원 실태조사(지역아동센터장용) 조사지

부록 2. 전문가 서면자문 조사지

여 백

부록 1. 경기도 단체급식지원 실태조사(지역아동센터장용) 조사지

경기도 단체급식지원 실태조사 【지역아동센터장용】

안녕하십니까?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지역실정에 맞는 가족 및 여성, 보육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경기도가 설립한 정책 연구기관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방안 연구 : 단체급식을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작성하신 설문지는 경기도 단체급식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점을 찾아 발전방안을 모색함에 있어 중요한 자료로 사용될 것이오니, 바쁘시더라도 잠시만 시간을 내어 협조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해주시는 내용은 모두 무기명으로 통계처리 되며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리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9월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김 혜 순

설문지 작성방법

- 본 설문지는 경기도 시군 지역아동센터장님께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각 문항을 잘 읽고, 해당되는 곳에 ✓표시 해주시거나 해당내용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내용이 ‘기타’에 해당하는 경우, 괄호 안에 의견을 기재해 주시고 모든 문항에 빠짐없이 응답해 주십시오.
- 빠짐없이 작성하시고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시면 소정의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문의사항 연락처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신관 2층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은희 초빙연구위원, 강신혜 연구원 T) 031-220-3929 F) 031-220-3986

※ 다음은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D1. 귀하가 현재 근무하고 계신 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가평군 ② 고양시 ③ 과천시 ④ 광명시 ⑤ 광주시 ⑥ 구리시 ⑦ 군포시 ⑧ 김포시
⑨ 남양주시 ⑩ 동두천시 ⑪ 부천시 ⑫ 성남시 ⑬ 수원시 ⑭ 시흥시 ⑮ 안산시 ⑯ 안성시
⑰ 안양시 ⑱ 양주시 ⑲ 양평군 ⑳ 여주시 ㉑ 연천군 ㉒ 오산시 ㉓ 용인시 ㉔ 의왕시
㉕ 의정부시 ㉖ 이천시 ㉗ 파주시 ㉘ 평택시 ㉙ 포천시 ㉚ 하남시 ㉛ 화성시

D2. 귀하의 연령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D3.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여성 ② 남성

D4.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떠합니까?

- ① 고등학교 졸업 ② 전문대(2~3년)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석사 이상 졸업 ⑤ 기타()

D5. 귀하가 소지하고 계신 자격증은 무엇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십시오.

- ① 사회복지사2급 ② 사회복지사1급 ③ 보육교사2급 ④ 보육교사1급
⑤ 유치원 정교사 ⑥ 유치원 원감 ⑦ 초중등교사 ⑧ 청소년지도사
⑨ 어린이집원장 ⑩ 조리사 자격 ⑪ 영양사 자격 ⑫ 기타()

D6. 귀하의 지역아동센터 경력은 어떠합니까? (2023. 8. 기준)

- ① 지역아동센터 생활복지사 경력 (년)
② 지역아동센터 센터장 경력 (년)
③ 기타() (년)

※ 다음은 소속 지역아동센터의 일반 운영 현황에 관한 질문입니다.

1. 귀 센터의 정원과 현원(이용 아동) 수는 어떠합니까? (정원 명), (현원 원)

2. 귀 센터의 연령별 아동 수는 어떠합니까?

- ① 미취학 아동 (명) ② 초등 1~3학년 (명) ③ 초등 4~6학년 (명)
 ④ 중학생 (명) ⑤ 고등학생 (명)

3. 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특징은 어떠합니까?

- ① 아토피 아동 (없다, 있다 명)
 ② 특정음식 알레르기 아동 (없다, 있다 명)
 ③ 빈혈 아동 (없다, 있다 명)
 ④ 기타 섭식장애 아동 (없다, 있다 명)

4. 귀 센터의 운영 주체는 어떠합니까?

- ① 재단법인 ② 사회복지법인 ③ 사단법인 ④ 종교단체 ⑤ 사회적기업
 ⑥ 개인 ⑦ 기타 ()

5. 귀 센터의 종사자 수는 어떠합니까?

- ① 센터장 (명) ② 생활복지사 (명) ③ 영양사 (명)
 ④ 조리사 (명) ⑤ 기타 (명)

5-1. (④ 응답자) 조리사가 있다면, 다음 질문에 응답해 주십시오.

5-1. 연령	① 20대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⑥ 70대
5-2. 조리사 자격증	① 있음 ② 없음
5-2-1. 조리사 자격유형	① 한식 ② 중식 ③ 일식 ④ 양식 ⑤ 기타()
5-3. 단체급식 경력	(년)
5-4. 근무시간	① 2시간 이하 ② 3시간 ③ 4시간 ④ 5시간 ⑤ 6시간 ⑥ 7-8시간
5-5. 급여	(세전- 원)
5-6. 채용 형태	① 공개채용 ② 지인 소개 ③ 친인척 ④ 생활복지사에서 전환 ⑤ 기타

※ 다음은 소속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지원 실태에 관련 질문입니다.

6. 귀 센터에는 별도의 조리실이 구비되어 있습니까?

- ① 별도의 조리실이 없음 ② 조리실 있음

7. 귀 센터의 조리실에 구비된 기자재는 어떠한가요? (중복체크 가능)

- ① 김치냉장고 ② 냉장고 ③ 전자레인지 ④ 정수기
 ⑤ 가스레인지 ⑥ 오븐기 ⑦ 에어프라이어 ⑧ 식기세척기
 ⑨ 싱크대 ⑩ 기타 ()

8. 귀 센터의 급식 운영 형태는 어떠한가요?

- ① 음식 재료를 사서 직접 조리 ② 반조리식품(밀키트 등)을 사서 제공 ③ 도시락 배달
 ④ 기타 (구체적으로-)

9. 귀 센터의 배식 형태는 어떠한가요?

- ① 교실 배식 ② 식당 배식 ③ 교실+식당 배식 ④ 기타()

구분	구매통칙
10-1. 학기중(월요일)	① 석식만 ② 간식만 ③ 중식+간식 ④ 석식+간식 ⑤ 중식+간식+석식 ⑥ 기타 ()
10-2. 방학중(월요일)	① 중식만 ② 석식만 ③ 간식만 ④ 아침+간식 ⑤ 중식+간식 ⑥ 석식+간식 ⑦ 아침+중식 ⑧ 아침+중식+간식 ⑨ 아침+중식+간식+석식 ⑩ 중식+간식+석식 ⑪ 기타 ()
10-3. 주말(토요일)	① 중식만 ② 석식만 ③ 간식만 ④ 중식+간식 ⑤ 석식+간식 ⑥ 중식+간식+석식 ⑦ 주말 급식을 제공하지 않음 ⑧ 기타 ()

이동 수	월 급식제공 횟수	1식 기준 급식지원비 (단가)	사군 추가 지원금 (간식비 등)	월 후원금	월 보조금 (총액)
명	회	원	원	원	원

① 센터에서 직접 작성한다 ② 외부 식단을 그대로 사용한다 ③ 외부 식단을 수정해 사용한다

① 센터장 ② 생활복지사 ③ 영양사 ④ 조리사 ⑤ 기타 ()

① 센터장 ② 생활복지사 ③ 영양사 ④ 조리사 ⑤ 기타 ()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② 지역아동센터중앙(광역)지원단
③ 학교식단 ④ 보건소 식단 ⑤ 어린이집 식단
⑥ 인터넷 식단 정보 ⑦ 기타 ()

13. 귀 센터에서 급식재료 구매는 주로 누가하나요?

- ① 센터장 ② 생활복지사 ③ 영양사 ④ 조리사 ⑤ 기타 ()

14. 귀 센터에서 음식의 조리는 주로 누가하나요?

- ① 센터장 ② 생활복지사 ③ 영양사 ④ 조리사 ⑤ 기타 ()

15. 귀 센터의 급식재료 구매방식 및 배달방식은 주로 어떠한가요?

구분	구매방식	배달방식
16-1. 야채류	① 대형마트 ② 온라인주문 ③ 동네시장 ④ 동네야채가게 ⑤ 단체급식 전문업체 ⑥ 기타	① 배달 ② 직접 가져옴
16-2. 과일류	① 대형마트 ② 온라인주문 ③ 동네시장 ④ 동네과일가게 ⑤ 단체급식 전문업체 ⑥ 기타	① 배달 ② 직접 가져옴
16-3. 육류	① 대형마트 ② 온라인주문 ③ 동네시장 ④ 동네정육점 ⑤ 단체급식 전문업체 ⑥ 기타	① 배달 ② 직접 가져옴
16-4. 생선류	① 대형마트 ② 온라인주문 ③ 동네시장 ④ 동네생선가게 ⑤ 단체급식 전문업체 ⑥ 기타	① 배달 ② 직접 가져옴
16-5. 해산물류	① 대형마트 ② 온라인주문 ③ 동네시장 ④ 동네수산물가게 ⑤ 단체급식 전문업체 ⑥ 기타	① 배달 ② 직접 가져옴
16-6. 가공식품류	① 대형마트 ② 온라인주문 ③ 동네시장 ④ 동네슈퍼 ⑤ 단체급식 전문업체 ⑥ 기타	① 배달 ② 직접 가져옴
16-7. 기타 조미료	① 대형마트 ② 온라인주문 ③ 동네시장 ④ 동네슈퍼 ⑤ 단체급식 전문업체 ⑥ 기타	① 배달 ② 직접 가져옴

16. 귀 센터의 급식재료비 지불방식은 주로 어떠한가요? (중복선택 가능)

구분	카드 사용	계좌이체 사용	현금 사용
센터 전용	①	②	⑤
종사자 개인	③	④	

17. 귀 센터는 급식재료 구매 시, 몇 일분의 음식재료를 미리 구매하시나요?

- ① 1일분 ② 2일분 ③ 3일분 ④ 4일분 ⑤ 5일분 ⑥ 기타()

22. 귀 센터의 단체급식 운영에 있어 급식보조금은 충분한가요?

- ① 급식보조금이 매우 부족하다 ② 급식보조금이 부족한 편이다
③ 급식보조금이 적절하다 ④ 급식보조금이 충분한 편이다 ⑤ 급식보조금이 매우 충분하다

※ 다음은 위생관리·영양관리·급식서비스에 관한 수행도·중요도·적절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23. 귀하는 현재 단체급식 지원단가(1인 1식 기준 8,000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24. 귀하는 현재 단체급식 지원방식(인건비, 급식운영비, 급식재료비 구분 없이 1인당 1식 기준 지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25. 귀하는 아동급식지원 유형(아동급식카드, 단체급식)과 상관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① 매우 부적절하다 ② 적절하지 않다 ③ 적절하다 ④ 매우 적절하다

25-1. (③ 또는 ④ 응답자) 단체급식단가 및 운영에 대해 어떤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① 아동급식카드보다 단체급식단가를 높이고, 운영방식은 지금과 동일해야 한다.
② 아동급식카드보다 단체급식단가를 낮추고, 운영방식은 지금과 동일해야 한다.
③ 아동급식카드보다 단체급식단가를 낮추고, 급식담당자 인건비를 따로 지원해야 한다.
④ 아동급식카드보다 단체급식단가를 높이고, 급식담당자 인건비도 따로 지원해야 한다.

25-2. 단체급식의 적정 단가 및 운영체계에 있어 가장 좋은 방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아동급식지원 유형과 상관없이 동일 단가(8,000원) 및 아동 수 적용 산출방식, 50인 이하 시설의 경우, 조리사 의무 배치 규정 없이 아동급식 보조금 20%내에서 인건비, 배송비, 연료비, 물품취득비 등 사용 가능)

26. 귀하는 귀 센터의 단체급식 운영에 대해 어느 정도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분	구매방식
26-1. 급식환경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한 편 ③ 적합한 편 ④ 매우 적합
26-2. 위생관리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한 편 ③ 적합한 편 ④ 매우 적합
26-3. 재료의 질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한 편 ③ 적합한 편 ④ 매우 적합
26-4. 재료의 신선도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한 편 ③ 적합한 편 ④ 매우 적합
26-5. 센터장의 영양·위생지식 수준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한 편 ③ 적합한 편 ④ 매우 적합
26-6. 급식담당자(급식보조자)의 영양·위생지식 수준	① 매우 부적합 ② 부적합한 편 ③ 적합한 편 ④ 매우 적합

27. 귀하는 지역아동센터에서 근무하면서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7-1. (① 응답자)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의 횟수는 총 몇 회입니까? (회)

27-2. (① 응답자)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영양교육 ② 위생교육 ③ 조리법 교육 ④ 단체급식 규정 관련 교육
⑤ 단체급식제공자로서의 마인드나 태도 교육 ⑥ 기타 ()

27-3. ① 응답자)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받은 교육의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① 매우 불만족 ② 불만족 ③ 만족 ④ 매우 만족

27-4. (② 응답자)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무기간 내 관련 교육이 없어서 ② 관련 교육이 있는지 몰라서
③ 대체인력이 없어서 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⑤ 필요한 교육내용이 없어서 ⑥ 교육수준이 너무 낮아서
⑦ 교육을 받아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⑧ 교육장소나 시간이 맞지 않아서
⑨ 기타 (구체적으로-)

28. 귀하는 아동단체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싶은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28-1. ① 응답자)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받고 싶은 교육내용은 무엇입니까? (중복선택 가능)

- ① 영양교육 ② 위생교육 ③ 조리법 교육 ④ 단체급식 규정 관련 교육
⑤ 단체급식제공자로서의 마인드나 태도 교육 ⑥ 기타 ()

28-2. (② 응답자) 단체급식과 관련하여 교육을 받고 싶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대체인력이 없어서 ②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③ 인센티브가 없어서 ④ 교육장소가 멀 것 같아서
⑤ 교육시간이 안 맞을 것 같아서 ⑥ 뻘한 내용일 것 같아서
⑦ 교육을 받아도 적용할 수 없을 것 같아서 ⑧ 더 급하고 중요한 업무가 많아서
⑨ 기타 (구체적으로-)

※ 다음은 단체급식 운영의 어려움, 개선점, 지원 요구에 관련 질문입니다.

29. 귀하가 단체급식을 운영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식재료 전문 업체 선정 ② 급식담당자 채용 ③ 급식담당자 관리
④ 급식보조금 부족 ⑤ 남은 식재료 처리 ⑥ 급식환경의 열악함
⑦ 기타 ()

1순위		2순위	
-----	--	-----	--

30. 귀하가 단체급식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장 필요한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순위 2개)

- ① 급식환경 개선 ② 단체급식단가 상황 ③ 급식담당자(인력) 인건비 지원
④ 단체급식 관련 교육 ⑤ 공공 식재료 전문업체 지정·지원 ⑥ 급식행정처리 간소화
⑦ 기타 ()

1순위		2순위	
-----	--	-----	--

31.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지원의 질 제고를 위해 개선해야 할 점을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

※ 설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답례품(2만원 상당) 지급을 위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이후 성함과 핸드폰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성함과 핸드폰번호를 적어주지 않으면 답례품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경기도 단체급식지원 실태조사 참여수당 회계처리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항목: 수당지급을 위한 핸드폰 번호, 이름
- 개인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규정에 의거 보관하며, 보존기간 후 지체 없이 파기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단 동의가 없을 경우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답례품 수령 거부)

응답자 성명	
휴대폰번호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부록 2. 전문가 서면자문 조사지

전문가 서면자문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가족·돌봄·보육 분야의 정책을 개발하고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경기도 출연 연구기관입니다. 본 재단에서는 「**경기도 아동급식지원 발전방안 연구 : 단체급식을 중심으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 아동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발달권을 보장하고 결식 및 영양결핍 등 아동·청소년기의 건강권 침해를 국가 차원에서 예방·보호하고자 2000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사업입니다. 결식아동 급식을 위해 2023년 아동 1식 기준 8,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급방식은 G드림카드, 단체급식(지역아동센터 이용), 도시락 배달, 부식 배달 등 4개 유형으로 지원합니다. 그러나 결식아동의 급식에 사용되어야 할 단체급식 보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 없이 총액보조금으로 지원되고 있어 현장에서는 단체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학교급식은 2022년부터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 지급 중임).

이에 전문가분들께 ① 개인 매식 및 단체급식의 동일단가적용에 대한 의견, ② 단체급식 보조금의 인건비 분리에 대한 의견, ③ 단체급식 인건비 및 식재료비의 적정 단가 산출에 관한 의견, ④ 기타 단체급식의 발전을 위한 고려사항 등에 있어 서면자문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이에 다음의 질문내용에 전문가의 소견을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의사항] 조사주관기관 :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김 은 희 (☎031-220-3917)

(재)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원 강 신 혜 (☎031-220-3929)

연구 참여 동의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전문가 개인 정보>

성명		전문가 활동 영역 (☑ 표시)	☐ 학계	☐ 연구	☐ 현장
소속기관명		직위			
아동 관련 업무 종사기간 (중복기간 제외)	1) 학계 : 년 개월 2) 연구 : 년 개월 3) 현장 : 년 개월				

〈질문 사항입니다〉

1. 현 아동급식지원 제도에서 개인 매식과 단체급식의 동일단가 적용방식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시고,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단가 (8,000원)적용 찬반 의견 (이유)	
-------------------------------------	--

2. 단체급식 보조금의 인건비와 식재료비 분리에 대한 찬반 의견을 주시고, 그 이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체급식 급식종사자의 자격기준(조리사자격증 취득 필수여부, 나이제한, 경력 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 분리 찬반 의견 (이유)	
급식종사자 자격기준 의견(이유)	(현 상황 참고)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은 대부분 50인 미만으로, 단체급식을 제공하지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조에 의해 집단급식소에 해당하지 않아 영양사 및 조리사는 의무 배치가 아닙니다. 이에 현장에서는 조리사 자격기준이 없어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사업을 통한 급식종사자를 배치하거나 인건비 지급 수준이 낮아 최저임금의 노령/단시간 급식종사자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에 조리사 자격을 갖춘 인력을 모두 배치토록 하면 좋겠으나, 현실상(1일 3~5시간 근무, 급여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절충안이 필요한 상황이니 급식종사자 자격기준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급식종사자 자격기준(질문) ① 나이 제한 필요 여부 (필요함, 필요하지 않음) -나이 제한이 필요하다면, (세) ② 조리사자격증 취득 여부 (필수, 권고사항, 상관없음) ③ 단체급식 경력 여부 (필수, 권고사항, 상관없음) ④ 기타 자격기준 : ⑤ 위 의견의 종합 이유 :

3. 현재 경기도의 지역아동센터는 780개소 시설 중 19인 이하 139개소(17.8%), 29인 이하 330개소(42.3%), 30인 이상 311개소(29.2%)가 있습니다. 본 연구의 결과, 급식종사자의 근무시간은 3시간(47.3%), 4시간(22.3%), 5시간(8.4%), 2시간 이하(4.4%), 6시간(0.7%) 순으로 대부분 3~4시간이고, 급여는 60~80만원미만(44.5%), 100~120만원미만(22.7%), 80~100만원미만(19.2%), 120만원이상(5.7%), 60만원미만(4.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장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짧은 근무시간 및 낮은 처우 등으로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이에 센터장 및 급식종사자 대상 FGI 등을 참고로 연구자가 산출한 급식종사자의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 산출에 관해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아래 각각에 소중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참고-2023년 최저임금 기준 근로시간을 통해 산출한 금액이며, 4대 보험료 등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 기본급을 입력하여 산출하였음).

[표 1]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예상 급여 산출

(단위: 원)

구분		19인 미만	19~29인 미만	25~30인 미만	30~40인 미만	40인 이상
조사결과 현 근로시간		2시간~ 2시간 30분	2시간 30분~ 3시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연구자가 산출한 적정 근로시간		3시간	3시간 30분	4시간	4시간 30분	5시간
예상 급여 (월)	월 수령액	(기본급) 577,200원 =9,620원×60시간 (주휴수당) 115,400원 =9,620원×12시간 (연차수당) 26,455원 9,620원×3시간×11개월 ÷12개월 (4대보험) 55,670원	(기본급) 673,400원 =9,620원×70시간 (주휴수당) 164,660원 =9,620원×14시간 (연차수당) 30,864원 9,620원×3.5시간×11개월 ÷12개월 (4대보험) 64,940원	(기본급) 769,600원 =9,620원×80시간 (주휴수당) 153,920원 =9,620원×16시간 (연차수당) 35,273원 9,620원×4시간×11개월 ÷12개월 (4대보험) 74,210원	(기본급) 865,800원 =9,620원×90시간 (주휴수당) 173,160원 =9,620원×18시간 (연차수당) 39,662원 9,620원×4.5시간×11개월 ÷12개월 (4대보험) 83,490원	(기본급) 962,000원 =9,620원×100시간 (주휴수당) 192,400원 =9,620원×20시간 (연차수당) 44,092원 = 9,620원×5시간×11개월 ÷12개월 (4대보험) 92,800원
	월 적립금	(퇴직적립금) 48,100원 =577,200÷12개월	(퇴직적립금) 56,117원 =673,400÷12개월	(퇴직적립금) 64,133원 =769,600÷12개월	(퇴직적립금) 72,150원 =865,800÷12개월	(퇴직적립금) 80,167원 =962,000÷12개월
	월 총급여	822,825원	990,011원	1,097,136원	1,234,282원	1,371,659원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산출에 대한 의견 (이유)	▶시설 규모를 5개로 나누어 산출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연구자가 산출한 급식종사자 적정 근로시간 및 급여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4. 단체급식 보조금에서 인건비가 분리된다면, 단체급식을 위한 적정 식재료비(급식+간식)와 급식운영비가 재산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현재 식재료비+운영비는 아동 1식 기준 6,400원임-1식 기준 급식단가 8,000원에서 인건비 20%를 뺀 나머지). 2022학년도 경기도 교육청 학교급식(50인 이하 기준)의 급식단가는 초등학교생 4,390원, 중학생 5,060원, 고등학교생 5,240원이며, 초등학교생 간식비는 2,000원 수준입니다. 또한 현재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는 초등학교생(76.4%), 중학생(17.5%), 고등학교생(4.5%), 기타 아동(1.5%)이 함께 이용 중입니다. 연구자가 현재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서 주로 이용하고 있는 초등학교생을 기준으로, 학교급식 단가를 참고하여 산출한 적정 식재료비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소중한 소견을 부탁드립니다(참고-급식운영비의 경우, 일반운영비와 혼재되어 사용한다는 센터장 의견이 많아 일반운영비에 포함할 예정임).

[표 2] 단체급식 적정 식재료비 단가 산출

(단위: 원)

구분	19인 이하(현원)	29인 이하(현원)	30인 이상(현원)
급식비	총 6,420원 4,62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증액비) + 간식비(1,800원)	총 6,300원 4,500원(학교급식단가+소수인원증액비) + 간식비(1,800원)	총 6,190원 4,390원(학교급식단가)+ 간식비(1,800원)
간식비	(간식비) 1,800원 (원제품 간식 주 3회+ 조리식 간식 주 2회) (산출근거) -2022년 경기도 초등학교생 간식비 기초금액 2,000원(2022.10.03. 도중환의원 보도자료) -2022년 전국 시도교육청 초등학교생 간식비 기초금액 1,200~3,000원 -급식종사자가 있음을 전제로, 주 2회 이상 조리식 간식(떡볶이, 만두 등)을 포함함		
식재료비 적정단가 (산출)	▶경기도 지역아동센터에는 일부 중고등학교생 포함 센터, 또는 중고등학교생 전용 센터가 있음을 감안하여, 청소년(중고등학교생) 급식단가를 학교급식 중간 금액인 5,150원으로 책정함. 이에 초등학교생 기준 급식단가(4,390원)에 760원을 추가 지원함 ▶단체급식 보조금 총액 예시 -초등학교생 25인 중학생 4인, 고등학교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31인×6,19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6인×760원×20일) = 3,929,000원 -초등학교생 21인 중학생 5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26인×6,30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5인×760원×20일) = 3,352,000원 -초등학교생 15인 중학생 2인 이용 시설의 경우 급식보조금산출) : 17인×6,420원×20일 + 청소년 이용 추가 급식비(2인×760원×20일) = 2,213,200		
식재료비 적정 단가에 대한 의견 (이유)	▶시설 규모를 3개로 나누어 산출한 부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연구자가 산출한 적정 급식비 및 간식비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연구자가 산출한 청소년 이용 아동을 위한 추가 급식비(1식 기준 760원)에 대한 의견		

5.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이 본래의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 제언에 포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추가 정책 제언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일반운영비에 급식운영비를 포함하는 방안 : 간단한 조리도구, 그릇류, 위생용품, 양념류, 쌀 등은 일반운영비(소모품, 비품)와 명확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 포함하고, 급식보조금은 목적에 맞게 아동의 급식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하고자 함.

-(의견)

▶가전제품의 경우, 분기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 추진 : 냉장고, 가스레인지, 선풍기, 전자레인지 고장 및 교체 등은 매월 있거나 모든 센터가 필요할 것이 아니므로, 분기별 아동급식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선정하여 지원하도록 하고자 함.

-(의견)

▶법적 종사자의 급식비 추가지원 : 지역아동센터는 방과 후 아동의 안전 및 보호, 교육뿐만 아니라 정서지원을 책임지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에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함께 식사하고, 생활하고, 대화 나누는 것이 중요하나 현재는 '아동급식비' 명목으로 인해 센터 종사자들은 동반 식사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설립의 목적에 맞지 않기 때문에 법적 종사자(센터장, 8시간 생활복지사)의 급식비(청소년 기준 급식비지급)를 추가 지원해 줄 것을 제언하고자 함.

-(의견)

6. 기타 정부의 아동급식지원 제도 및 경기도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의 발전을 위해 더 고려해야 할 사항이나 추가 정책 제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